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 학 진 흥 기 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25. 8.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전 문 위 원 윤 상 열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담당

구 분		입법조사관	연락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재환	5188
	글로벌교육기획관	황태율	5187
디지털교육기획관		이선화	5189
인재정책실	인재정책기획관	김재환 조지숙	5188 5185
	지역인재정책관	이호원	5193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이호원	5193
	의대교육지원관	김재환	5188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김광호 창성현	5186 5184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조지숙	5185
	교원학부모지원관	이선화	5189
교육복지늘봄지원국		김광호	5186
영유아정책국		조성희	5192
학생건강정책국		창성현	5184
소속기관(국사편찬위원회)		조지숙	5185

목 차

Ⅰ. 결산 개요 ---------- 1

1. 총 괄 3

가. 세입・세출 결산 3
나. 기금 결산 4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6

2. 세입・세출 결산 7

가. 일반회계 7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
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7
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9

3. 기금 결산 23

가. 사학진흥기금 23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0

4. 재무 결산 37

가. 재정상태 분석(재정상태표) 37
나. 재정운영 분석(재정운영표) 39
다. 순자산변동 분석(순자산변동표) 41

5. 2024회계연도 신규 및 종료사업 42

6. 2024회계연도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 결산 46

7.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9

가.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현황 49
나.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49
다.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상세내역 49

8.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3

Ⅱ. 검토의견 ---------- 55

1. 기획조정실 ---------- 57

【총 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59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60

【일반회계】

1)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 64

(1) 재외한국교육원 일부 통폐합 검토 필요 ····· 66

(2) 재외한국학교 국고 전액 지원 검토 필요 ····· 7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 76

: 교육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7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국립대학 시설확충 ····· 81

(1) 법상 규정된 교육시설안전인증 의무 준수 필요 ····· 83

(2)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학교 정보의 공개 필요 ····· 88

(3)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 지연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90

2. 디지털교육기획관 ---------- 93

【일반회계】

1)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 95

: 성과 조사 응답률 제고 및 활용 방안 보완 필요 ····· 97

2)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107

(1) 디지털튜터의 원활한 배치·운영 지원 필요 ····· 112

(2)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개선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120

3) 교육정보보호사업 ····· 123

: 대학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개선 필요 ····· 125

3. 인재정책실 ---------- 131

【총 괄】

1) 국립대학육성사업, (전문)대학혁신지원 ····· 133

(1) 비(非)R&D 사업에 대한 간접비 계상의 적절성 검토 필요 ····· 136
(2)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교원확보율 기준 개선 필요 ····· 141
(3) 집행실적을 고려한 관리운영비 편성 및 교부 필요 ····· 148
【일반회계】
1)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152
: 적극적인 지방비 매칭 노력을 통한 집행율 제고 필요 ·····154
2)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163
: 보조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보조금 정산 절차 관리 강화 필요 ·····16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한국학 진흥 ····· 170
: 한국학진흥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 필요····· 172
2)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 177
: 인프라고도화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 179
3) 대학창업 활성화 ····· 185
(1)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청년인턴 비율 확대 필요 ····· 187
(2) 청년자문단 운영 및 청년인턴 운영 사업의 별도 세부사업 편성 필요·· 193
4) 한국장학재단 출연 ····· 19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이자면제 사업의 수요 추산 정확성 제고 필요··· 197
5)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204
: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의 사업수요 확인과 추진 독려 필요····· 207
6)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 215
: K-MOOC 사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홍보 활성화 및 강의 컨텐츠 선정 기준 개선 ····· 217
7) 국립대병원 지원 ····· 227
(1) 임상교육훈련센터 등 교육시설 사업 실집행 제고 필요 ····· 229
(2)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의 사업성과를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 234

4. 책임교육정책실 ---------- 237
【총 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39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 처리의 절차상 문제점 ····· 244
(2)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대응계획 마련 필요 ····· 249

【일반회계】
1)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255
: 국가시책사업 대상 사업 정비 필요 ····· 257
2)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 264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 적절성 검토 필요 ··· 266
3)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275
: 법령상 근거 없는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을 시정할 필요 ····· 277
4) 영재교육 지원사업 ····· 284
(1) 국가영재교육원 종단연구 참여 독려방안 마련 필요 ····· 285
(2) 영재키움 프로젝트 선발 인원 배정 기준 개선 필요 ····· 29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 297
: 인건비의 연례적 불용을 개선할 필요 ····· 299
2)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 304
: 사업의 결과 점검 및 효과성 파악 필요 ····· 30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국고대여학자금융자 ····· 311
: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계획액의 변경 집행 지양 필요 ····· 313
2) 연금급여 ····· 318
: 연금급여 수요의 면밀한 추계 및 지속적 증가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319

5. 교육복지늘봄지원국 ---------- 327
【일반회계】
1) 교육기부 활성화 ····· 329
: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일회성 사업 추진 최소화 필요 ····· 330
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 335
: 4~8일 간격의 국고보조금 교부 부적절 ····· 336

6. 영유아정책국 ---------- 341
【일반회계】
1) 유아 사교육비 조사 ····· 343
: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 필요 ·· 345

2) 영유아보육료 지원 ····· 350
(1) 영유아보육료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 ····· 352
(2)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의 성과 관리 필요 ····· 357
3) 시간제보육 지원 ····· 361
(1) 시간제보육 통합반 확충에 따른 이용률 제고 필요 ····· 363
(2)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시·도별 불균형 해소 필요 ····· 369
4)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 372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 374
5)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379
: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 ····· 382
6)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01] 유보통합) ····· 387
: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 391

7. 학생건강정책국 ---------- 397

【일반회계】
1) 학생건강지원강화 ····· 399
(1) 학생 중심의 사업 방식 변경 및 사업성과 관리 필요 ····· 401
(2)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410
(3)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분할교부할 필요 ····· 413
2) 교육급여 ····· 416
(1) 바우처 방식으로 감소한 수급 인원을 다시 확보할 필요 ····· 418
(2) 사업 일정 축소 및 정산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 ····· 423

8. 소속기관 ---------- 427

가. 국사편찬위원회 ····· 42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수입대체경비) ····· 430
(1) 연례적인 세목 조정을 통한 집행방식 개선 필요 ····· 431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 고도화 사업 신속 추진 검토 필요 ····· 435

Ⅰ. 결 산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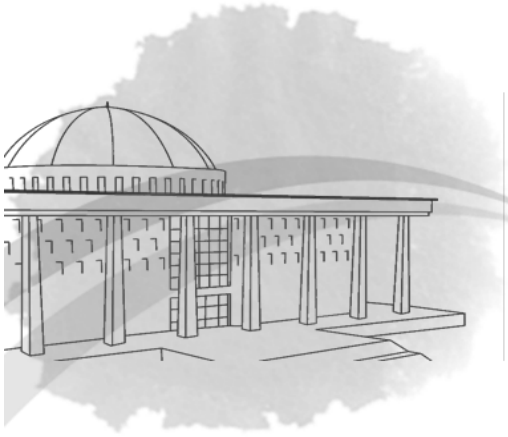

1. 총 괄

가. 세입·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9조 3,711억 6,200만원이며, 19조 4,282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9%인 19조 4,256억 4,600만원을 수납하고 25억 7,2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342,903	342,903	498,192	495,619	2,572	-	99.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824	3,824	3,982	3,982	-	-	10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232,168	3,232,168	3,256,592	3,256,592	-	-	10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792,267	15,792,267	15,669,454	15,669,453	-	-	100.0
합계	19,371,162	19,371,162	19,428,220	19,425,646	2,572	-	99.9

자료: 교육부

❑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1조 1,633억 7,300만원이며, 이 중 95.8%인 106조 4,415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155억 4,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조 7,062억 3,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회계	90,968,627	92,247,113	87,809,641	12,013	4,425,459	95.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58,484	381,807	338,333	-	43,475	88.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232,168	3,232,168	3,232,168	-	-	10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299,577	15,302,285	15,061,454	3,530	237,301	98.4
합계	109,858,856	111,163,373	106,441,596	15,543	4,706,235	95.8

자료: 교육부

나. 기금 결산

❑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3조 4,539억 6,600만원이며, 12조 245억 4,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3%인 11조 9,442억 6,100만원을 수납하고 798억 9,6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억 8,6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음.

<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146,698	13,146,698	13,146,698	11,602,268	11,565,015	36,866	386	99.7
사학진흥기금	307,268	307,268	307,268	422,276	379,246	43,030	-	89.8
합계	13,453,966	13,453,966	13,453,966	12,024,544	11,944,261	79,896	386	99.3

자료: 교육부

❑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3조 4,543억 5,000만원이며, 이 중 88.8%인 11조 9,442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681억 5,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146,698	13,146,698	13,146,698	11,565,015	-	62,292	88.0
사학진흥기금	307,268	307,268	307,652	379,246	-	5,865	123.3
합계	13,453,966	13,453,966	13,454,350	11,944,261	-	68,157	88.8

자료: 교육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6,874억 3,600만원(△9.5%)이 감소한 6조 5,699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505억 2,800만원(2.3%)이 증가하였음.

<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결산(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예산	673,519	354,156	561,173	207,017	△112,346
기금	5,745,822	6,903,149	6,008,696	△894,453	262,874
합계	6,419,341	7,257,305	6,569,919	△687,436	150,528

주: 총수입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수입
자료: 교육부

❑ 2024회계연도 교육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조 9,327억 7,900만원(△3.1%)이 감소한 92조 8,560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2,996억 3,900만원(1.4%)이 증가하였음.

<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결산(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예산	85,273,986	89,614,625	86,363,800	△3,250,825	1,089,814
기금	6,282,429	6,174,208	6,492,254	318,046	209,825
합계	91,568,842	95,788,833	92,856,054	△2,932,779	1,299,639

주: 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지출
자료: 교육부

2. 세입·세출 결산

가.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 교육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429억 300만원, 징수결정액은 4,981억 9,200만원임. 실제 수납액은 4,956억 1,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5%임.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25억 7,2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342,903	498,192	495,619	-	2,572	99.5
재산수입 (토지, 건물대여료 등)	21,416	50,298	50,106	-	192	99.6
경상이전수입 (벌금, 과태료 등)	262,016	382,819	380,444	-	2,376	99.4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잡수입 등)	179	79	74	-	5	93.7
수입대체경비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14,521	22,668	22,668	-	-	100.0
관유물매각대 (고정자산매각대)	2,601	157	157	-	-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기금전입금)	42,170	42,170	42,170	-	-	100.0

자료: 교육부

❑ 주요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기타재산이자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등이 수납됨.

주요 수납내역	
-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380,010백만원
- 기타재산이자수입	49,772백만원
- 수입대체경비 면허료 및 수수료	14,827백만원

❑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는 가산금 등이 있음. 미수납 사유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납기미도래, 관계기관 예산부족 등에 따른 것임.

주요 미수납 내역	
-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1,524백만원
- 가산금	440백만원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4억 9,976만원, 2023년 21억원 7,145만원, 2024년 25억원 7,231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최근 3년(2022 ~ 2024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세입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2022년	208,766	431,352	428,853	2,499	-	99.4
2023년	277,050	634,922	632,741	2,171	9	99.7
2024년	342,903	498,192	495,619	2,572	-	99.5

자료: 교육부

2) 세출 결산

❑ 교육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계기준 90조 9,686억 2,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 1조 2,784억 8,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2조 2,471억 1,300만원임. 이 중 95.2%인 87조 8,096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고, 120억 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조 4,254억 5,9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총계기준[1])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90,968,627	1,278,486	92,247,113	87,809,641	12,013	4,425,459
유아및초중등교육	73,370,563	15,052	73,385,615	69,115,639	7,448	4,262,528
고등교육	16,761,365	-	16,761,365	16,611,365	-	150,000
평생·직업교육	532,268	8,129	540,397	531,515	1,259	7,624
교육일반	144,032	1,538	145,570	138,308	2,380	4,882
기초생활보장	160,399	-	160,399	160,379	-	20
사회복지일반	-	1,296	1,296	1,135	36	126
아동·보육	-	1,252,470	1,252,470	1,251,299	890	281

자료: 교육부

1)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각각의 세입·세출(기금의 경우 수입·지출)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함. 총계에는 국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입·지출 외에도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의 **내부거래**와 정부의 수입·지출 차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 등의 **보전거래**가 모두 포함되는바, 재정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되는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총수입, 총지출이 함께 활용됨.

가) 이체 · 이용 · 전용액

❑ 교육부 2024회계연도 이체액은 1조 435억 1,2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보육 관련 사업 이관에 따른 것임.

❑ 전용액은 236억 1,4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 지원예산 부족분 지원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212억 9,400만원,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 3억 2,100만원 등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체·이용·전용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이 체	이 용	전 용
2024년도	1,043,512	-	± 23,614

자료: 교육부

주요 이체 내역	
보건복지부 보육 관련 사업 이관	1,043,512백만원

주요 전용 내역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21,294백만원
- 기타 등	2,320백만원

나) 다음연도 이월액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중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20억 1,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명시이월액은 없음.

< 2024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주관부서)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교육콘텐츠정책과)	80	o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연구비(260-01) : 15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65백만원	사고이월
보육사업관리 (영유아정책총괄과)	890	o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연구비(260-01) : 890백만원 o (유형자산)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자산취득비(430-01) : 300백만원	사고이월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교육시설담당관)	7,368	o (건설비)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88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2) : 87백만원 - 공사비(420-03) : 7,088백만원 - 감리비(420-04) : 104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1백만원	사고이월
정책연구개발사업 (기획담당관)	113	o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정책연구비(260-02) : 113백만원	사고이월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114	o (국제부담금) 미지급금 이월 - 국제부담금(340-02) : 114백만원	사고이월
학생교육 교류지원	364	o (운영비)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용역비(210-14) : 364백만원	사고이월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국립국제교육원)	94	o (운영비)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용역비(210-14) : 4백만원	사고이월
한국어능력시험개선	57	o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사고이월

사업명(주관부서)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국립국제교육원)		- 일반연구비(260-01) : 57백만원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수입대체경비) (국립국제교육원)	4	o (운영비)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용역비(210-14) : 4백만원	사고이월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학생맞춤통합지원과)	286	o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연구비(260-01) : 286백만원	사고이월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 (사회정책총괄담당관)	200	o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연구비(260-01) : 200백만원	사고이월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정보화) (디지털인프라담당관)	21	o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연구비(260-01) : 200백만원	사고이월
본부·소속기관 기본경비 (본부, 소속기관)	2,423	o (운영비 등) 경상경비 이월 등: 2,196백만원	사고이월

자료: 교육부

다) 불용액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불용액은 4조 4,254억 5,900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2,524억원,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53억원 등임.

주요 불용 내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252,400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5,300백만원
- 인건비 등 기타	167,800백만원

라) 세출결산 증감 현황

❑ 2024회계연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2%로 2023년 대비 6.2%p 증가하였으며, 2022년 대비 △4.6%p 감소하였음.

❑ 불용액은 2023년보다 6조 2,413억 2,100만원 감소한 4조 4,254억 5,900만원이며, 이월액은 2023년 대비 46억 2,400만원 감소한 120억 1,300만원임.

< 최근 3년(2022 ~ 2024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비율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2년	94,233,013	94,272,632	94,104,243	99.8	13,371	155,017
2023년	96,915,833	96,926,556	86,243,138	89.0	16,637	10,666,780
2024년	90,968,627	92,247,113	87,809,641	95.2	12,013	4,425,459

자료: 교육부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 결산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38억 2,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억 8,200만원으로 이 중 100.0%에 해당하는 39억 8,200만원이 수납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은 없음.

< 2024 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3,824	3,982	3,982	-	-	100.0
지역지원계정	3,824	3,982	3,982	-	-	100.0
- 기타재산수입	703	2,264	2,264	-	-	100.0
- 기타경상이전수입	3,121	1,718	1,718	-	-	100.0

자료: 교육부

2) 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818억 700만원으로, 이 중 91.1%인 3,383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고, 434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부문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58,484	381,807	338,332	-	43,475
유아및초중등교육	358,484	358,484	331,165	-	27,319
아동·보육	-	23,323	7,167	-	16,156

자료: 교육부

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 세입 결산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되었음.

❑ 2024회계연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3조 2,321억 6,800만원, 징수결정액은 3조 2,565억 9,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0%인 3조 2,565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음.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은 없음.

< 2024회계연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3,232,168	3,256,592	3,256,592	-	-	100.0
재산수입	-	4,686	4,686	-	-	100.0
경상이전수입	-	23,314	23,314	-	-	100.0
세계잉여금	21,106	17,962	17,962	-	-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211,062	3,210,631	3,210,631	-	-	100.0

자료: 교육부

2) 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조 2,321억 6,800만원으로, 이 중 100.0%인 3조 2,321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회계연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결산(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부문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232,168	3,232,168	3,232,168	-	-
유아및초중등교육	3,232,168	3,232,168	3,232,168	-	-

자료: 교육부

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세입 결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 2024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5조 7,922억 6,700만원, 징수결정액은 15조 6,694억 5,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5조 6,694억 5,300만원을 수납하였음.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15,792,267	15,669,454	15,669,453	-	1	99.9
재산수입	3,088	8,914	8,914	-	-	100.0
경상이전수입	40,109	57,138	57,137	-	1	99.9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35	35	-	-	100.0
수입대체경비수입	6,402	9,656	9,656	-	-	100.0
세계잉여금	-	1,042	1,042	-	-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5,742,668	15,592,668	15,592,668	-	-	100.0

자료: 교육부

2) 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5조 3,022억 8,500만원으로, 이 중 98.4%인 15조 614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고, 35억 3,0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373억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전용액은 5억 5,0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국립대학 공공요금 부족 등에 의한 것임.

❑ 불용액은 2,373억 100만원으로 집행잔액 등에 따른 것임.

< 2024회계연도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결산(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부문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5,299,577	15,302,285	15,061,454	3,530	237,301
고등교육	14,615,606	14,618,314	14,378,007	3,530	236,777
평생·직업교육	683,971	683,971	683,446	-	525

자료: 교육부

가) 이체, 이월, 전용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이 체	이 월	전 용
2024년도	-	3,530	±550

자료: 교육부

주요 전용 내역	
- 국립대학 기본경비 공공요금 부족 등	550백만원

나) 다음연도 이월액

❑ 2024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중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35억 3,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명시이월액은 없음.

< 2024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주관부서)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교육국제화담당관)	30	o (민간이전) 미지급금 이월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0백만원	사고이월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지역인재정책과)	52	(민간이전)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52백만원	사고이월
기초학문 확산지원 (학술연구정책과)	86	o (민간이전)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86백만원	사고이월

사업명(주관부서)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국립대학 시설확충 (교육시설담당관)	3,362	o (운영비) 미지급금 이월 - 일반용역비(210-14) : 240백만원 o (건설비)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실시설계비(420-02) : 9백만원 - 공사비(420-03) : 3,109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4백만원	사고 이월

자료: 교육부

다) 불용액

❑ 2024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액의 불용액은 2,373억 100만원으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1200억원, 국립대학 인건비 778억 1,100만원 등임.

주요 불용 내역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120,000백만원
- 국립대학 인건비	77,811백만원
- 기타	33,589백만원

3. 기금 결산

가. 사학진흥기금

1) 재무상태

❑ 2024년도 말 기준 사학진흥기금 총 자산은 1조 5,645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5억 5,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유동자산 2,552억 3,000만원, 투자자산(융자금 등) 1조 2,892억 600만원,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01억 5,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당기말 부채총액은 1조 683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1억 3,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유동부채 1,100억 400만원, 비유동부채 9,583억 3,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당기말 순자산 금액은 4,962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 8,200만원 증가함.

< 2024년도 사학진흥기금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과 목		금 액		
		2024년(A)	2023년(B)	증 감 (A-B)
자 산	유 동 자 산	255,230	253,198	2,032
	(1) 현금및현금등가물	104,648	89,989	14,659
	(2) 단기금융상품	2,200	1,900	300
	(3) 단기대여금 등	148,382	161,309	△12,927
	투 자 자 산	1,289,206	1,331,985	△42,779
	(1) 장기금융상품	-	-	-
	(2) 장기대여금	1,288,547	1,331,330	△42,783
	(3) 기타투자자산 등	659	655	4
	일반유형자산	18,869	19,252	△383
	무형자산	1,138	632	506
	기타비유동자산	144	76	68
	계	1,564,587	1,605,143	△40,556
부채및자본	< 부 채 >	1,068,336	1,111,474	△43,138
	(1) 유동부채	110,004	150,234	△40,230
	(2) 비유동부채	958,332	961,240	△2,908
	< 순 자 산 >	496,251	493,669	2,582
	(1) 기본순자산	195,832	195,832	-
	(2) 적립금 및 잉여금	298,466	295,873	2,593
	(3) 순자산조정	1,953	1,964	△11
	계	1,564,587	1,605,143	△40,556

자료: 교육부

2) 손익상황

❑ 사학진흥기금의 2024년도 프로그램 총원가는 전년대비 8억 9,900만원 감소한 336억 2,100만원임. 프로그램순수익은 전년대비 8억 6,300만원 증가한 376억 3,900만원임.

❑ 공통비용인 관리운영비는 전년보다 7억 200만원 감소하였으며 법인세 등으로 구성된 비배분비용은 전년보다 1억 1,600만원 증가함. 여유자금 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된 비배분수익이 1억 2,200만원 증가하여 재정 운영순원가는 25억 9,300만원(이익)임.

< 2024년도 사학진흥기금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24년(A)	2023년(B)	증감(A-B)	
Ⅰ. 프로그램총원가	**33,621**	**34,520**	**△899**	
1. 대학자율역량강화	2,919	2,135	784	
2. 대학교육 역량강화 (기금,융자)	30,702	32,385	△1,683	
Ⅱ. 프로그램순수익	**37,639**	**36,776**	**863**	
1. 대학자율역량강화	1,324	1,477	△153	
2. 대학교육 역량강화 (기금,융자)	36,315	35,299	1,016	
Ⅲ. 프로그램순원가(Ⅰ-Ⅱ)	**△4,018**	**△2,256**	**△1,762**	
1. 대학자율역량강화	1,595	658	937	
2. 대학교육 역량강화 (기금,융자)	△5,613	△2,914	△2,699	

Ⅳ. 관리운영비	3,557	4,259	△702	공통비용
Ⅴ. 비배분비용	2,017	1,901	116	법인세 등
Ⅵ. 비배분수익	4,149	4,027	122	여유자금 운용 등
Ⅶ. 재정운영순원가 (Ⅲ+Ⅳ+Ⅴ-Ⅵ)	△2,593	△123	△2,470	
Ⅷ. 비교환수익등	-	-	-	
Ⅸ. 재정운영결과(Ⅶ-Ⅷ)	△2,593	△123	△2,470	

자료: 교육부

3) 운용실적

가) 수입결산

❑ 사학진흥기금의 2024년도 수입실적은 계획현액 3,072억 6,800만원보다 719억 7,800만원(23.4%) 증가한 3,792억 4,600만원임.

< 2024년 사학진흥기금 수입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현액(A)	실적(B)	증감	
			(B-A)	%
계	307,268	379,246	71,978	23.4
ㅇ 자체수입	170,630	188,023	17,393	10.2
ㅇ 정부내부수입	104,374	99,193	△5,181	△5.0
ㅇ 여유자금회수	32,264	92,030	59,766	185.2

자료: 교육부

❑ 자체수입은 계획현액 1,706억 3,000만원 대비 173억 9,300만원 증가한 1,880억 2,300만원이며, 정부내부수입은 정부차입금 감소로 계획현액 1,043억 7,400만원 대비 51억 8,100만원 감소한 991억 9,300만원임. 여유자금회수는 계획현액 322억 6,400만원 대비 597억 6,600만원이 증가한 920억 3,000만원임.

나) 지출결산

❑ 2024년도 지출결산의 경우 계획현액 3,076억 5,200만원 중 3,792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8억 6,500만원을 불용함.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비의 경우 계획현액 1,032억 4,200만원 중 987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 5,0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기금운영비는 계획현액 114억 2,300만원 중 109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4,200만원을 불용함.

정부내부지출은 계획현액 1,634억 5,600만원 중 1,624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7,300만원을 불용함.

여유자금운용은 1,069억 8,900만원임.

< 2024년도 사학진흥기금 지출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 현액(A)	실적 (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계	307,652	379,246	123.3	-	5,865
<사업비>	103,242	98,792	95.7	-	4,450
[2302]학교경영지원사업	1,169	1,129	96.6	-	40
[450]학교경영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1,169	1,129	96.6	-	40
[2861]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102,073	97,663	95.7	-	4,410
[300]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69,000	69,000	100.0	-	-
[301]행복기숙사 지원사업	28,623	28,623	100.0	-	-
[305]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4,450	40	0.9	-	4,410
<기금운영비>	11,423	10,982	96.1	-	442
[2976]기금운영비	9,989	9,569	95.8	-	421
[100]인건비	5,894	5,490	93.1	-	404
[200]기타경비	3,995	3,979	99.6	-	17
[206]대학재정분석	100	100	100.0	-	-
[2978]정보화경비	1,434	1,413	98.5	-	21
[250]정보시스템운영	1,434	1,413	98.5	-	21
<정부내부지출>	163,456	162,483	99.4	-	973
[9110]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	126,480	126,480	100.0	-	-
[841]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126,480	126,480	100.0	-	-
[9111]주택도시기금예수원금상환	16,042	16,042	100.0	-	-
[840]주택도시기금예수원금상환	16,042	16,042	100.0	-	-
[9201]공자기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9,662	8,841	91.5	-	821
[841]공자기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9,662	8,841	91.5	-	821
[9202]주택도시기금예수이자상환	11,272	11,120	98.7	-	152
[840]주택도시기금예수이자상환	11,272	11,120	98.7	-	152
<여유자금운용>	29,531	106,989	362.3	-	-
[9701]여유자금운용	29,531	106,989	362.3	-	-
[971]통화금융기관예치금	29,531	106,989	362.3	-	-

자료: 교육부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재무상태

❑ 2024년도 말 기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총자산은 28조 7,472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조 7,986억 9,500만원(6.7%)이 증가하였으며, 그 구성내역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 유동자산이 4조 650억 4,200만원(14.1%), 장기투자증권 등 투자자산이 24조 2,739억 7,300만원(84.5%), 유형자산 등 및 기타 비유동자산이 4,082억 3,500만원(1.4%)임.

< 2024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과 목		금 액		
		2024년(A)	2023년(B)	증감(A-B)
자산	유 동 자 산	4,065,042	3,687,158	377,884
	(1) 단기투자증권	3,398,309	2,934,107	464,202
	(2) 기타유동자산	666,733	753,051	△86,318
	투 자 자 산	24,273,973	22,846,772	1,427,201
	(1) 장기투자증권	22,249,333	20,689,877	1,559,456
	(2) 장기대여금 등	2,024,640	2,156,895	△132,255
	유 형 자 산 등	403,145	410,281	△7,136
	기타 비유동자산	5,090	4,344	746
	합 계	28,747,250	26,948,555	1,798,695
부채및자본	< 부 채 >	642,203	587,892	54,311
	(1) 유동부채	223,568	123,534	100,034
	(2) 비유동부채	418,635	464,358	△45,723
	< 순 자 산 >	28,105,047	26,360,663	1,744,384
	(1) 기본순자산	-	-	-
	(2) 적립금 및 잉여금	23,986,611	23,817,653	168,958
	(3) 순자산조정	4,118,436	2,543,010	1,575,426
	합 계	28,747,250	26,948,555	1,798,695

자료: 교육부

- 유동자산은 4조 650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78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단기투자증권이 4,642억 200만원 증가하고, 기타유동자산이 863억 1,8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 장기보유목적의 투자자산은 24조 2,739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조 4,272억 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장기투자증권이 1조 5,594억 5,600만원 증가하고, 장기대여금 등은 1,322억 5,5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 유형자산 등은 71억 3,600만원 감소하였으며, 기타 비유동자산은 7억 4,600만원 증가하였음.

❑ 당기말 부채총액은 6,422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3억 1,100만원(9.2%)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 내역은 유동부채 2,235억 6,800만원, 국고위탁금 등 비유동부채 4,186억 3,500만원임.

❑ 당기말 순자산은 28조 1,050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조 7,443억 8,400만원(6.6%)이 증가하였음.

- 2024년도 적립금 및 잉여금은 전년대비 1,689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자산의 조정(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은 전년대비 1조 5,75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음.

2) 손익상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2024년도 프로그램총원가는 5조 6,887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52억 5,000만원 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램수익은 4조 6,832억원으로 전년대비 316억 8,200만원 감소하였고, 관리운영비는 전년대비 29억 2,400만원 증가하였으며, 비배분비용은 전년대비 2,032억 3,000만원 감소하였고, 비배분수익은 2,641억 5,8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대비 76억 3,500만원 증가한 1,689억 5,800만원(이익)임.

< 2024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24년(A)	2023년(B)	증감(A-B)	
Ⅰ. 프로그램총원가	5,688,798	5,263,548	425,250	
1. 연금급여 등 지급	5,661,452	5,235,803	425,649	연금사업
2. 융자 및 회관사업	27,346	27,745	△399	대여,회관임대
Ⅱ. 프로그램수익	4,683,200	4,714,882	△31,682	
1. 연금급여 등 지급	4,574,681	4,593,941	△19,260	연금사업
2. 융자 및 회관사업	108,519	120,940	△12,421	대여,회관임대
Ⅲ. 프로그램순원가(Ⅰ-Ⅱ)	1,005,598	548,666	456,932	
1. 연금급여 등 지급	1,086,771	641,861	444,910	연금사업
2. 융자 및 회관사업	△81,173	△93,195	12,022	대여,회관임대
Ⅳ. 관리운영비	15,606	12,682	2,924	공통비용
Ⅴ. 비배분비용	84,124	287,354	△203,230	자금운용
Ⅵ. 비배분수익	1,278,323	1,014,165	264,158	자금운용
Ⅶ. 재정운영순원가 (Ⅲ+Ⅳ+Ⅴ-Ⅵ)	△172,995	△165,462	△7,533	
Ⅷ. 비교환수익 등	△4,037	△4,139	102	
Ⅸ. 재정운영결과 (Ⅶ-Ⅷ)	△168,958	△161,323	△7,635	당기순이익

자료: 교육부

❑ 프로그램총원가는 5조 6,887억 9,800만원인데, 연금급여 등이 5조 6,614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56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융자 및 회관사업은 3억 9,900만원 감소하였음.

❑ 프로그램수익은 4조 6,832억원인데, 연금급여 등이 4조 5,746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2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융자 및 회관사업은 124억 2,100만원 감소하였음.

❑ 자금운용비용인 비배분비용이 841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32억 3,000만원 감소하였고, 자금운용수익인 비배분수익은 1조 2,783억 2,300만원으로 2,641억 5,800만원 증가하였음.

❑ 재정운영결과는 1,689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억 3,500만원 증가하였음.

3) 운용실적

가) 수입결산

❑ 기금 수입실적은 계획현액 13조 1,466억 9,800만원보다 1조 5,816억 8,300만원이 감소한 11조 5,650억 1,500만원으로 계획현액 대비 88.0% 수납하였음. 자체수입이 5조 8,206억 7,300만원으로 계획대비 13.5% 감소하였고, 여유자금 회수는 4조 7,331억 8,800만원으로 계획대비 12.4%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4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수입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현액(A)	실적(B)	증 감	
			(B-A)	%
계	13,146,698	11,565,015	△1,581,683	△12.0
ㅇ 자체수입	6,732,519	5,820,673	△911,846	△13.5
ㅇ 정부내부수입	1,011,154	1,011,154	-	-
- 일반회계전입금	1,011,154	1,011,154	-	-
ㅇ 여유자금회수	5,403,025	4,733,188	△669,837	△12.4

자료: 교육부

나) 지출결산

❑ 2024년도 기금 지출실적은 계획현액 13조 1,466억 9,800만원보다 1조 5,816억 8,300만원이 감소한 11조 5,650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622억 9,2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은 계획현액 7,107억 2,000만원 대비 99.5%인 7,073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33억 8,8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은 계획현액 5조 7,016억 9,100만원 중 99.0%인 5조 6,460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556억 1,6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기금운영비는 계획현액 323억 6,100만원 중 89.8%인 290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 8,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대여학자금반환은 계획현액 421억 7,000만원으로 100.0% 지출하고, 여유자금운용은 계획현액 6조 6,597억 5,600만원 중 77.2%인 5조 1,403억 6,500만원을 지출함.

< 2024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지출실적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현액(A)	실적(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계	13,146,698	11,565,015	88.0	-	62,292
6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710,720	707,332	99.5	-	3,388
회관운영사업(6033-302)	18,130	18,044	99.5	-	86
정보시스템구축(6034-300)	3,654	3,613	98.9	-	41
국고대여학자금융자(6036-300)	54,451	51,288	94.2	-	3,163
생활안정자금대여(6037-300)	630,959	630,929	99.9	-	30
고객지원(6038-300)	2,405	2,342	97.4	-	63
자금운용사업비(6040-300)	1,121	1,116	99.6		5
6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5,701,691	5,646,075	99.0	-	55,616
연금급여(6131-400)	4,840,779	4,817,689	99.5	-	23,090
재해보상급여(6132-401)	54,865	53,960	98.3	-	905
퇴직수당급여(6133-402)	806,047	774,426	96.1	-	31,621
63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운영비	32,361	29,073	89.8	-	3,288
인건비(6376-100)	22,523	19,968	88.7	-	2,555
기타경비(6376-200)	9,838	9,105	92.6	-	733
8800 회계기금간거래(대여학자금반환)	42,170	42,170	100.0	-	-
국고대여학자금반환(8810-885)	42,170	42,170	100.0	-	-
9700 여유자금운용	6,659,756	5,140,365	77.2	-	-
통화금융기관예치(9703-971)	512,746	423,709	82.6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3-972)	2,047,324	1,069,794	52.3	-	-
국채매입(9703-974)	577,087	138,501	24.0	-	-
국채외채권매입(9703-975)	682,962	1,101,093	161.2	-	-
주식매입(9703-976)	1,671,060	1,343,961	80.4	-	-
기타유가증권매입(9703-977)	1,168,577	1,063,307	91.0	-	-

자료: 교육부

4. 재무 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재정상태표)

❑ 2024회계연도 말 현재 교육부의 자산은 62조 6,200억 7,600만원, 부채는 2조 604억 2,000만원으로 순자산은 60조 5,596억 5,600만원임.

❑ 자산은 유동자산 5조 622억 6,000만원, 투자자산 25조 6,581억 2,400만원, 일반유형자산 31조 8,028억 2,200만원, 무형자산 808억 4,5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조 5,146억 6,600만원(4.2%) 증가함. 이는 주로 단기투자증권이 4,642억 원 증가하는 등 유동자산이 4,687억 원 증가(10.2%)하였고, 장기투자증권이 1조 5,670억 원 증가하는 등 투자자산이 1조 3,920억 원 증가(5.7%)하였으며, 국립대학 시설확충에 따라 일반유형자산이 6,487억 원 증가(2.1%)함에 기인함.

❑ 부채는 유동부채 3,072억 4,800만원, 장기차입부채 9,555억 2,4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7,945억 4,600만원, 장기충당부채 31억 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329억 2,100만원(12.7%) 증가함. 이는 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로 장기충당부채가 5억 4,300만원(21.2%) 증가하였고, BTL임대료장기미지급금이 증가하는 등 기타비유동부채가 2,583억 원 증가(48.2%) 등에 기인함.

< 2024회계연도 교육부 재정상태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회계연도(A)	2023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62,620,076	60,105,410	2,514,666	4.2
Ⅰ. 유동자산	5,062,260	4,593,515	468,745	10.2
Ⅱ. 투자자산	25,658,124	24,266,081	1,392,043	5.7
Ⅲ. 일반유형자산	31,802,822	31,154,165	648,657	2.1
Ⅳ. 무형자산	80,845	82,400	△1,555	△1.9
Ⅴ. 기타비유동자산	16,024	9,250	6,774	73.2
부 채	2,060,420	1,827,499	232,921	12.7
Ⅰ. 유동부채	307,248	329,998	△22,750	△6.9
Ⅱ. 장기차입부채	955,524	958,681	△3,157	△0.3
Ⅲ. 장기충당부채	3,102	2,559	543	21.2
Ⅳ. 기타비유동부채	794,546	536,260	258,286	48.2
순 자 산	60,559,656	58,277,912	2,281,744	3.9
Ⅰ. 기본순자산	19,566,441	19,562,271	4,17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1,795,278	20,962,075	833,203	4.0
Ⅲ. 순자산 조정	19,197,937	17,753,566	1,444,371	8.1

자료: 교육부

나. 재정운영 분석(재정운영표)

❑ 교육부는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87조 77억 1,400만원 발생하였음.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92조 3,426억 7,300만원, 관리운영비 1,816억 8,700만원, 비배분비용 1,312억 8,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조 9,016억 8,800만원, 비배분수익 1조 7,502억 8,400만원, 비교환수익 △40억 3,700만원으로 구성됨.

❑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조 3,893억 9,200만원(1.6%) 증가한 87조 36억 7,7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1조 6,615억 9,7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총 23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프로그램(64조 6,208억원)과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프로그램(4조 9,679억원) 등으로 나타남.

❑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986억원, 복리후생비 49억원, 기타관리운영비 78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자산처분손실 744억원, 이자비용 284억원, 기타비용 27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이자수익 2,692억원, 자산처분이익 6,072억원, 기타수익 8,527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회계연도 교육부 재정운영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88,440,985	86,779,388	1,661,597	1.9
가. 프로그램 총원가	92,342,673	90,669,266	1,673,407	1.8
나. 프로그램 수익	3,901,688	3,889,878	11,810	0.3
Ⅱ. 관리운영비	181,687	169,046	12,641	7.5
Ⅲ. 비배분비용	131,289	313,454	△182,165	△58.1
Ⅳ. 비배분수익	1,750,284	1,647,604	102,681	6.2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87,003,677	85,614,285	1,389,392	1.6
Ⅵ. 비교환수익 등	△4,037	△4,139	102	2.5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87,007,714	85,618,424	1,389,290	1.6

자료: 교육부

다. 순자산변동 분석(순자산변동표)

❑ 교육부의 2024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58조 2,779억 1,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60조 5,596억 5,6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조 2,817억 4,400만원(3.9%)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1조 3,892억 9,000만원 증가하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6,879억 6,000만원 감소한 반면,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1조 2,376억 1,3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임.

❑ 한편, 2024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107조 2,502억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9조 4,137억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1조 5,767억원, 자산재평가이익 △1,323억원 등으로 구성됨.

< 2024회계연도 교육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58,277,912	55,156,531	3,121,381	5.7
Ⅱ. 재정운영결과	87,007,714	85,618,424	1,389,290	1.6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87,836,471	86,598,858	1,237,613	1.4
Ⅳ. 조정항목	1,452,987	2,140,947	△687,960	△32.1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60,559,656	58,277,912	2,281,744	3.9

자료: 교육부

5. 2024회계연도 신규 및 종료사업

❑ 교육부 소관 2024회계연도 신규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등 21개 세부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집행액은 총 5조 4,716억 8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신규사업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액	집행액
일반회계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	○ 대안교육기관 관련 실태조사·연구 추진,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 조사·연구 수행	600	600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 디지털 기반의 창의·융합 탐구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융합 탐구대회 운영 및 체계적인 진로 탐색·체험 지원 등을 위한 창의인성 교육넷 활성화 지원 필요	1,123	1,123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국가가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	533,320	504,078
	유아 사교육비 조사	○ 영유아 대상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560	560
	보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	○ 보육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제 대상)	83	40
	보육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 보육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제 비대상)	39	30
	영유아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2,673,100	2,850,100

구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액	집행액
	시간제보육 지원	○ 시간제보육료 및 제공기관·관리기관 인건비·운영비 지원	25,005	25,005
	보육사업관리	○ 보육·교육사업의 지원 및 관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3,650	3,212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종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국적 확충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치비(50%) 지원	982	982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보수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	1,314	1,635
	보육실태조사	○ 전국 차원의 영유아 양육 가구의 보육 현황·수요와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생산	690	620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법정기관으로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 운영지원 등	21,729	21,729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국공립·법인 어린이집과 취약보육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1,886,306	1,940,854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	108,075	86,46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자율)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성이 높은 기존 어린이집에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	7,384	7,384
	어린이집 확충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	41,654	25,498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세종)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성이 높은 기존 어린이집에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	71	71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제주)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성이 높은 기존 어린이집에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	185	185

구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액	집행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플랫폼 구축(정보화)	○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게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학습분석 빅데이터 공유플랫폼을 제공	351	326
사학연금기금	자금운용사업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자금운용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사업명 변경)	1,121	1,116
계			5,307,342	5,471,608

자료: 교육부

❑ 교육부 소관 사업 중 2024회계연도에 종료된 사업은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집행액은 총 618억 4,4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종료사업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현액	집행액
일반회계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차원의 올바른 자녀 교육정보 및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여 학부모 역량강화	197	197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R&D)	○ 학교 내 미세먼지의 현상규명, 저감기술 개발, 진단・실증, 법・제도 개선 등 4대 부문별 연구개발을 지원	60	60
	유아 사교육비 조사	○ 유아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경감 등 교육정책 추진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전국 0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 표본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조사	560	560
	보육실태조사	○ 전국 차원의 영유아 양육 가구의 보육 현황·수요와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생산	690	620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종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국적 확충을	982	982

구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 현액	집행액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치비(50%) 지원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	○ 복잡한 사회문제를 종합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 전략 수립, 의제 발굴 및 연구·분석 체계 구축·운영 등	1,100	1,04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 미래 역량과 수업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교육과정 개선 등	21,537	21,537
	인재정책기획관 연구기획평가(R&D)	○ 인재정책기획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 평가의 전문성·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평가체계의 효율성·신뢰성 강화 등	7,900	6,800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 전문대학이 지역의 전략 및 선도산업과 연계하여 특화된 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와 연계하여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	731	731
	마이스터대 지원	○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체계적·장기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을 발굴·확산	14,200	14,200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지원	○ 산업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등을 대상으로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	15,110	15,110
계			63,067	61,844

자료: 교육부

6. 2024회계연도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 결산

가. 결산 총괄

❑ 정부는 ‘유보통합[2] 추진방안’을 발표(’23.1.30.)하고,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23.4.4.)하였으며, 유보통합 1단계(’23~’24)에서는 교육부·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재원 이관 및 통합,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을 목표로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추진하였음.

❑ 이에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12월 26일 의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소관 ‘영유아 보육 관련 사업’이 2024년 6월 27일 교육부로 이관되었고, 이관된 사무[3]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함.

❑ 2024년도에 교육부로 이관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소관 ‘영유아 보육 관련 사업’의 2024회계연도 결산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세출예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

2) 유보통합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교육과 돌봄 기관이 이원화되어 기관선택에 따라 서비스의 질 차이로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애 초기 영유아 단계부터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출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3) 다만, 종전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소관 세부사업 중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에서 계속 수행**하기로 함.

나. 개요

❑ 2024회계연도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초 4조 7,726억 8,2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억 6,1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조 7,733억 4,300만원이며, 이 중 3조 7,065억 7백만원을 2024년 6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집행하였고, 1조 668억 3,600만원을 교육부로 이체함.

< 2024년도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최종 이체액
		전년도이월액	전용 등			
합 계	4,772,682	661	-	4,773,343	3,706,507	1,066,836
□ 일반회계(사업비)	4,720,851	661	-	4,721,512	3,679,296	1,042,216
영유아보육료 지원 (3133-331)	2,673.100	-	-	2,673.100	2,138,475	534,625
시간제보육 지원 (3133-336)	25,005	-	-	25,005	20,919	4,086
보육사업관리 (3135-350)	3,650	661	-	4,311	574	3,736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3135-353)	982	-	-	982	462	520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3135-354)	1,314	-	-	1,314	965	349
보육실태조사 (3135-362)	690	-	-	690	496	194

사 업 명	예산액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최종 이체액
		전년도이월액	전용 등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3135-372)	21,729	-	-	21,729	16,297	5,43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3140-404)	1,886,306	-	-	1,886,306	1,414,648	471,659
가정양육수당 지원 (3141-300)	108,075	-	-	108,075	86,460	21,615
□ 일반회계 (인건비, 기본경비)	2,537	-	-	2,537	1,241	1,296
본부 인건비(7001-100)	2,415	-	-	2,415	1,198	1,217
보육정책관 기본경비 (총액)(7011-222)	83	-	-	83	27	56
보육정책관 기본경비 (비총액)(7011-293)	39	-	-	39	16	2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49,294	-	-	49,294	25,971	23,323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율) (3134-300)	7,384	-	-	7,384	5,384	2,000
어린이집 확충 (3134-300)	41,654	-	-	41,654	20,331	21,323
어린이집 기능보강(제주) (3134-300)	185	-	-	185	185	-
어린이집 기능보강(세종) (3134-300)	71	-	-	71	71	-

7.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가.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현황

요 구 수 준						합 계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	-	6	38	53	3	94

나.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조 치 결 과			합 계
시정완료	시정중	시정 미이행	
78	16	-	94

다.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상세내역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현황 (‘25.7.31.)
□ 결산		
(1)교육부의 과도한 기본경비 전용 부적절	제도개선	조치완료
(2)적절한 세입편성과 지출규모에 맞는 세출예산 편성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3)집행률과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글로컬 대학 사업의 국회 심의절차 준수 필요	주의	조치완료
(6)재외한국학교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예산의 사업목적과 계획에 맞는 사용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8)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고도화 사업 지연	주의	조치완료
(9)에듀테크 사업의 효과성 파악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0)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1)법학전문대학원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2)신규과제의 회계연도내 연구기간 등 고려한 집행관리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3)인문사회융합 인재양성대학 사업의 성과관리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4)LAMP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준비를 통한 집행관리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5)지역대학 R&D 배분에 따른 연구성과 등 평가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6)대학창업펀드 조성사업 연차별 최소투자비율 준수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7)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연례적인 사업순연 문제	주의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현황 ('25.7.31.)
(18)학교기업의 수익성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9)미수납액 관리 필요	주의	조치완료
(20)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 강화 필요	주의	조치완료
(21)사업취지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및 철저한 사업 관리·감독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2)적정예산 편성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3)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주의	조치완료
(24)이·전용 대상 사업 선정 시 신중한 검토 필요	주의	조치완료
(25)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개선	주의	조치완료
(26)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	제도개선	조치완료
(27)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불용과 이월 발생 개선	주의	조치완료
(28)적법한 이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예산 집행 부적절	주의	조치완료
(29)공동 AP과목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0)인건비의 연례적 불용 개선	주의	조치완료
(31)지급방식 변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개선	제도개선	조치완료
(32)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제도개선	조치완료
(33)운영기관의 신속한 선정 및 사업 성과 개선	제도개선	조치완료
(34)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사업 집행관리 개선	주의	조치완료
(35)출연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6)인건비의 체계적 편성 및 집행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7)수요에 부합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게재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8)정보화 관리용역사업의 적정 사업 및 비목 편성·집행 필요	주의	조치중
(39)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40)특수학교 설립 지연 및 반복적인 사업비 이월 부적절	주의	조치중
(41)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2)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시도별 편차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련 주의 필요	주의	조치완료
(4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예산 지원근거 마련	제도개선	조치완료
(45)지역현안 특별교부금 투명성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6)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방식 검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7)법률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국회보고 내실화 필요	시정	조치완료
(48)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및 관리문제 개선	제도개선	조치중
(49)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집행관리 철저 및 사업지연 방지 필요	주의	조치완료
(50)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실집행저조 문제 개선 필요	시정	조치완료
(51)행복기숙사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연차별 예산 배정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2)교육급여 신청률 제고 방안 마련과 사업기간 조정 및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과정 통합	주의, 제도개선	조치완료
(53)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자체수입 확보 내실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54)정보화 서비스 개편 사업 관리 철저 필요	시정, 제도개선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현황 ('25.7.31.)
(55)세수결손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적절한 불용처리 시정 필요	시정	조치완료
(56)특별교부금 배분 비율 준수 필요	시정	조치완료
(57)보통교부금의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재원의 증감액에 대해 일관된 기준 적용 필요	주의	조치완료
(58)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 수당지급 필요	시정	조치완료
(59)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배정시기 조정 최소화 및 적시지원 필요	주의	조치완료
(60)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강화 방안 마련 필요	주의	조치완료
(61)특성화고 학생 지원 예산 이용을 통한 잼버리 긴급지원 부적절	주의	조치완료
(62)재단채 조달비용 절감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3)이자면제 사업의 적정 수준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4)취업후 학자금대출 사업의 학자금 중복지원 해소를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주의	조치완료
(65)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주의	조치완료
(66)적정 규모 예산 편성을 통해 불용액 규모 최소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7)국가장학금 제도 취지에 맞는 장학사업 운영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8)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간 연례적인 조정 지양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9)유네스코 교육협력지원 사업 관련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보조사업 추가 지연 방지	주의	조치완료
(70)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결원 보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71)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및 현장실습 참여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2)면밀한 사업계획 설정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실집행률 제고 필요	주의	조치완료
(73)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개선 필요	주의	조치완료
(74)의견수렴 부족에 따른 대규모 불용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 필요	주의	조치완료
(75)국립대학 인건비 불용 최소화를 위해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주의	조치완료
(76)일반재정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한 대학정책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7)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 성과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8)한·미대학생연수 사업의 예산집행 구조 개선 및 서비스기관의 질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9)글로컬대학 예산 적기 교부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80)대학혁신지원사업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시정 필요	주의	조치완료
(81)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집행관리 필요	주의	조치완료
(82)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집행 부진 개선 필요	주의	조치완료
(83)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의 동물실험실 구축사업 추진 지연 및 실험실습기자재 장비 활용실적 저조 등 관리필요	주의	조치완료
(84)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필요	주의	조치완료
(85)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사업관리 철저 및 적정예산 편성 필요	주의, 제도개선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현황 ('25.7.31.)
(86)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 집행 부진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87)편성된 계획액 범위 내 사업 추진 및 면밀한 계획액 편성 필요	주의	조치중
(88)사학연금급여의 연례적 과소 편성 및 계획 변경 지양 필요	주의	조치중
(89)퇴직수당 지급 비용의 공단 부담금 지속 여부 재검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90)사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비용의 국고 지원 적절성 검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91)한국판 뉴딜사업 검토 및 평가 필요	주의	조치중
(92)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 개선 및 영유아보육법상 기준에 따른 시도별 센터 설치 필요	주의	조치중
(93)사학연금 휴업급여 예산 편성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 예비비		
(1)영유아보육료 편성 대비 과다 집행에 따른 예산편성 방식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8.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24년도 예비비 배정액은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의 2,102억 5,4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함.

❑ 주요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보육시설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1,770억원을 배정받음.

-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부족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332억 5,400만원을 배정받음.

< 2024년도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 예비비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배정액	배정 사유
영유아보육료 지원	177,000	'24년 보육시설 이용자 수 증가(+39천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33,254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부족
계	210,254	

Ⅱ. 검 토 의 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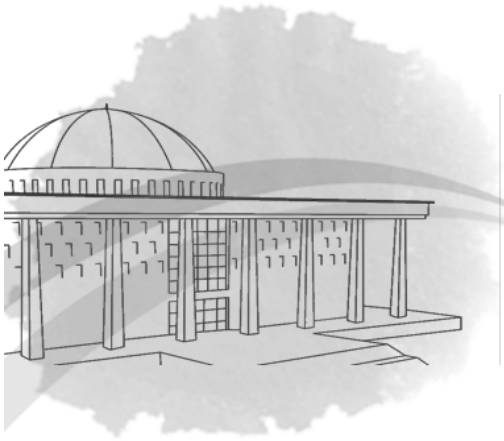

1. 기획조정실

<총 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4)]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등)에게 기관별 총구매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5)].

---

4) 문의: 02-6788-5187

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국립대학교(37개교), 국립특수학교(5개교)[6]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7]으로, 동 기관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1%)을 준수하여야 하나[8], 2024년도의 경우 총 28개의 기관에서 해당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1% 미만인 공공기관 >

(단위: 백만원)

연번	기관명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1	국립강릉원주대학교	26,690	84	0.3%
2	강원대학교	62,042	383	0.6%
3	국립군산대학교	28,959	73	0.3%
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20,878	92	0.4%
5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5,177	238	0.9%
6	국립부경대학교	46,318	92	0.2%
7	부산교육대학교	5,701	21	0.4%
8	부산대학교	93,828	125	0.1%
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8,523	213	0.6%

6) 한국경진학교, 한국선진학교, 한국우진학교, 서울농학교, 서울맹학교

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교육기관

8) 위의 기관들 또한 구매목표비율이 1%임.

10	서울교육대학교	5,513	30	0.6%
11	국립안동대학교	22,378	122	0.5%
12	전주교육대학교	7,035	28	0.4%
13	제주대학교	51,175	97	0.2%
14	진주교육대학교	4,857	24	0.5%
15	국립창원대학교	27,402	121	0.4%
16	청주교육대학교	3,262	22	0.7%
17	춘천교육대학교	4,568	27	0.6%
18	충남대학교	56,596	253	0.4%
19	충북대학교	35,810	276	0.8%
20	한경국립대학교	34,113	181	0.5%
21	한국교원대학교	25,998	197	0.8%
22	국립한국교통대학교	25,924	32	0.1%
2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6,486	119	0.4%
24	한국체육대학교	11,466	74	0.6%
25	국립한밭대학교	26,798	81	0.3%
26	한국경진학교	1,190	10	0.8%
27	한국선진학교	2,579	13	0.5%
28	서울농학교	1,140	10	0.9%

자료: 교육부

❑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1% 미만인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 비율이 매해 꾸준히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교육부 전체 공공기관에서 구매비율 1% 미만인 공공기관의 비율 >

연도	총 공공기관 수(A)	구매비율 1% 미만 공공기관 수(B)	비율(B/A)
2020	51	28	54%
2021	50[9]	27	54%
2022	50	28	56%
2023	49[10]	27	55%
2024	49	28	57%

자료: 교육부

주1) 총 공공기관 - 국립대학교, 국립교육대학교, 국립특수학교, 교육부 소속기관

❑ 또한, 2024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되었는데[11], 개정 주요내용은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상향하려는 것임.

9) 2021년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경상국립대학교로 통합되었음.

10) 2023년 한국복지대학교가 한경국립대학교로 통합되었음.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법률 제20223호)」**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부 칙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2024.8.7. 시행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로 정해야 함.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구매비율을 1.1%로 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025년 3월 교육부에 발송하였음. 따라서 교육부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25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구매액의 1.1% 이상 구매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무비율이 총구매액의 2%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생산시설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구매의무비율을 상향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 따라서 향후 구매의무비율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등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12].

12) 교육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간 구매목표비율 1%를 충족하였지만 계속하여 구매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2025년부터는 변경된 구매목표비율 1.1%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

(단위: 백만원)

연도	구매목표비율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1%	13,727	334	2.4%
2021	1%	14,377	285	2.0%
2022	1%	14,802	232	1.5%
2023	1%	14,188	159	1.1%
2024	1%	17,056	182	1.1%

자료: 교육부

<일반회계>

1)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4331-300)[1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4331-300) 사업은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 지원을 통해 재외동포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서,

재외교육기관(한국교육원, 한국학교) 지원사업, 교과서 및 교재개발·보급, 재외동포교육진흥 사업, 해외파견공무원 선발·연수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13) 문의: 02-6788-5187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현액은 911억 5,300만원으로 911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9.9%임.

< 2024년도 재외동포교육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91,153	-	91,153	91,146	-	7	99.9
○ 재외교육기관 지원	83,295	-	83,295	83,294	-	1	99.9
○ 교과서 및 교재개발·보급	6,813	-	6,813	6,813	-	-	100
○ 재외동포교육 진흥사업	935	-	935	935	-	-	100
○ 해외파견공무원 선발·연수	110	-	110	104	-	6	94.5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재외한국교육원 일부 통·폐합 검토 필요

❑ 재외교육기관 중 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 보급,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한국인 유학생 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등을 기능으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14] 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음.

한국교육원은 일반적으로 원장 1인 및 현지채용 인원 1인 이상으로 운영되며[15],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재외한국교육원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4월 현재 22개국에 총 47개의 한국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16].

지역별로는 일본지역 15개원, 미국지역 8개원, 러시아지역 4개원,

---

1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운영 및 원장·교원·직원의 자격·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5) 5개 교육원(타슈켄트, 알마티, LA, 파리, 하노이)은 원장 외 부원장 1인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음. 다수의 교육원은 현지채용 인원이 1인이나, 필요에 따라 그 이상 운영하고 있는 교육원도 있음.

16) 2024년에 미국(시애틀),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 등 총 4곳에 한국교육원이 신설되었음.

CIS[17]지역 3개원 및 기타지역 17개원임.

< 재외한국교육원 현황 >

교육원명	설립연원일	파견자 수(명)	한글학교 수(개)	동포수 (명)	한국으로온 유학생(명)
동경한국교육원	'66.05.01	1	33	93,241	5,250
사이타마한국교육원	'94.07.26	1	7	19,810	
치바한국교육원	'70.01.21	1	6	19,368	
가나가와한국교육원	'63.04.01	1	7	33,183	
나가노한국교육원	'70.02.26	1	3	43,412	
삿포로한국교육원	'63.05.16	1	4	4,090	
센다이한국교육원	'64.07.25	1	6	7,513	
오사카한국교육원	'63.04.01	1	29	96,361	
나라한국교육원	'77.02.21	1	2	3,146	
교토한국교육원	'63.04.12	1	11	25,083	
고베한국교육원	'63.04.01	1	13	36,700	
오카야마한국교육원	'66.04.01	1	7	4,378	
후쿠오카한국교육원	'63.06.28	1	5	22,140	
히로시마한국교육원	'63.05.16	1	25	8,805	
시모노세키한국교육원	'95.02.10	1	4	5,099	
일본지역 소계 (15개원)		15	162	422,329	
워싱턴한국교육원	'80.07.01	1	63	157,778	3,179
뉴욕한국교육원	'81.07.01	1	90	377,098	
시카고한국교육원	'81.07.01	1	79	347,900	
휴스턴한국교육원	'88.08.10	1	38	186,649	
로스엔젤레스한국교육원	'80.04.15	2	168	662,383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	'87.08.20	1	60	245,173	
애틀랜타한국교육원	'17.03.13	1	108	266,709	
시애틀한국교육원	'25.04.24.	1	31	184,445	
미국지역 소계 (8개원)		9	637	2,428,135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	'01.09.19	1	41	49,174	2,863
사할린한국교육원	'93.12.10	1	12	16,067	
블라디보스톡한국교육원	'95.03.24	1	11	33,108	

17)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독립국가연합)의 약자. 1991년 소비에트연방에서 분리하여 독립하려 한 여러 공화국들의 연합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음.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	'97.08.07	1	2	12,144	
러시아지역 소계 (4개원)		4	66	110,493	
타슈켄트한국교육원	'92.05.27	2	15	66,693	12,025
알마티한국교육원	'91.08.22	2	25	108,377	1,516
비쉬켁한국교육원	'01.05.28	1	4	20,054	1,294
CIS지역 소계 (3개원)		5	44	195,124	14,835
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	'17.03.17	1	8	12,765	226
캐나다한국교육원	'81.07.31	1	75	127,174	655
시드니한국교육원	'89.08.01	1	34	114,870	291
영국한국교육원	'81.07.01	1	22	39,097	523
프랑스한국교육원	'75.12.31	2	17	11,930	2,313
독일한국교육원	'81.08.04	1	33	49,683	1,396
파라과이한국교육원	'80.01.01	1	3	4,348	32
아르헨티나한국교육원	'87.08.21	1	12	23,063	39
상파울루한국교육원	'88.09.01	1	21	47,544	296
멕시코한국교육원	'25.4.22.	1	10	13,158	383
뉴질랜드한국교육원	'12.04.01	1	11	31,810	67
태국한국교육원	'12.06.01	1	6	18,043	971
호치민시한국교육원	'12.11.13	1	4	89,699	56,003
하노이한국교육원	'20.12.22	2	1	62,413	
말레이시아한국교육원	'20.12.30.	1	8	13,152	1,214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	개원예정	1	12	26,153	2,505
인도한국교육원	개원예정	1	6	11,360	1,584
기타지역 소계 (17개원)		19	283	696,262	68,498
22개국 47개원		51	1,192	3,852,343	83,333

자료: 교육부

주) 파견자는 원장, 부원장 등 교육부장관이 선발하여 파견하는 인원(교육청 자체 파견 제외)

❑ 한국교육원은 연혁상 1963년 재일동포에게 한국어 및 민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본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지역적 범위 및 설립 개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현행 한국교육원 설립시기 >

(단위: 개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이후	계
신 설	10	4	13	7	13	47

자료: 교육부
주) 통폐합된 교육원을 고려하면 실제 설립개수는 더 많음

❑ 해외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지역에 '재외국민'과 '한민족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인원이 1만 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18][19].

❑ 한국교육원은 재외동포 등에게 한글학교 등을 통한 한국어 교육과 함께 유학생 교육활동 지원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 및 재정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인 재외동포의 인원을 주요한 기준으로 설립·운영되는 것이 필요함[20].

---

1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국민과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 :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교육원 설치예정지역의 그 수가 1만 명 이상
2. 시설기준 : 사무실 1실 이상、자료실 1실 이상 및 강의실 3실 이상(강의실은 1실당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19) 이는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가까운 개념임.

20) 다만, 재외국민 1만명 기준은 2007년 7월 시행령 제정시 마련된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이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음. 교육부는 한류 확대로 인해 현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보급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1만 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한국교육원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체 한국교육원 중 현재 관할 지역의 재외동포 수가 가장 적은 일본의 나라한국교육원(3천명대)을 포함하여 재외동포 수가 1만명 미만인 한국교육원은 총 7개원으로 이 중 6개원이 일본 지역임.

< 관할지역 재외동포 수 1만명 미만인 교육원 현황 >

관할공관	교육원명	설립연월일	재외동포수 (명)	한국으로 온 유학생	교육원 강좌 수강생수 ('24)	한국어 채택 학교수
주삿포로	삿포로한국교육원	'63.05.16	4,090	5,250	97	20
주센다이	센다이한국교육원	'64.07.25	7,513		219	18
주오사카	나라한국교육원	'77.02.21	3,146		224	9
주고베	오카야마한국교육원	'66.04.01	4,378		102	9
주히로시마	히로시마한국교육원	'63.05.16	8,805		47	18
주히로시마	시모노세키한국교육원	'95.02.10	5,099		310	11
주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교육원	'80.01.01	4,348	32	1,034	23

자료: 교육부
주) 관할공관은 주파라과이대사관 외에는 전부 총영사관

이러한 한국교육원의 특정 지역(일본) 편중 해소 및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래 계속적으로 인근 교육원과 통합하거나 폐지한 사례가 있었음.

입장임. 하지만 2007년에 시행령에 해당 기준이 마련된 뒤로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음.

< 한국교육원 통합 및 폐지 현황 >

구 분	통합	폐지
1980년대	기타큐슈, 나가사키, 사가 (▸후쿠오카) 히가시오사카 (▸오사카)	니시토쿄, 군마, 회기, 시마네, 돗토리, 아키타, 이와테
1990년대	이바라기 (▸동경) 후꾸이 (▸나고야) 아오모리, 후쿠시마 (▸센다이)	나고야, 시애틀
2000년 이후	니가타 (▸나가노) 오이타 (▸후쿠오카) 와카야마 (▸오사카)	기후

자료: 교육부
주) 통합된 교육원은 괄호 안에 표시

❑ 국가·지역별 재외국민의 현황 및 교육 지원의 필요성도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한국교육원도 신설, 조정·통합 및 폐지가 요청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교육부는 국가 및 관할 공관별 한국교육원 설치 현황에 대한 고려 및 현지교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교육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교육원은 인근 지역의 교육원으로 통합 또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재외한국학교 국고 전액 지원 검토 필요

❑ 재외교육기관 중 하나인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1]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22]에 따른 학교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국외에 설립을 승인한 정규학교로서 16개국에 34개교[23]가 설치되었음.

❑ 재외한국학교에 기본운영비(인건비·운영비·임차료)와 목적사업비(시설비, 대수선비, 저소득층 학비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등)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비는 해외자본이전(340-03), 그 외 비용은 해외경상이전(340-01)으로 지원하고 있음.

2024년도 재외한국학교 지원 예산액은 579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579억 5,100만원으로 동일하며 전액 집행되었음.

---

2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①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1.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이하 "소재예정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22)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23) **< 재외한국학교 현황(16개국 34개교) >**

구분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사우디	기타	계
학교수	4	13	2	2	2	11*	34

* 자카르타, 싱가포르, 방콕, 필리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모스크바, 테헤란, 카이로, 말레이시아, 프놈펜
※ 자료: 교육부

< 2024년도 재외한국학교 지원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재외한국학교 지원	57,951	-	-	57,951	57,951	-	-
- 파견공무원 인건비 (340-01)	3,463	–	–	3,463	3,463	–	–
- 현지채용 인건비 (340-01)	25,055	–	–	25,055	25,055	–	–
- 운영비(340-01)	18,935	–	–	18,935	18,935	–	–
- 저소득층 학생 학비지원 (340-01)	1,747	–	–	1,747	1,747	–	–
-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340-01)	830	–	–	830	830	–	–
- 교수학습자료 지원 (340-01)	1,174	–	–	1,174	1,174	–	–
- 나이스 운영지원 (320-02)	94	–	–	94	94	–	–
- 나이스 운영지원 (220-02)	8	–	–	8	8	–	–
- 임차료(340-01)	1,162	–	–	1,162	1,162	–	–
- 대수선비(340-01)	1,230	–	–	1,230	1,230	–	–
- 시설비(340-03)	4,253	–	–	4,253	4,253	–	–

자료: 교육부

❑ 16개국 34개교에 지원되고 있는 국가·학교별 재외한국학교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살펴보면, 교육부지원금 비율이 낮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금 비율이 높은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은 평균 등록금이 낮은 수준임.

< 국가·학교별 재외한국학교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

국가명	학교명	학생수 (명) (A)	총지출액 (USD) (B)	등록금 수입 총액 (USD) (C)	학생 1인당 등록금 (USD) (C/A)	교육부 지원금 (USD) (D)	총지출액 대비 교육부 지원금 (D/B)
일본	동경	1,378	9,668,580	3,452,675	2,506	2,354,776	24%
	교토	155	5,792,527	382,950	2,471	1,182,910	20%
	오사카금강	267	6,852,006	1,090,703	4,085	2,144,811	31%
	건국	392	9,250,656	770,212	1,965	1,810,657	20%
중국	북경	738	7,789,621	3,559,327	4,823	1,795,074	23%
	천진	546	5,926,742	2,036,910	3,731	1,690,151	29%
	상해	869	10,308,889	4,920,628	5,662	1,868,350	18%
	무석	445	4,333,581	1,797,893	4,040	1,452,101	34%
	소주	370	3,417,154	1,604,708	4,337	1,019,448	30%
	옌타이	292	4,290,482	1,198,223	4,104	1,524,866	36%
	칭다오청운	699	7,966,593	2,456,515	3,514	2,726,987	34%
	웨이하이	258	3,358,490	772,661	2,995	1,261,595	38%
	대련	190	2,685,488	756,699	3,983	1,000,461	37%
	선양	105	2,213,281	399,978	3,809	1,007,535	46%
	연변	103	2,522,978	204,702	1,987	1,103,690	44%
	광저우	378	4,483,151	2,128,906	5,632	1,157,248	26%
	홍콩	129	2,925,645	816,983	6,333	1,494,021	51%
대만	타이뻬이	57	773,576	110,857	1,945	399,405	52%
	까오숑	43	675,358	35,935	836	401,278	59%
베트남	하노이	2,215	14,140,940	7,733,414	3,491	2,176,008	15%
	호치민시	2,089	11,882,711	7,349,743	3,518	2,004,592	17%
사우디	젯다	6	286,827	11,997	2,000	204,994	71%
	리야드	17	544,929	30,264	1,780	339,653	62%
싱가포르	싱가포르	395	8,637,955	4,312,039	10,917	2,490,641	29%
태국	방콕	116	2,598,346	607,954	5,241	1,472,517	57%
필리핀	필리핀	139	1,993,662	959,759	6,905	774,350	39%
파라과이	파라과이	74	540,935	11,211	152	412,280	76%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140	1,024,263	107,476	768	426,973	42%
러시아	모스크바	51	1,015,954	166,047	3,256	593,647	58%
이란	테헤란	3	699,087	3,600	1,200	250,716	36%
이집트	카이로	30	532,299	23,216	774	364,888	69%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40	632,531	136,823	3,421	337,385	5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797	8,880,084	5,138,259	6,447	1,324,929	15%
캄보디아	프놈펜	32	644,356	148,059	4,627	370,466	57%
합계	**34개원**	**13,558**	**149,289,677**	**55,237,326**	**3,625 (평균)**	**40,939,403**	**39.6% (평균)**

자료: 교육부

주) 총지출액, 등록금 수입 총액, 교육부 지원금: 2023학년도 결산 기준[24)]

24)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재외한국학교의 2024년 결산은 집계·검토 중인 상황이며, 매년 6월 이전까지 재외한국학교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결산서 등 재정자료는 9월에 확정됨.

❑ 교육부의 국고지원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예산지원기준)[25]에 따라 학교의 재정상태, 소재지역 물가수준, 학생 수·학급 수 등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정하므로 국가별 국고지원비율에 차이가 발생함.

그러나,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6]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교육기본법」제8조(의무교육)[27]에 따라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재외국민 자녀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고를 전액 지원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예산지원기준)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재정상태와 기관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및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예산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수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국학교: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
2. 교육원: 한글학교 수, 학생 수, 재외국민과 한민족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 등

②한국학교의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지매입비 및 시설비 : 총 비용의 50퍼센트
2. 시설임차료 및 대수선비 : 총 비용의 70퍼센트

③교육부장관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서 한국학교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한국학교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경비에 일부 금액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다.

2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27)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28]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1604-300) 사업은 전국 초·중등학교(국립학교 제외)의 4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을 제로에너지·친환경 '그린 스쿨'과 디지털 기반 '스마트 스쿨'이 결합된 미래형 학교로 개축·리모델링하려는 사업으로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혁신적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은 5년간(2021～2025년) 40년 이상된 노후건물 중 2,835동을 선별하여 2,126동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709동은 BTL방식[29]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

28) 문의: 02-6788-5187

29) BTL(Build Transfer Lease):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 등을 건축하도록 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임차하여 건설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업방식. 이러한 사업방식을 통해 공공부문은 공사비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건물 관리를 통하여 좀 더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고, 민간사업자들은 장기적인 임대료 수익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음.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3,584억 8,400만원으로, 이 중 3,311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273억 1,9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2.4%임.

< 2024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358,484	-	358,484	331,165	-	27,319	92.4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교육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30]으로 추진된 사업임.

< 연차별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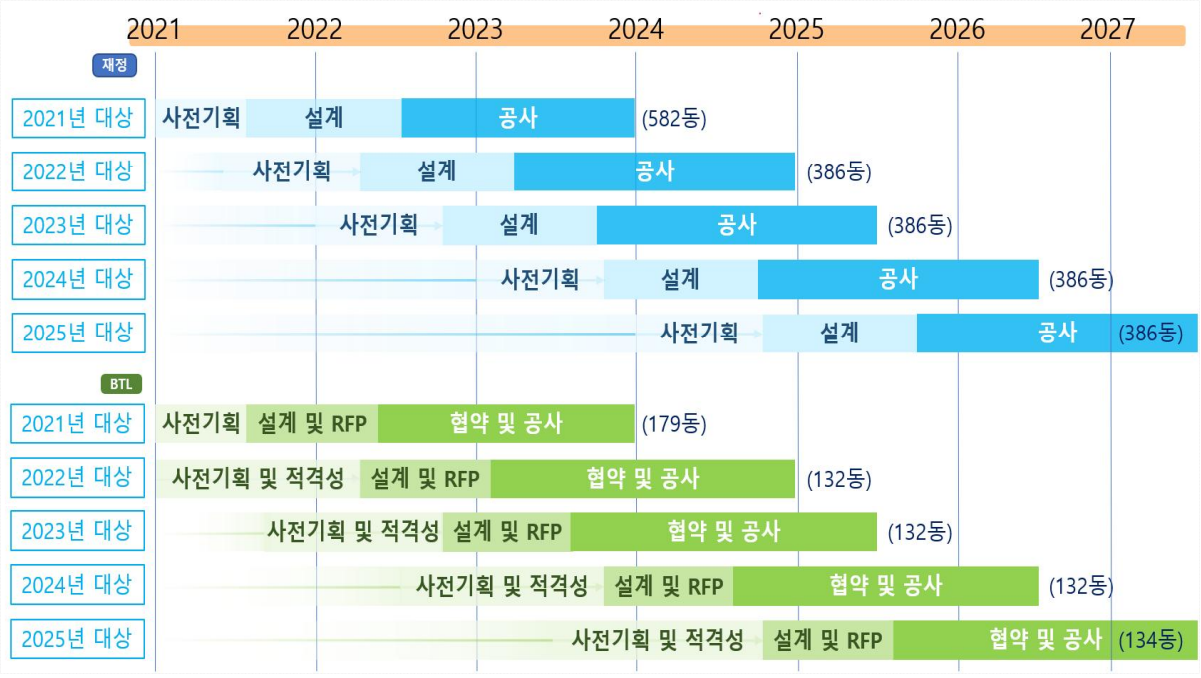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은 사전기획-설계-공사-

30)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경제 부흥 정책인 뉴딜(New Deal) 정책과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투입하여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된 정책임.

준공의 프로세스가 3년 안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심의 및 사전기획 지연·사업에 대한 반대 등으로 인해 계획과는 달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실제 사업 추진 첫 해인 2021년에 예산의 실집행률은 58.9%이고, 2022년에는 실집행률이 37.6%로 더욱 감소하는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부는 당초 3년으로 계획했던 각각의 사업기간을 2023년에는 4년으로, 2024년에는 총 5년으로 연장하였음.

<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집행액 (B)	실집행액 (C)	집행률 (B/A)	실집행률 (C/A)	불용액
2021	94,252	94,252	55,504	100.0	58.9	-
2022	431,527	412,412	162,155	95.6	37.6	19,115
2023	421,158	383,741	221,280	91.1	52.5	37,417
2024	358,484	331,165	287,557	92.4	80.2	27,319

자료: 교육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21년부터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대부분을 각 교육청에 교부하였음. 사업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배정된 예산을 각 교육청에 대부분 교부한 것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의 관리 및 책무성 확보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사업은 예산의 집행 부진 문제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과 예산 낭비 사례도 일부 지적되고 있음.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미 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학교, 폐교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학교 등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거나 리모델링만으로도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예산의 소진을 위하여 전체 사업량의 50%를 개축[31]하여 예산을 낭비하기도 하였음.[32]

❑ 이에 따라 교육부는 동 사업의 전체를 대상(912교)으로 실태 점검을 통해 변경이 가능한 사업은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4년부터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지침을 수립 중에 있음.[33]

❑ 향후 교육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다할 필요가 있음.

---

31) 개축은 철거 후 건축하는 것을 말함.

32) 감사원, 「경기도교육청 기관정기감사」, 2025. 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대한 감사 주요내용 요약>

1. 시설개선에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된 학교, 폐교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학교 등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96억여 원이 중복투자로 매몰 2. 리모델링만으로 충분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주어진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전체 사업량의 50%를 개축하여 2,900억여 원의 예산을 더 소요함. 3. 재정여건이 충분한데도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임대료 등으로 777억~1,374억여 원의 예산낭비, 미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초래함.

33)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2024년부터 신규로 기획되는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의 주관 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하기로 함. 다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획되어 추진되었던 건물(1,604동)은 교육부가 사업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국립대학 시설확충[34]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 사업은 대학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부족한 시설확충,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환경 여건 개선으로 교수・학습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서, 확충사업·보수사업·정책사업·BTL정부지급금[35]·의대교육개선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수행하고 있음.

34) 문의: 02-6788-5188
35) 기숙사 확충을 위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의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임.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현액은 1조 54억 5,900만원으로, 9,972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33억 6,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7억 9,9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9.2%임.

< 2024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립대학 시설확충	1,005,309	150	1,005,459	997,298	3,362	4,799	99.2
○ 확충사업	270,304	-	270,304	268,365	134	1,805	99.3
○ 보수사업	519,463	150	519,613	515,117	3,167	1,329	99.1
○ 정책사업	116,828	-	116,828	115,242	61	1,525	98.6
○ BTL 정부지급금	98,714	-	98,714	98,574	0	140	99.9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법상 규정된 교육시설안전인증 의무 준수 필요

❑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 사업의 하위 사업 중 하나인 국립대학 안전인증비 지원 사업은 국립대학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에는 16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11억 1,4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률은 66.3%였음.

< 2024년도 국립대학 안전인증비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4	1,681	1,114	66.3	335	232

자료: 교육부

❑ 이와 같은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관련 근거법률을 살펴보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라 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36]

36)「교육시설법」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① 교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인증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시설 분야의 기관·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37] 현재 총 7개의 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시설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38]

- 이러한 전문기관들은 교육시설의 장으로부터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하여 해당 교육시설을 점검한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을 할 경우에는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 2가지로 나누어서 인증을 하게 됨.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문기관은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인증서 및 인증 명판을 발급하고 있음.

❑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의무화하는 「교육시설법」은 2020년 12월 4일 시행되었는데, 동 법 부칙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39]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장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법상 정해진 의무를 준수해야 함.

---

37) 「교육시설법」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업무

38)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녹색기후기술원

39) 「교육시설법」 부칙 제4조(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이에 교육부는 2021년 교육시설안전인증 제도에 관한 안내 공문을 각 학교에 시행하여 2025년 12월까지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

❑ 그런데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및 미인증 교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6월 말까지도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시설이 전체 안전인증 대상 교육시설의 절반을 넘는 60.7%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및 미인증 교육시설 현황 >

(기준일자: 2025. 6. 30.)(단위: 개소, %)

안전인증 대상*(A)		인증		미인증(B)	미인증 비율(B/A)
		최우수	우수		
교육부	5,333	194	1,121	4,018	75.3
시도교육청	15,810	560	6,458	8,792	55.6
지자체**	55	-	3	52	94.5
타부처***	311	18	70	223	71.7
합 계	**21,509**	**772**	**7,652**	**13,085**	**60.7**

* 유초중고는 '25년 4월 정보공시 기준, 대학교는 '25년 6월 기준으로 대상 수는 통폐합, 폐교 등으로 변동 가능
** 서울시립대, 도립대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
*** 한국폴리텍대학, 농업대학교 등 소관부처가 교육부가 아닌 학교
자료: 교육부

❑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립대학이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첫 해인 2023년의 집행률은 77.7%

였고, 2024년은 66.3%였으며, 2025년 6월말 현재는 24.1%임.

< 국립대학교 안전인증비 지원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3	1,675	1,302	77.7	244	129
2024	1,681	1,114	66.3	335	232
2025. 6월	1,505	362	24.1	-	-

자료: 교육부

❑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립대학교에서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어 집행이 저조하였다는 설명이나, 이미 교육시설안전인증 제도는 2020년부터 도입되어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은 충분하였으며, 안전인증을 위한 예산이 편성·지급되고 있음에도 예산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해당 제도에 대비하는 교육부와 국립대학교의 인식과 노력이 부족한데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통하여 교육시설의 장은 건축물 노후화, 화재, 붕괴, 시설 결함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여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해당 인증은 학교나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시설안전인증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학교가 법에서 정한대로 2025년 12월 3일까지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학교 정보의 공개 필요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함)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정보망에는 교육시설의 안전인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한, 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교육시설법 관련 규정」

「교육시설법」 제23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공개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② **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통합정보망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따로 공시하지 않고 있으며, 통합정보망은 내부 업무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업무 관계자 외 사용자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교육시설법」이 통합정보망에 교육시설의 안전인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학교 목록을 통합정보망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학교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교육시설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해당 법이 시행된 지 약 5년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법상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현재 통합정보망의 대국민 공개를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다는 입장임.

❑ 향후 교육부는 통합정보망에 교육시설의 안전인증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 지연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하위 사업인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은 국립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반도체 교육·연구용 공정시설, 공정장비, 측정·분석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으로는 지역별로 반도체 거점대학을 선정하여 각 대학별로 특화분야에 맞추어 중점적인 교육 및 연구를 실시하려는 계획임.

- 동 사업은 각 권역별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교육·연구를 특화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측정·분석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대학 간,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 반도체 공동연구소 대학별 특화 분야 >

구분	중앙 HUB	지역 거점					
	서울대	전남대 (Ⅰ권역)	부산대 (Ⅱ권역)	경북대 (Ⅲ권역)	충남대 (Ⅳ권역)	전북대 (Ⅴ권역)	강원대 (Ⅵ권역)
공정특화 분야	총괄	패키징	박막, 배선	식각	증착	패터닝	설계, 테스트
응용특화 분야		시스템	차량	전력	나노	스마트 센서	바이오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은 2023년에 최초로 시작된 사업으로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 공모(2023. 3.)를 통하여 권역별로 반도체 공동연구소 운영대학 4개소를 최초 지정[40](2023. 5.)하였고, 이후 서울대를 포함하여 '반도체공동연구소 협의체'를 출범(2023. 7.)하였음.

2024년에는 2023년 선정 대학들이 지리적으로 다소 편중되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 공모를 실시하여 전북대와 강원대를 추가 선정하였음.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총 6개 권역에 각각 하나의 거점 대학들이 선정되어 이들에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을 추진하는 것임.

❑ 이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동 사업의 초기 계획은 2023년에 선정된 대학교에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2025년까지 각각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도체 기자재 목록 검토 지연 등에 따라 차질이 발생[41]하여 2025년에도 연구소의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 공동연구소의 설립은 2028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당초 계획보다 최소 3년 이상은 늦어질 것으로 보임.

40)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41)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간 계획 및 설계에 필수적인 반도체 기자재 목록 검토 지연에 따라 설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착공 일정도 늦추어지고 있음.

< 각 대학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변경 계획 >

(단위 : 백만원)

대학명 (권역)	당초							변경							
	사업 기간	국고 연부액						사업 기간	국고 연부액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
전남대 (1권역)	23-25	679	7,369	8,369			16,417	23-28	679	5,740	6,000	-	2,000	1,998	16,417
		설계	공사	공사					설계	설계	설계	설계	공사	공사	
부산대 (2권역)	23-25	679	7,369	8,369			16,417	23-28	679	5,425	-	-	5,157	5,156	16,417
		설계	공사	공사					설계	설계	설계	설계	공사	공사	
경북대 (3권역)	23-25	679	7,369	8,369			16,417	23-27	679	5,740	5,699	-	4,299		16,417
		설계	공사	공사					설계	설계	설계	공사	공사		
충남대 (4권역)	23-25	679	7,369	8,369			16,417	23-28	679	5,641	6,231	-	2,000	1,866	16,417
		설계	공사	공사					설계	설계	설계	설계	공사	공사	
전북대 (5권역)	24-27		679	1,000	7,369	7,369	16,417	24-27		679	-	7,869	7,869		16,417
			설계	설계 공사	공사	공사				설계	설계	공사	공사		
강원대 (6권역)	24-27		679	1,000	7,369	7,369	16,417	24-27		679	-	7,869	7,869		16,417
			설계	설계 공사	공사	공사				설계	설계	공사	공사		
계		2,716	30,834	48,214	16,738		98,502		2,716	23,904	17,930	15,738	33,058	5,156	98,502

자료: 교육부

이는 동 사업의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하여 연구소 설계 완료에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임.

❑ 이에 교육부는 동 사업의 목적인 반도체 관련 교육·연구의 특화를 통한 지역 중심의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하여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디지털교육기획관

<일반회계>

1)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1301-301)[42]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1301-301) 사업은 공교육에 맞는 에듀테크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와 에듀테크 산업을 연결하는 허브를 구축·운영하고, 교사·기업이 함께 에듀테크를 개발·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임.

❑ 동 세부사업은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운영,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42) 문의: 02-6788-5189

(2) 결산개요

❑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은 96억 8,300만원이 사업출연금으로 편성되었고, 이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현액이 전액 집행되어 집행률은 100.0%임.

< 2024년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9,683	-	9,683	9,683	-	-	100.0
○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운영	5,283	-	5,283	5,283	-	-	100.0
○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1,400	-	1,400	1,400	-	-	100.0
○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	1,600	-	1,600	1,600	-	-	100.0
○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	1,400	-	1,400	1,400	-	-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성과 조사 응답률 제고 및 활용 방안 보완 필요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에 편성된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운영’ 내역사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함) 출연사업으로, 교육정보원이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각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운영함.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는 에듀테크가 공교육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현장의 에듀테크 활용 촉진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모델을 개발하며, 교사·학생·학부모 등에게 연수를 제공함.

❑ 2024년에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5개소가 신규로 구축·운영되어, 관리기관인 교육정보원의 소프트랩 운영 지원비 7억 3,100만원과 기존 3개소 운영비 및 신규 5개소 구축·운영비 43억 7,100만원 등 총 51억 2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

참고로 2024년에 신규로 구축·운영된 5개소는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사업으로 수행됨.

<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현황 >

연번	권역	지역		주관기관	운영기관	비고
1	수도・강원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국대학교	신규
2		경기	남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대학교	계속
3			북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신규
4	대전・충청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한국교원대학교 * (협력기관) 한국교통대학교	신규
5	대구・경북	대구		대구광역시청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계속
6	부산・울산・경남	부산		부산광역시청	부산교육대학교	신규
7	광주・전라・제주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교육대학교	계속
8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교육대학교	신규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관리기관	예산액(A)	실집행액(B)	집행잔액 (A-B)
소프트랩 운영 지원	793	731	62
소프트랩 공모 및 선정평가	10	10	-
에듀테크 실증 프로그램 운영	38	38	-
에듀테크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17	217	-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 지원	294	294	-
사업관리・운영	234	172	62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운영기관	예산액 (C)	실집행액(D)								합계	집행 잔액 (C-D)
		계속(3개소)			신규(5개소)						
		대구	광주	경기(남)	서울	부산	경기(북)	충북	전북		
소프트랩 구축・운영	4,490	400	420	420	581	611	641	650	648	4,371	119
실증 프로그램 운영	400	210	94	96	-	-	-	-	-	400	0
특화프로그램・연수 운영	149	27	73	49	-	-	-	-	-	149	0
성과공유 및 사업 운영비	225	65	127	33	-	-	-	-	-	225	0
소프트랩 공간 구축	2,572	-	-	-	439	578	402	650	483	2,552	20
실험 및 연구환경 조성	322	-	-	-	20	27	138	-	74	259	63
프로그램 운영비	83	-	-	-	4	-	43	-	-	47	36
공간 임차료 및 관리비	392	40	38	151	55	6	11	-	91	392	0
전담인력 인건비	347	58	88	91	63	-	47	-	-	347	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각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는 교사와 기업이 함께 에듀테크의 품질 및 공교육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고 개선하는 실증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데, 2024년에는 전체 8개소에서 67건의 과제가 실증 완료되어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고, 실증과제별 적용사례 수는 평균 6.5건으로 나타남.

이 중 계속사업으로 수행된 3개소에서 32건의 과제가 실증 완료되어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고 실증과제별 적용사례 수는 평균 6.0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3년에 31건의 과제가 실증 완료되었으나 15건의 과제만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고 실증과제별 적용사례 수는 평균 3.6건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실증과제의 현장 적용 비중이 높아지고 사례 수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권역별 실증과제 및 적용과제 현황 >

(단위: 건)

구분		실증과제	적용과제(A)	적용사례(B)	과제별 사례(B/A)
계속	대구	10	10	49	4.9
	광주	12	12	72	6.0
	경기(남)	10	10	70	7.0
	소계	32	32	191	6.0
신규	서울	5	5	41	8.2
	부산	5	5	32	6.4
	경기(북)	6	6	29	4.8
	충북	9	9	111	12.3
	전북	10	10	30	3.0
	소계	35	35	243	6.9
합계		67	67	434	6.5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3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권역별 실증과제 및 적용과제 현황 >

(단위: 건)

구분		실증과제	적용과제(A)	적용사례(B)	과제별 사례(B/A)
계속	대구	10	5	20	4.0
	광주	10	9	28	3.1
	경기(남)	11	1	6	6.0
	합계	31	15	54	3.6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지원 성과 조사 결과[43]에 따르면, 실증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 87.5점, 기업 93.3점의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향후 참여 또는 타인 추천에 대해서도 90점 이상의 의사를 나타내었음.

아울러 교사의 경우 거의 매일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경우가 실증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19.1%p 상승(33.3% → 52.4%)하였고, 기업의 경우 제품 공급 기관이 5,573개교(4,441개교 → 1만 14개교), 수량이 17만 8천여개(17만 9천여개 → 35만 7천여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운영 사업에서 수행된 실증 프로그램으로 공교육 현장에서 에듀테크의 활용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43) 교육정보원,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지원 성과 조사 결과」, 2025.1.
* (조사대상) 2021~2024년 실증 프로그램 참여 교사·기업, (조사기간) 2024.12.13.~2025.1.3.,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 실증 만족도(교사, 기업) >

(단위: 점)

구분	교사	기업
실증 참여가 만족스러운지	4.50(87.5)	4.73(93.3)
향후에도 실증 참여를 희망하는지	4.71(92.8)	4.62(90.5)
타인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지	4.60(90.0)	4.76(94.0)

주: 응답 교사 또는 기업의 평균 점수, 괄호 안은 100점 환산점
자료: 교육부

< 실증 참여 전·후 수업·업무 환경에서 에듀테크 활용 빈도(교사) >

(단위: 명, %)

구분	실증 이전		실증 이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거의) 활용하지 않음	25	5.9	3	0.7
한 학기에 1~2회 활용	47	11.1	22	5.2
월 1~2회 활용	91	21.5	44	10.4
주 1~2회 활용	120	28.3	133	31.4
거의 매일 활용	141	33.3	222	52.4

자료: 교육부

< 실증 참여 전·후 제품 공급 실적(기업) >

(단위: 개교, 개)

구분	공급 학교 수		공급 제품 수	
	실증 이전	실증 이후	실증 이전	실증 이후
수량 변화(합계)	4,441	10,014	179,369	357,636
수량 변화(평균)	139	313	5,605	11,176

주: 일부 부정확하거나 파악이 어려운 정보를 입력한 기업을 제외한 32개 기업의 실적
자료: 교육부

❑ 다만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의 효과와 개선 필요 사항 파악을 위해 성과 조사 응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지원 성과 조사는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운영 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와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 실증 프로그램 운영이 공교육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활용도 제고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조사에는 대상 교사의 54.6%, 대상 기업의 37.5%만 참여하여 그 외의 참여 교사와 기업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특히 광주와 경기 남부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각각 기업과 교사의 응답률이 조사 대상의 20%이하로 나타나, 성과 조사 결과로 해당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효과를 제한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운영 사업의 효과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증 지원 성과 조사의 응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지원 성과 조사 응답 현황 >

(단위: 명, 개, %)

구 분		교사			기업		
		대상 (A)	응답 (B)	응답률 (B/A)	대상 (C)	응답 (D)	응답률 (D/C)
계속	대구	163	92	56.4	35	14	40.0
	광주	288	88	30.6	40	8	20.0
	경기(남)	317	55	17.4	34	10	29.4
신규	서울	45	32	71.1	5	4	80.0
	부산	49	41	83.7	5	4	80.0
	경기(북)	53	30	56.6	6	2	33.3
	충북	140	63	45.0	9	4	44.4
	전북	42	30	71.4	5	2	40.0
전체		777	424	54.6	96	36	37.5

주: 중복 참여한 경우가 있어 참여·응답한 교사 또는 기업을 합산한 값은 전체 수 보다 많음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둘째,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 에듀테크 소프트랩 활용의 지역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운영 사업은 2021년 3개소로 시작되었고, 2024년에 5개소가 추가되어 8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교육부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주관·운영기관 선정시에 권역별로 지역을 배분하였으나, 사업 수요 및 중요도, 지방비 매칭의 한계 등으로 참여하지 못한 지역이 있고,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구축된 곳과 거리가 먼 경우 같은 지역 또는 권역 내에서도 에듀테크 소프트랩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는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 이동형 소프트랩 운영 등으로 보완하고 있으나, 많은 지역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각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홈페이지에서 실증과제의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관리기관인 교육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우수 실증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나, 에듀테크 실증 정보가 권역, 실증연도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홈페이지의 운영 방식이 달라 다양한 에듀테크를 체계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다만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의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 내역사업에 편성된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사업을 통해, 여러 지역에서 에듀테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사업은 교사가 편리하게 최적의 에듀테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증된 양질의 에듀테크가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에 10억원이 편성되어 9억 6,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실집행액	집행내역
사업비	900	898	·정보·체험 플랫폼 구축 및 운영(구축인력 인건비, 행사 운영, 전문가 활용 등)
운영비	55	35	·관리기관(KERIS) 사업 운영 및 전담기관 점검·평가 등
관리비	45	31	·계약직원 인건비
합계	1,000	964	

자료: 교육부

동 사업 계획에 따르면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에는 에듀테크 기업의 제품 정보, 해당 제품을 사용한 교사의 평가 정보, 에듀테크 제품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권역별 에듀테크 소프트랩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될 예정임.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을 통해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과제의 정보와 평가 등이 제공될 경우 에듀테크 제품의 체계적인 파악과 활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에듀테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은 2024년에 구축이 시작되어 2025년에 개통될 예정이므로 동 플랫폼을 통한 효과는 2025년 플랫폼 구축 및 개통 이후 활용도를 통해 파악될 것으로 보이는데, 플랫폼의 활용도에는 다양한 에듀테크 제품 소개, 정확한 평가, 원활한 서비스 공급 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부는 플랫폼의 정보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양질의 정보가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동 플랫폼을 통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에듀테크 정보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교육부는 플랫폼이 완료되는 2025년 8월 전에 임시로 오픈하여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교사단 등을 통해 플랫폼을 점검·보완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없는 지역에서도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에듀테크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활용에서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단계적 오픈 개요 >

구분	일정	대상	내용
1차	’25.5.28. ~6.12.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 소속 실증교사단 37명	· 플랫폼 체험 후 개선 필요 사항 등 의견 수집, 구글폼을 통한 디자인 개선 의견 수집, 온라인 간담회를 통한 기능 및 디자인 의견 공유
2차	’25.7.4. ~7.18.	전국 에듀테크 소프트랩 소속 실증 교사단 및 교육관계자 300명	· 플랫폼 내 제품 무료 체험 및 후기 작성을 통한 콘텐츠 수집

자료: 교육부

2)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1502-303)[44]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1502-303)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제2항제4호[45]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임.

---

44) 문의: 02-6788-5189

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제19938호), 2023.12.31. 개정, 2024.1.1. 시행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 법률 제19938호(2023.12.31.)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동 세부사업은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방과후교육활성화 지원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 결산개요

❑ 2024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예산은 5,33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5,040억 7,800만원이 집행되고 292억 4,200만원은 세수감소로 불용되어 집행률은 94.5%임.

< 2024년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33,320	-	533,320	504,078	-	29,242	94.5
○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381,800	-	381,800	359,230	-	22,570	94.1
○ 방과후교육활성화 지원	151,520	-	151,520	144,848	-	6,672	95.6

자료: 교육부

❑ 2024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세부사업의 교부액 기준 실집행률은 84.9%로,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내역사업 79.2%, 방과후교육활성화 지원 내역사업 99.0%로 나타남.

< 2024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04,078	427,850	84.9
○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359,230	284,485	79.2
○ 방과후교육활성화 지원	144,848	143,365	99.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집행실적이 저조한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교원연수 기반·질 관리 체계 구축 사업과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사업은 100%로 전액 집행되었으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 사업은 75.7%,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사업은 57.4%로 저조하게 나타남.

< 2024년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359,230	284,485	79.2
◦ 교원연수 기반·질 관리 체계 구축	44,840	44,835	100.0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	154,607	117,034	75.7
◦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72,483	72,483	100.0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87,300	50,133	57.4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집행실적이 저조한 두 사업의 사업 종료 또는 최근 기준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 사업은 교사의 연수 이수로 수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겨울방학 중('25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운영되었고, 사업이 완료된 '25.3월 기준 최종 실집행률은 95.4%임.

다음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사업에서 디지털튜터 양성 및 지원단 운영 사업과 학교 네트워크 담당자연수 사업은 2024년에 집행이 완료되었고, 2024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중 테크센터 운영 사업은 테크센터 운영 용역 유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25년 5월 기준 경기 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에서는 사업이 완료되어 실집행률이 87.1%임.

한편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사업은 2025년 2월 사업 종료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65.5%이고, 사업이 진행 중인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 개선 사업은 2025년 6월 기준 실집행률이 70.3%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24년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사업 중 집행실적 저조 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4		2025		비고
	교부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실집행액(C)	실집행률(C/A)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	154,607	117,034	75.7	147,476	95.4	'25.3.기준 (종료)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87,300	50,133	57.4	64,774	74.2	-
- 디지털튜터 양성 및 지원단 운영	3,000	3,000	100.0	3,000	100.0	-
- 학교 네트워크 담당자연수	100	100	100.0	100	100.0	-
-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개선	60,000	32,991	55.0	42,150	70.3	'25.6.기준 (진행중)
-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7,200	4,117	57.2	4,715	65.5	'25.2.기준 (종료)
- 테크센터 운영	17,000	9,925	58.4	14,809	87.1	'25.5.기준 (진행중)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1) 디지털튜터의 원활한 배치·운영 지원 필요

❑ 디지털튜터는 AI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교사를 보조하여 수업 준비, 학생 관리, 학습 활동 지원, 수업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함.

❑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사업의 2024년 예산은 7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수의 10%인 1,200개교에서 디지털튜터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월 300만원 수준의 비용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2025년 3월) 이전 2개월(2025년 1~2월) 동안 디지털튜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규모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기간 이전에도 디지털튜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2024년부터 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함.

< 2024년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사업 예산 편성 기준 >

구분	내용
총액	・72억원 = 1,200명 × 300만원 × 2개월
인원	・1,200명 - 총 인원: 교육통계 기준 전체 초・중・고등학교 수(약 1만 2,000개교) 대비 10% - 시・도별 인원: 교육통계 기준 시・도교육청별 학교 수와 학생 수를 고려하여 안배
금액	・300만원 - (시간당 4만원×14시간×4주) + 보험료 + 재료비 등 부대비용 ※ 시간당 4만원: 수업대체 강사의 경우 2~3만원 수준이나 디지털튜터의 전문성, 수도권 외 전문인력 희소성 등의 사유로 시간당 3만원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4만원으로 책정
기간	・2개월 - 사업 계획 수립 당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25.3.) 이전에 배치・지원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기준으로 편성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기간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2024년부터 배치할 수 있도록 운영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사업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예산 교부액 72억원의 57.2%인 41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업 종료 시점인 2025년 2월 기준으로도 교부액의 65.5%인 47억 1,5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남.

< 2024년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사업 실집행 내역(전체)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24.12.		'25.2.(사업종료)	
	교부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실집행액(C)	실집행률(C/A)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7,200	4,117	57.2	4,715	65.5

자료: 교육부

❑ 실집행 내역을 각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부산 등 6개 교육청은 배치율과 실집행률이 모두 높게 나타나 배정인원과 교부액에 맞추어 디지털튜터를 운영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서울 등 3개 교육청에서는 배치율은 낮은 반면 실집행률은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의 경우 학교 수요가 높아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활용하여 배정인원 133명 보다 많은 430명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남. 충남은 인력 채용이 어려워 배정인원 72명 중 5명만 배치하고 그 외의 예산은 초단기인력 채용, 기기수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전북은 2개월 동안 디지털튜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당 600만원으로 배정된 예산을 2024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디지털튜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서 학교당 1,200만원을 배분하여 배정인원 77명의 49.4%인 38명을 채용하여 운영함.

또한 광주 등 8개 교육청에서는 배치율과 실집행률이 모두 75% 이하로 나타났는데 실적이 저조한 주된 사유는 교부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학교에서 직접 채용·관리하는 것에 따른 행정적 부담 등으로 신청 학교 수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사업 실집행 내역(시·도별) >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금액			채용 방식	운영 기간	사업 실적 저조 사유
	배정 (A)	배치 (B)	배치율 (B/A)	교부액 (C)	실집행액 (D)	실집행률 (D/C)			
서울	133	98	73.7	798	678	85.0	교육청 용역	'24.9. ~12.	· 학교 수요가 높아 특별교부금 외 자체 예산(24억 1,600만원)을 활용하여 430명 배치
부산	62	81	130.6	372	372	100.0	교육청 용역	'24.12. ~'25.2.	-
대구	47	47	100.0	282	282	100.0	학교 채용	'24.9. ~'25.2.	-
인천	54	73	135.2	324	324	100.0	학교 채용	'24.9. ~'25.2.	-
광주	32	19	59.4	192	91	47.4	학교 채용	'24.11. ~'25.2.	· 예산 대비 신청 학교 수 저조
대전	30	11	36.7	180	66	36.7	학교 채용	'24.11. ~'25.1.	· 운영 가능 기간이 짧고(2개월), 학교에서의 인력 채용 부담으로 신청 저조
울산	24	11	45.8	144	64	44.4	학교 채용	'24.10. ~12.	· 학교 직접 채용·관리에 따른 행정적 부담으로 신청 저조
세종	10	10	100.0	60	60	100.0	학교 채용	'24.8. ~'25.2.	-
경기	250	92	36.8	1,500	552	36.8	학교 채용	'24.11. ~'25.2.	· 예산 대비 신청 학교 수 저조
강원	64	14	21.9	384	76	19.8	학교 채용	'24.10. ~'25.2.	· 예산 대비 신청 학교 수 저조
충북	48	36	75.0	288	216	75.0	학교 채용	'24.9. ~'25.1.	· 예산 대비 신청 학교 수 저조 · 학교 방학기간('25년 2월) 미운영
충남	72	5	6.9	432	432	100.0	학교 채용	'24.11. ~'25.2.	· 인력 채용이 어려워 초단기인력 채용 비용, 기기수리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
전북	77	38	49.4	462	462	100.0	학교 채용	'24.7. ~'25.1.	· 채용기간 자율선택 및 학교당 배분 금액 변경으로 배정인원 대비 50% 채용 : (배정) 2개월, 학교당 600만원 (운영) '24.7.~'25.1., 1,200만원
전남	86	20	23.3	516	120	23.3	학교 채용	'24.10. ~'25.1.	· 하반기 교부로 인해 예산 대비 신청 학교 수 저조
경북	93	93	100.0	558	558	100.0	교육청 용역	'24.12. ~'25.2.	-
경남	98	41	41.8	588	246	41.8	학교 채용	'24.9. ~12.	· 예산 대비 신청 학교 수 저조
제주	20	21	105.0	120	116	96.7	학교 채용	'24.8. ~12.	-
합계	1,200	710	59.2	7,200	4,715	65.5			

주: 배치인원, 배치율, 실집행액, 실집행률은 사업 종료 시점인 2025년 2월 기준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사업은 2022년 및 2023년에 교육소외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바 있으나, 2022년 34개교(3억 4,000만원), 2023년 340개교(34억원) 등 2023년 전체 초등학교 수의 6.1%(6,175개교[46] 중 374개교) 수준으로 운영됨.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의한 필요에 따라 2024년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체 학교 수의 10%인 1,200개교 수준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디지털튜터로 활동하려는 인력에게는 짧은 기간 등으로 사업 참여 유인이 부족했으며, 디지털튜터를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는 이에 적합한 인력을 찾기 어렵고 인력 채용・관리 등 행정업무 부담이 발생하여, 2024년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

2025년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사업은 2024년 사업 운영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고, 10개월로 확대된 운영기간은 디지털튜터로 활동하려는 인력에게 사업 참여 유인이 되며, 채용시 교육청 용역 계약 체결 또는 교육지원청 지원 증가(2024년 3개 교육청 → 2025년 8개 교육청)로 학교의 디지털튜터 채용・관리 부담이 줄어들어 운영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47]

46) 유초중등통계 - 유초중등 학교급별 개황(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 다만 2024년 시·도교육청의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튜터는 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업 전·후에 디지털 기기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 디지털튜터의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상황 발생에 대한 대처에 디지털튜터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4년 디지털튜터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튜터에게 수업 지원을 받은 교사와 학생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고, 디지털튜터 운영학교도 디지털튜터를 활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을 디지털 기기의 유지·관리 효율화로 선택한 바 있으며, 디지털튜터 근무자도 업무 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연수·컨설팅으로 디지털 기기 관리 방법을 선택하였음.

47) 2025년 6월말 기준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사업 예산으로 2,197명 배치·운영(당초 배정 2,000명)

< 2024년 디지털튜터 실태조사 주요 결과(일부) >

(단위: %)

디지털튜터에게 수업 지원 받은 교사		디지털튜터에게 수업 지원 받은 학생	
디지털튜터 운영 내용(중복응답)		디지털튜터에게 지도·도움 받은 내용(중복응답)	
수업 중 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보조	86.8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법	80.6
수업 중 학생의 소프트웨어 혹은 플랫폼 사용 지도 보조	85.6	소프트웨어 혹은 앱 설치	41.2
단말기 수업 전 배부 및 수업 후 정리	47.7	디지털 기기 인터넷 연결	36.6
수업 전 교육용 소프트웨어 설치	45.1	디지털 기기 고장 및 수리	16.7
기타	4.3	기타	11.7
디지털튜터 운영학교		**디지털튜터 근무자**	
디지털튜터를 활용하는 주된 목적		디지털튜터 업무 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연수·컨설팅	
디지털 기기의 유지·관리 효율화	49.5	디지털 기기 관리 방법	56.3
디지털 교육 관련 교원 행정 업무 경감	23.1	학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 이해	14.3
디지털 기반 수업의 효과성 제고	12.8	학교 행정 처리 방법	11.8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9.8	기타	9.5
기타	3.0	학생 지도 방법	8.0
SW 및 AI 전용(체험) 교실(공간) 관리 및 운영 활성화	1.9		

자료: 한국과학창의재단, 「2024년 디지털튜터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와 같은 2024년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사업 운영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튜터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능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연수·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디지털튜터의 능력, 디지털튜터가 필요로 하는 연수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튜터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청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서 채용을 지원하는 교육청이 2024년 3개에서 2025년 8개로 증가하여 학교의 디지털튜터 채용·관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그 외 9개 교육청 소관 학교에서는 직접 디지털튜터를 채용·관리하고 있고 시·도교육청별로 디지털튜터 배치 현황에 편차가 있으므로, 교육부는 디지털튜터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 대한 점검을 통해, 디지털튜터를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개선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개선 사업은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의 진단·개선을 지원하여 속도와 접속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디지털·AI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동 사업의 2024년 예산은 600억원이 편성되었고, 해당 예산은 시·도별 학교 수 비율을 고려한 금액으로 배분되어 시·도교육청에 교부되었음.

2024년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개선 사업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예산 교부액 600억원의 55.0%인 329억 9,100만원이 집행되었고, 가장 최근 기준인 2025년 6월 기준으로도 교부액의 70.3%인 421억 5,0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남.

< 2024년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개선 사업 실집행 내역(전체)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24.12.		'25.6.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실집행액	실집행률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개선	60,000	32,991	55.0	42,150	70.3

자료: 교육부

❑ 실집행 내역을 각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대구, 전남 교육청은 2024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전 등 6개 교육청은 2024년 예산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2개년 동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공동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 2월까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한편 서울 등 9개 교육청의 사업은 검사·검수 등 추가 작업 기간이 소요되거나 학교 내 다른 공사와의 시기 조정 등으로 지연되었는데, 이 중 부산 등 7개 교육청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서울, 경기 교육청은 대상 학교 수가 많아 2025년 8월까지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 2024년과 동일한 규모로 예산이 편성된 2025년 사업이 2025년 8월 이후부터 추진될 경우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따라 2024년과 같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부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디지털 기기 등을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규모와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배분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개선 사업 실집행 내역(시·도별) >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	실집행				사업 기간	집행 실적 저조 사유
		'24.12.기준		'25.6.기준			
		금액	집행률	금액	집행률		
서울	6,640	0	0.0	1,647	24.8	'24.9. ~'25.8.	· 겨울방학('25년 1~2월) 동안 전체학교 개선이 어려워, 추가 수행기간 필요
부산	3,110	2,158	69.4	3,100	99.7	'24.5. ~'25.3.	· 사업 검사·검수 기간 소요
대구	2,350	2,350	100.0	2,350	100.0	'24.9. ~12.	-
인천	2,710	0	0.0	2,710	100.0	'24.10. ~'25.6.	· 겨울방학('25년 1~2월) 동안 인프라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최적화 작업 기간 필요
광주	1,570	0	0.0	1,570	100.0	'24.12. ~'25.2.	· 2024년 12월 사업 시작으로 2024년 집행률 저조
대전	1,520	1,520	100.0	1,520	100.0	'24.10. ~'26.2.	(공동위탁,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울산	1,210	1,210	100.0	1,210	100.0	'24.10. ~'26.2.	(공동위탁,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세종	510	263	51.6	372	72.9	'24.5. ~'25.3.	· 사업 검사·검수 기간 소요
경기	12,480	331	2.7	331	2.7	'24.7. ~'25.8.	· 사업 발주 행정 소요 및 겨울방학('25년 1~2월) 동안 전체학교 개선 어려움 등으로, 추가 수행기간 필요
강원	3,200	3,200	100.0	3,200	100.0	'24.10. ~'26.2.	(공동위탁,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충북	2,410	1,986	82.4	2,408	99.9	'24.11. ~'25.3.	· 일부 학교 석면 시설공사(별도사업) 지연으로 사업일정 연장
충남	3,620	3,620	100.0	3,620	100.0	'24.10. ~'26.2.	(공동위탁,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전북	3,830	3,825	99.9	3,825	99.9	'24.10. ~'26.2.	(공동위탁,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전남	4,320	4,320	100.0	4,320	100.0	'24.7. ~12.	-
경북	4,660	3,869	83.0	4,147	89.0	'24.8. ~'25.2.	-
경남	4,890	3,369	68.9	4,850	99.2	'24.6. ~'25.6.	· 겨울방학('25년 1~2월) 동안 전체학교 개선 어려워, 추가 수행기간 필요
제주	970	970	100.0	970	100.0	'24.10. ~'26.2.	(공동위탁, 2개년 사업으로 추진)
합계	60,000	32,991	55.0	42,150	70.3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교육정보보호사업(7034-305)[48]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육정보보호사업(7034-305)은 전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보안관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 행정전자서명인증 서비스 제공, 정보보호 인식 제고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임.

❑ 동 세부사업은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48) 문의: 02-6788-5189

(2) 결산개요

❑ 2024년 교육정보보호사업 예산은 90억 7,700만원이 사업출연금으로 편성되었고, 이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현액이 전액 집행되어 집행률은 100.0%임.

< 2024년도 교육정보보호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교육정보보호사업	9,077	-	9,077	9,077	-	-	100.0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5,408	-	5,408	5,408	-	-	100.0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650	-	650	650	-	-	100.0
○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2,558	-	2,558	2,558	-	-	100.0
○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	461	-	461	461	-	-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대학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개선 필요

❑ 교육정보보호 세부사업에 편성된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내역사업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사업으로 수행됨.

2024년 동 사업 예산은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인건비 등 8개 세부내역사업에서 54억 8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

구분	예산	집행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인건비	30명×6.45백만원×12월 = 2,322백만원	30명×5.96백만원×12월 = 2,145백만원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H/W 319백만원(4,557백만원×7%)+악성코드 전문분석 장비 155백만원(618백만원×25%)+개발S/W 431백만원(4,307백만원×10%)+상용S/W 372백만원(3,104백만원×12%)+연간사용 S/W 라이선스 9백만원 = 1,286백만원	1,157백만원
위협지식정보 DB 라이선스 사용료	1라이선스×387백만원 = 387백만원	1라이선스×390백만원 = 390백만원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인터넷 회선 사용료	1회선×31백만원 = 31백만원	1회선×32백만원 = 32백만원
교육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 점검반 운영 지원	1식×70백만원 = 70백만원	1식×90백만원 = 90백만원
교육기관 사이버위협 노후 탐지장비 교체 (1차년도)	(H/W구입(104개 기관, 2,288백만원)+설치용역(104개 기관, 335백만원))×50% = 1,312백만원	1,312백만원(58개교)
교육기관 정보보호 체계 및 사이버안전센터 운영·대응	-	244백만원
사이버안전센터 전기료	-	38백만원
합계	**5,408백만원**	**5,408백만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의 대상은 교육부 등 438개 기관이며, 이 중 사립대학이 77.6%(340개), 국·공립대학이 10.7%(47개)로 대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대상 기관 >

(단위: 개, %)

구 분		기관 수(비중)
교육부 및 소속기관		7(1.6)
시·도교육청		17(3.9)
대학	국·공립	47(10.7)
	사립	340(77.6)
국립대학병원		14(3.2)
공공기관		9(2.1)
기타		4(0.9)
합계		**438(100.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교육기관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현황에 따르면, 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 건수가 매년 전체 건수의 95~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2~2024년 교육기관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현황 >

(단위: 건, %)

연도	구분	침입시도	해킹메일	악성코드감염	웹 해킹	경유지악용	서비스거부 등	합계
2022	전체	55,105	747	5,508	53	1,904	8	63,325
	대학	52,807	594	5,035	51	1,838	5	60,330
	(비중)	(95.8)	(79.5)	(91.4)	(96.2)	(96.5)	(62.5)	(95.3)
2023	전체	58,380	598	3,799	35	2,276	8	65,096
	대학	56,715	490	3,698	32	2,169	6	63,110
	(비중)	(97.1)	(81.9)	(97.3)	(91.4)	(95.3)	(75.0)	(96.9)
2024	전체	56,843	1,075	4,152	26	1,510	8	63,614
	대학	54,901	635	4,080	22	1,301	2	60,941
	(비중)	(96.6)	(59.1)	(98.3)	(84.6)	(86.2)	(25.0)	(95.8)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특히 일부 대학은 학교 홈페이지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장기간 방치하고 일과시간 이외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이버 공격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4~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대학들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납부와 시정명령 이행 등의 시정조치를 의결한 바 있음.

<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 등 위반 사례 >

구분	내용	시정조치
A 대학	· 홈페이지 내부 저장공간에 악성파일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한 공격으로, · 학생·교직원 등 20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5백여 명(2천여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 2017.10. 웹로직 취약점 해소를 위해 배포된 보안패치 미적용	· 과징금 1억 9,300만원 · 과태료 660만원 · 시정명령 등
B 대학	· 정보시스템 내부 저장공간에 악성파일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한 공격으로, · 학생 2천여 명(4천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 2017.10. 웹로직 취약점 해소를 위해 배포된 보안패치 미적용	· 과징금 4,280만원 · 개선권고 등
C 대학	· 정보시스템의 학번 정보 입수 후 학적정보 조회 페이지 등에서 약 90만 회의 파라미터 변조 및 무작위 대입을 통한 공격으로, · 홈페이지 회원 총 32만여 명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28만여 건 포함) 유출 · 해당 취약점은 2010.12. 시스템 구축 당시부터 존재 · 일과시간 이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주말·야간에 발생한 비정상적 트래픽 급증 현상을 뒤늦게 인지	· 과징금 6억 2,300만원 · 과태료 540만원 · 시정명령 등
D 대학	·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약 10만 회의 파라미터 변조 및 무작위 대입을 통한 공격으로, · 학부생 및 졸업생 8만 3천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 해당 취약점은 2015.11. 시스템 구축 당시부터 존재 · 일과시간 이외 주말·야간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는 등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 통제 조치 미흡	· 과징금 3억 4,300만원 · 시정명령 등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개 대학 제재」, 2024.11.14., 「안전조치 소홀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2개 대학에 과징금 9억 6,600만 원 부과」, 2025.6.12.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사이버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로 교육부는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내 '교육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

점검반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교육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점검·운영을 위해 9,000만원이 집행되었음.

❑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의 최근 3년간(2022~2024년) 결과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발생한 대학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대학과 D대학은 3년 동안 정보보안 수준 진단이 ISMS 인증으로 대체되었고,[49]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의 경우 A대학은 2022~2023년 우수, 2024년 보통, D대학은 3년 동안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이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한 실제 보호 수준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B대학은 정보보안 수준 진단에서 2022년 보통, 2023~2024년 미흡 등급을 받고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2022년 우수, 2023~2024년 보통 등급을 받는 등 상대적으로 진단 결과가 낮았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C대학은 정보보안 수준 진단에서 3년 동안 우수 등급을 받았고, 개

49)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을 받은 기관은 해당 영역의 자체 진단만 실시하고, 결과 등록시 인증서를 제출

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2022년 우수, 2023년 미흡, 2024년 보통 등급을 받아 2024년 진단 결과는 전년 대비 높아졌으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수준이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2022~2024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

구분	2022		2023		2024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A 대학	ISMS 인증	우수	ISMS 인증	우수	ISMS 인증	보통
B 대학	보통	우수	미흡	보통	미흡	보통
C 대학	우수	우수	우수	미흡	우수	보통
D 대학	ISMS 인증	우수	ISMS 인증	우수	ISMS 인증	우수

자료: 교육부(대학알리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대학))

❑ 교육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는 1차적으로 각 기관에서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이 이루어지며,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자체적인 개선계획 수립·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차년도 진단을 통해 개선사항 이행 여부가 확인되고 있으나, 각 대학의 수준 진단 결과와 실제 보호 수준 등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학의 정보시스템 등에는 재학생부터 졸업생까지 많은 인원의 이름, 학적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피해규모도 광범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제 보호 수준을 반영하는 진단을 통

해 적기에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

< 2024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개요 >

구분	내용
진단목적	· 교육기관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침해예방 활동 등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여 정보보호 수준 향상
진단대상	· 대학 및 소속·공공기관 416개 * 현장점검 기관 15개: ISMS 미인증 기관, 주요 미흡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진단일정	· 2024.4월 ~ 10월(실적 대상기간: '23.3월~'24.2월) - 4월: 자체진단 및 증빙자료 등록 - 5~ 7월: 서면진단 및 현장점검 - 7 ~ 8월: 소명신청 접수 및 추가 검증 - 9~10월: 결과 안내 및 개선계획 수립
진단영역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영역 - 정보보안: 8개 분야, 35개 지표, 71개 항목 - 개인정보보호: 3개 분야, 15개 지표, 29개 항목
진단방법	· 진단위원회 구성 후 서면진단, 현장점검, 소명검토 등 실시
진단결과	· 진단 최종결과를 수준진단 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대학 정보공시에 진단 결과 반영 * 결과 등급(우수 100~80점, 보통 79~70점, 미흡 70점 미만) 또는 ISMS인증 여부 · 미흡 사항에 대해 기관별 자체 개선계획 수립

자료: 교육부

3. 인재정책실

<총 괄>

1) 국립대학육성사업, (전문)대학혁신지원[50]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학육성사업(2704-301)은 국립대학의 고유 역할, 지역사회 여건, 인재양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대학혁신지원(2301-300) 사업은 학령인구 급감, 대학 재정난 등 대내·외 환경 변화 가운데,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인재양성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일반재정지원(1유형),

- 신산업 분야 인재수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전문 부처와 협업하여 대학의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2유형),

50) 문의: 02-6788-5188

- 대학이 급격한 사회변화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사 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를 통해 지원하는 대학 학사 자율역량 기반 조성,

- 평가체제를 개편하면서 종전의 교육부 대학평가로 하던 고등교육 질 관리를 대학기관평가인증기관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평가인증기관이 전문인력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평가인증 기구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구성됨.

❑ 전문대학혁신지원(4602-400) 사업은 각 대학의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자율혁신을 통해 교육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반 재정지원 전문대학 102개교를 대상으로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임.

(2) 결산개요

❑ 국립대학육성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5,722억원으로, 이를 전액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임.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1조 34억 700만원으로, 이 중 1조 29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1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9.8%임.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6,179억원으로, 이 중 6,174억원을 집행하고 5억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9.9%임.

< 2024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및 (전문)대학혁신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립대학육성사업	572,200	-	572,200	572,200	-	-	100
□ 대학혁신지원	1,004,607	△1,200	1,003,407	1,002,906	-	501	99.8
○ (1유형)대학혁신지원	885,200	△1,200	884,000	883,500	-	500	99.9
○ (2유형)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118,796	-	118,796	118,795	-	1	100
○ 대학 학사 자율역량 기반 조성	500	-	500	500	-	-	100
○ 기관평가인증 기구 역량강화 지원	111	-	111	111	-	-	100
□ 전문대학 혁신지원	617,900	-	617,900	617,400	-	500	99.9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비(非)R&D 사업에 대한 간접비 계상의 적절성 검토 필요

❑ 국립대학육성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학교기업 지원사업 등 교육부의 여타 목적사업과는 달리 각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임.

❑ 세 사업은 사업의 최종 수혜대상만 사립대학, 국립대학, 전문대학으로 차이가 있을 뿐 서로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동 사업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초 교육부가 사업계획을 확정 및 공고하고 한국연구재단에 사업을 위탁하면, 한국연구재단은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대학들의 사업 실적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임.

< (예시)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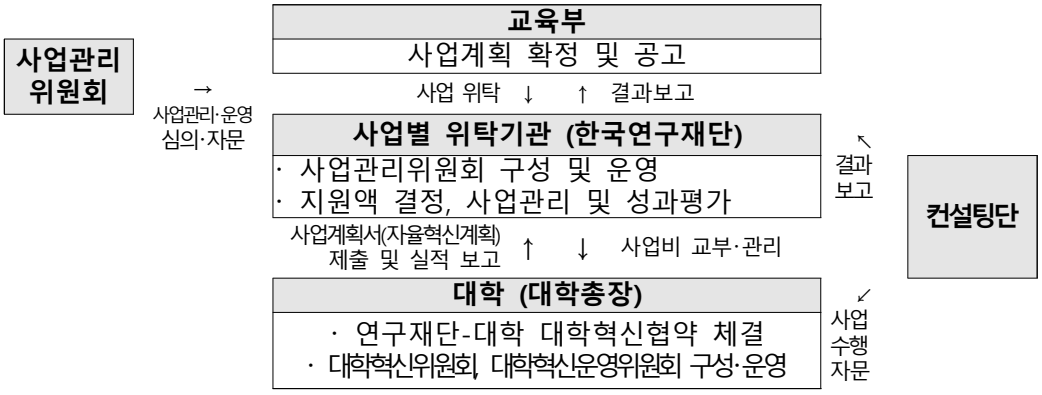

❑ 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이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관리운영비는 직접비(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와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간접비는 당해연도 직접비(이월금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 이하에서 결정되고 있음.

< (예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	집행액	불용액
□ 직접비	7,064	3,297	3,767
○ 인건비	1,085	877	208
○ 연구활동비	4,062	1,531	2,531
○ 연구재료비	1,541	649	893
○ 위탁연구개발비	375	240	135
□ 간접비	261	261	0
- 간접경비	261	261	0
□ 관리운영비 조정	-500	0	-500
계	6,825	3,558	3,267

주. 인건비에는 외부·내부 및 공무직 인건비가 있으며, 연구활동비에는 인쇄비, 소모성경비, 교육훈련비, 우편비, 전화료, 특근매식비, 수수료, 소프트웨어비, 출장여비,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교육부

❑ 이에 따라 2024년 각 사업의 간접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억 6,100만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1억 6,700만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4억 2,900만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어 2024년 전액 집행되고 있음.

< 2024년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간접비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비목	관리운영비				비중
		직접비			간접비	
		간접비 대상	기타	총계		
대학혁신지원	사업출연금 (350-02)	1,539	200	1,739	261	17.0
국립대학육성	사업출연금 (350-02)	993	40	1,033	167	16.8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출연금 (350-02)	2,521	50	2,571	429	17.0

주. 간접비 대상 직접비는 이월금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내역임.
자료: 교육부

❑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으로,[51]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음.[52]

❑ 국가연구개발출연 사업(R&D 사업)이 아닌 일반재정지원사업과 같은 비(非)R&D 사업에 대해서도 위탁사업비의 일부를 기관운영 공통경비의 성격을 지니는 간접비로 계상·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

5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5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책정된 간접비 비율 17%의 범위 내에서 계상·집행하였다는 설명임.[53]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은 기관출연금 및 R&D 기획평가관리비 등의 수입만으로는 기관운영비를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비(非)R&D 사업에 대해서도 간접비를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기관운영비 지출 예산 및 수입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출 예산	기관운영비(A)		56,848	58,937	61,611
		인건비(경평성과금 등 예비비 포함)	44,227	45,680	49,369
		경상운영비	12,621	13,257	12,242
수입 예산	기관출연금 및 R&D 기획평가관리비 등(B)		52,934	53,073	55,200
		기관출연금	21,270	22,100	21,985
		R&D통합기획평가관리비 등*	31,664	30,973	33,215
기관운영비 조달 비중(B/A)			93.1%	90.1%	89.6%

주 1. 기획평가관리비 外 BK21사업, 대학혁신지원, 국립대학육성 등 재정지원사업 사업관리비 포함
자료. 한국연구재단

❑ 그런데 R&D 사업이 아닌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같은 비(非)R&D 사업에까지 R&D 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간접비를 책정하여 계상·집행

5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③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하고,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및 제1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하는 의무 산출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비 R&D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사업출연금(350-02목)을 구분하고, 사업출연금은 개별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연구재단은 다수의 사업출연금에 대해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직접적인 운영비 뿐만 아니라 간접비를 계상하여 기관공통운영경비 성격으로 지출하고 있음. 이는 사업출연금으로 기관의 경상경비를 우회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54]

❑ 따라서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적정한 기관운영출연금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출연금 내의 간접비 편성을 통해 기관운영출연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4)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사업출연금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가 포함된 경우 기관운영출연금으로 비목전환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업출연금을 통해 경상경비를 우회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2)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교원확보율 기준 개선 필요

❑ 국립대학육성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24년까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해 왔음. 그러나 평가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종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동 기준은 2024년까지 적용)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55]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도록 평가체제를 개편하였음.

- 평가체제 개편에 따라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던 대학 기본역량 진단사업은 폐지되었으며, 기존에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던 기관평가인증이 이를 대체하게 되었음.

❑ 개편된 대학평가체계 하에서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교원확보의 평가기준을 '전임교원 확보율'로 설정하고, 전임교원에 대해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구분없이 적용하는 것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및 연구의 질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55) 인증유예, 인증(효력)정지, 불인증(인증취소 포함)대학 및 기관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전임교원은 통상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56]상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지칭하는 용어임. 전임교원은 크게 정년트랙(임용 시 정년보장)과 비정년트랙(일정 기간 계약)으로 나뉘는데, 두 트랙은 모두 교육부에 등록되고 사학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음. 그러나 비정년트랙의 경우 정년보장 없이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며, 그 외에도 임금 및 복지 차별, 신분 불안정 및 고용불안 등 정년트랙과의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제 2024년 국내 사립대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교원 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비정년트랙 교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정년트랙 교원의 3배(정년트랙 35명, 비정년트랙 118명)가 넘는 반면, 평균 임금은 정년트랙 교원의 절반 가량(정년트랙 약 8,400만원, 비정년트랙 약 4,300만원)임. 또한, 비정년트랙 교원이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트랙 전환제도도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2024년 국내 사립대학교 정년, 비정년트랙 교원 평균 현황 >[57]

(단위: 명, 천 원, 수)

구 분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 평균 임금		2019-2024 비정년 → 정년트랙 전환 수
	정년 트랙	비정년 트랙	정년 트랙	비정년 트랙	
평균	35.0	118.1	83,979	43,079	9

자료: 교육부

56)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57) 각 학교별 세부적인 내역은 [별첨] 자료 참조

이러한 차별은 대학 내 갈등, 교육의 질 저하, 교원의 신분 불안정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바,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58]

❑ 그런데 이러한 비정년트랙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는 것 중 하나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중 하나인 전임교원 확보율임.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에서는 대학정보공시에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전임교원 확보율 산출식 또한 대학정보공시와 동일하게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 4주기 기관평가인증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 >

구 분	전임교원 확보율산출식
대학기관평가인증	$A(\%) = \frac{\text{전임교원 수(명)}}{\text{교원 법정정원(명)}} \times 100$ $B(\%) = \frac{\text{겸임교원 수(명)}}{\text{교원 법정정원(명)}} \times 100$ 전임교원 및 겸임교원 확보율 = A + min(0.3×B, 4.0%)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text{전임교원 확보율}(\%) = \frac{\text{전임교원수}}{\text{학생수 대비 교원 법정정원수}} \times 100$

자료: 교육부

이러한 평가지표 설정은 학령인구 감소, 대학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재정 악화 상황에서 대학이 전임교원 확보율 충족을 위해

58) 특히 2024년 국정감사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이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업무강도는 높지만, 임금은 적게 받는 것이 지적(김영호 의원실, 2024.10.8.)된 바 있음.

정년트랙 교수보다 비정년트랙 교수를 더 많이 채용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교육부는 현재 대학에 대한 기관평가인증에서 그 평가준거로 교원의 구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4주기('26년~)부터는 평가를 위해 대학이 제출하는 양식상 교원 확보, 승진, 재임용, 보수, 복지 등에서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을 구분하여 제출하고 있음.

❑ 그러나 그간 평가에서 교원의 구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였음도 비정년트랙 교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이 제출하는 양식을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으로 구분하더라도 사실상 정년트랙 교수의 채용을 유인할 기제로 작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교육부는 비정년트랙 교원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향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등에서 활용하는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의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2024년 국내 사립대학교 정년, 비정년트랙 교원 현황[59][60]

(단위: 명/ 천원)

광역	학교명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 평균 임금		2019-2024 비정년 → 정년트랙 전환 수
		정년 트랙	비정년 트랙	정년 트랙	비정년 트랙	
서울	A	30.8	51.7	108,124	45,212	6
	B	29.7	85.3	102,020	46,607	6
	C	46.6	53.2	103,476	44,658	12
	D	41.2	67.9	106,425	44,017	9
	E	30.5	84.5	99,220	76,978	-
	F	40.8	209.3	55,475	50,640	7
	G	31.4	127.6	70,357	44,048	-
	H	49.4	91.7	61,659	35,904	-
	I	36.2	142.4	94,251	42,415	-
	J	36.6	88.4	114,408	56,704	-
	K	19.2	304.5	103,249	67,260	20
	L	32.4	142.2	106,353	56,245	-
	M	32.3	148.8	65,099	32,362	제도 없음
	N	46.6	93.3	109,826	50,839	-
	O	31.4	122.2	97,423	54,465	47
	P	40.5	144.1	102,465	51,415	-
	Q	30.1	127.7	105,963	52,114	-
	R	39.9	104.5	122,036	42,558	제도 미운영
	S	18.2	38.4	64,831	31,615	26
	T	38.9	89.4	113,824	53,230	-
	U	17.8	72.9	89,775	63,500	제도 미운영
	V	39.1	73.0	104,224	52,377	-
경기	W	48.5	64.9	107,230	42,771	-
	X	31.3	194.4	60,659	37,575	19
	Y	48.2	61.7	94,827	44,936	-
	Z	38.2	125.7	95,618	48,356	8
	a	29.3	63.4	83,334	41,865	10
	b	53.7	51.9	100,974	36,677	5
	c	16.4	20.2	61,975	38,118	8
	d	40.6	58.5	43,361	24,650	5
	e	24.9	272.3	111,804	55,046	-

59) 비정년트랙 교환이 없는 대학교(18개교) : 감리교신학대, 광주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백석대, 선문대, 수원가톨릭대, 영남신학대, 영산선학대, 예수대, 평택대, 포항공과대, 건양대, 극동대, 대전신학대, 서경대, 서울한영대, 한국성서대, 화성의과대

60) 자료 미제출 대학교(27개교) : 가천대, 건국대, 경동대, 고려대, 광신대, 남부대, 대신대, 대전대, 동국대, 동아대, 부산장신대, 서강대, 성결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예원예술대, 우송대, 유원대, 이화여대, 장로회신학대, 제주국제대, 중앙대, 한국침례신학대, 한려대, 호남신학대, 호서대

	f	38.6	100.8	83,989	37,829	4
	g	24.5	144.7	93,893	39,997	–
	h	23.9	167.5	58,247	36,561	6
	i	58.8	47.6	87,316	38,223	–
	j	11.9	13.8	71,040	17,040	–
	k	12.2	6.1	80,586	46,202	–
	l	4.8	70.9	181,240	57,852	–
	m	230.2	33.7	45,100	30,119	–
	n	38.9	65.8	115,109	39,253	–
	o	34.5	124.3	108,279	41,719	–
	p	29.2	122.3	73,626	12,759	–
	q	29.5	135.1	89,775	63,500	제도 미운영
인천	r	22.5	171.4	106,331	54,949	–
	s	25.7	334.0	52,726	39,731	3
강원	t	27.5	137.4	68,000	36,600	–
	u	29.0	117.9	87,666	56,391	–
	v	39.5	120.0	73,408	39,813	8
	w	35.6	59.4	96,277	34,436	6
부산	x	52.0	64.2	78,371	36,465	9
	y	37.2	80.9	78,311	41,398	24
	z	39.3	94.9	114,408	56,704	–
	ㄱ	35.4	97.4	76,965	41,891	22
	ㄴ	42.3	57.4	87,729	32,714	–
	ㄷ	12.6	72.9	71,475	31,969	5
	ㄹ	41.8	87.4	83,742	36,224	4
	ㅁ	56.0	70.2	111,412	34,171	2
	ㅂ	34.5	135.6	62,460	44,739	제도 없음
울산	ㅅ	10.1	242.7	91,787	36,764	–
경남	ㅇ	8.4	199.1	92,512	38,509	10
	ㅈ	32.5	87.1	65,074	35,462	–
	ㅊ	26.0	102.4	50,825	39,146	8
	ㅌ	34.5	58.1	68,011	37,086	12
대구	ㅍ	30.5	128.4	101,560	50,837	11
경북	ㅋ	21.1	244.9	86,988	52,310	21
	ㅎ	32.3	139.4	80,309	56,733	5
	◁	38.0	140.3	73,910	41,653	5
	◀	39.2	107.3	102,371	36,436	–
	▷	25.3	16.4	32,400	25,800	–
	▶	41.6	95.8	90,524	38,465	2
	♤	28.0	99.2	61,815	27,051	1
	♠	46.4	73.5	68,900	33,500	1
	♡	21.7	100.5	32,245	26,700	–
	♥	30.3	132.8	67,982	42,219	13
	♧	31.5	76.8	112,823	40,915	–
	♣	28.7	141.8	59,857	31,989	1
대전	◉	10.7	304.6	76,543	46,497	3

	◈	39.4	119.9	89,976	40,204	2
	▣	43.0	68.7	84,400	41,637	–
	◐	44.9	71.6	96,132	41,666	–
충북	◑	31.6	101.7	89,054	44,733	11
	▒	21.1	100.3	66,668	51,936	2
	▤	48.0	88.1	78,106	39,946	9
	▥	26.4	180.6	64,639	42,482	–
	▨	53.2	75.4	102,625	43,101	2
충남	▧	34.6	87.6	82,539	46,404	4
	▦	13.0	196.1	82,946	49,400	–
	▩	48.4	55.7	106,125	37,183	18
	☜	14.1	14.1	64,605	46,682	1
	☞	40.8	91.1	88,310	36,529	9
	¶	46.5	127.5	87,422	34,351	9
	†	45.6	77.6	79,533	36,551	2
	‡	22.7	297.1	93,457	79,180	2
광주	↕	30.9	315.7	56,147	35,911	–
	↗	32.3	163.1	72,700	36,840	3
	↙	26.4	221.9	98,496	49,791	–
	↖	26.0	236.6	66,440	41,098	9
	↘	39.4	72.9	61,867	37,997	3
전북	♭	35.5	73.1	77,680	41,664	13
	♩	60.7	86.4	76,019	51,000	9
	♪	26.6	59.8	57,140	36,608	6
	♬	34.5	208.8	83,116	41,384	11
	㉿	22.5	102.6	93,204	40,943	–
전남	∞	48.2	51.9	59,999	42,423	9
	∴	36.8	81.8	61,092	45,132	3
	¢	26.8	482.0	59,113	43,289	1
	£	28.4	122.2	91,969	40,603	–
평균		35.0	118.1	83,979	43,079	9

자료: 교육부

(3) 집행실적을 고려한 관리운영비 편성 및 교부 필요

❑ 대학혁신지원(2301-300)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는 수탁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운영비를 지급(출연)하고 있음.

❑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최근 3년간 사업관리운영비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40% 수준으로 한국연구재단은 연례적으로 해당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

< 대학혁신지원 사업 내 관리운영비의 최근 3년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2	7,200	-	-	7,200	3,320	46.1	3,880	-
2023	5,700	3,880	-	9,580	4,255	44.4	5,325	-
2024	3,200	5,325	△1,200	7,325	3,558	48.6	-	3,267

주 1. 동 사업의 2주기 종료에 따라 '24년 관리비운영비 집행잔액은 반납 예정
2. '24년에는 예산액에서 5억원의 관리운영비를 감액조정하였음.
자료: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의 사업관리운영비 예산 집행의 부진에 대해 교육부는 2022년에는 대학의 유지충원율 점검 및 적정규모화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30억 6,000만원)하였으나, 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결국 실시하지 않았으며,[61] 2024년에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

업(3유형)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12억원을 내역변경 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은 국가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특히 교육부는 매년 사업관리운영비로 배정된 예산 전부를 한국연구재단에 전액 교부하였는데, 사업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배정된 예산을 수탁기관에 전액 교부한 것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의 관리 및 책무성 확보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이에 교육부는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예산의 집행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61) 교육부는 사업설명회 등 온라인 시행, 사업총괄협의회와의 성과포럼 공동개최 등으로 대체하였다는 설명임.

❑ 한편, 관리운영비의 전체적인 집행이 부진한 가운데, 관리운영비 중 전문가에게 위탁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된 위탁연구개발비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실정임.

❑ 실제 최근 3년간 위탁연구개발비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실집행률이 25.5%에 불과하였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실집행률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60%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임.[62)]

< 위탁연구개발비의 최근 3년간 결산자료 >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2	490	-	490	125	25.5	365	-
2023	185	365	550	375	68.2	175	-
2024	200	175	375	240	64.0	-	135

주. 동 사업의 2주기 종료에 따라 '24년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은 반납 예정
자료: 교육부

❑ 또한, 2024년 위탁연구개발비로 수행된 정책과제의 실제 수행내역을 살펴보면,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인재양성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 사업의 목적과는 관련성이 다소 적어 보이는 과제를 수행한 사례도 있음. 실제 2024년 수행된 '고등교육재

62)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계획과는 달리 일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적정규모화 컨설팅 용역 등), 추진 방식을 변경(정책연구→외부전문가활용)하는 사유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차년도부터는 위탁연구개발비 편성을 축소하여 이월 규모를 줄이겠다는 입장임.

정 총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의 경우 고등교육 재정 전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위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대학의 자율 혁신 지원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어 보이므로,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향후 위탁연구개발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주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위탁연구개발비 집행 과제 현황 >

(단위:백만원,%)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비	연구책임자	주요 내용
대학전공자율선택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방안 연구	'24.4.15.~ '24.11.14.	100	하□□ (A대)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대학 교육체계 변화 필요성 분석
대학혁신지원사업 수요자 체감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24.6.12.~ '25.1.31.	40	박▣▣ (B대)	사업 주체 및 대상별 심층 인터뷰를 통한 사업 관련 인식 정도 및 지원 효과성 조사·분석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기획 연구	'24.9.25.~ '25.5.8.	50	김目目 (C대)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효과성 및 대내외 사업 환경 분석을 통한 3주기 대학 혁신지원사업 기획 연구
고등교육재정 총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24.10.23 ~'25.4.22.	50	고▥▥ (D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고등교육 재정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총괄 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

자료: 교육부

<일반회계>

1) 평생교육바우처 지원[6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4131-304) 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일반인 등의 역량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강좌 수강”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1인당 35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70만원)하는 사업으로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 평생교육바우처 운영지원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운영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63) 문의: 02-6788-5193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현액은 262억 1,900만원으로, 243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7,0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2.9%임.

❑ 다만,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예산현액 19억 8,500만원 중 14억 7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0.9%로 총 5억 7,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26,219	-	26,219	24,349	-	1,870	92.9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21,042	-	21,042	19,757	-	1,285	93.9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2,992	-	2,992	2,992	-	-	100
○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1,985	-	1,985	1,407	-	578	70.9
○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200	-	200	193	-	7	96.5

나) 검토의견: 적극적인 지방비 매칭 노력을 통한 집행율 제고 필요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2023년까지 출연사업으로 수행하였으나, 2024년부터 출연사업의 일부를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전환하였음. 이에 따라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액 210억 4,200만원 중 179억 5,500만원을 사업출연금(350-02)으로, 30억 8,7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으로 편성하였으며, 2025년부터 해당 사업은 지원방식을 출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사업을 수행함.

❑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2023년 처음 시행되어 2024년부터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어 자치단체 경상보조 방식으로 진행되며, 2024년에는 공모로 선정된 106개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음.

< 2024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체계 >

구 분	지원방식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백만원)	지원 비율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출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995	국비 100%
	자치단체 경상보조	3개 광역지자체 (울산·충남·제주)	3,087	국비 70%, 지방비 30%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출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992	국비100%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	자치단체 경상보조	106개 기초지자체 (세종시 포함)	1,985	국비 70%, 지방비 30%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운영	일반용역비	국가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	200	국비100%

자료: 교육부

❑ 24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사업 출연금(350-02)을 통한 출연방식으로 진행된 경우 실집행률이 92.7%인 반면,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실집행률이 52.8%로 출연방식에 비해 집행이 저조함.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실집행률이 전년도 61.9%에 이어 2024년도에는 40.9%로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집행이 부진한 사유를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국비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64]이 필수적이나, 이러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 일부와 '장애인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의 지방비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임.

64)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사업과 '장애인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70%를 국비인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로 충당하며, 30%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이 필수적임.

< 최근 3년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14,073	14,056	99.9	20,595	20,032	97.2	26,219	22,409	85.5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12,600	12,590	99.9	17,830	17,627	98.8	21,042	18,277	86.8
· 사업출연금 (350-02)	12,600	12,590	99.9	17,830	17,627	98.8	17,955	16,647	92.7
·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3,087	1,630	52.8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1,473	1,466	99.5	1,650	1,639	99.3	2,992	1,925	64.3
-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	-	-	915	566	61.9	1,985	813	40.9
-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운영	-	-	-	200	200	100.0	200	193	96.5

자료: 교육부

❑ 이를 자세히 보면,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계획한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으로 30억 8,700만원[65]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규모가 줄어들어 실집행액은 16억 3,000만원으로 당초 편성 예산액 30억 8,700만원 대비 실집행률은 52.8% 수준에 머물렀음.

❑ 이와 같이 지방비 조달이 계획 대비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교육부는 당초 5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 참여의사를 밝혀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65) 당초 총사업비 44억 1,000만원 중 국비 지원 비율 70%에 따른 30억 8,700만원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매칭에 필요한 지방비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2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모 신청을 하지 않아 3개 지방자치단체(충남·울산·제주)만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3개 지방자치단체마저 지방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지방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 가능성 등에 대한 교육부의 사업관리가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교육부는 사업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실적 고려, 예산 편성 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담당자와 협의 등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2025년부터 지원방식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해야 할 지방비 규모는 2024년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비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광역지자체 모두가 사전에 예산 편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비 매칭 사업의 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 배분 방식을 조정하는 등 지방비 매칭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5년 8월 기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교부를 완료하였음[66].

❑ 다음으로, '장애인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2023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접근성을 강화하여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제고하고자,

2024년도에는 1인당 연간 35만원(우수이용자 35만원 추가지원)씩 총 9,000명 규모에 국비 70%를 지원하고 소진율 90%를 적용하여 총 19억 8,500만원 규모[67]로 국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해당 예산액에 대해서 총 사업비의 30%인 8억 5,050만원 규모의 지방비 매칭이 필수적임.

66) 경상북도의 산불 재해로 인한 추경편성으로 교부금 교부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이외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교부금 교부 완료하였음.
67) 35만원 × 9,000명 × 0.7(국비지원규모) × 0.9(소진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수요를 바탕으로 국비 14억 7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68]에서 국비 실집행액은 8억 1,300만원으로 당초 편성된 국비 예산액인 19억 8,500만원 대비 40.9% 수준만 집행하였음.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수요를 바탕으로 한 국비 지원계획액은 14억 700만원이었으며, 제출된 사업수요보다 저조한 지방비 매칭 실적이 나타남에 따라 교부액 대비 실집행액은 57.8%으로 나타남.

<2024년도 장애인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장애인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당초 예산편성액(A)	교부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 (B/A)
국비 (70%)	1,985	1,407	813	40.9
지방비 (30%)	850	603	348	
총사업비	2,835	2,010	1,161	

자료: 교육부

68)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24년 사업에 불참하여 교부계획이 없었으며 2025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였음.

< 2024년도 바우처 지원 사업 국비 지원 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평생교육바우처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교부액	실적액	반납액	교부액	실적액	반납액
서울	-	-	-	471	292	179
부산	-	-	-	229	102	127
인천	-	-	-	76	39	37
대구	-	-	-	89	38	51
울산	123	89	34	10	9	1
광주	-	-	-	61	50	12
경기	-	-	-	123	70	53
강원	-	-	-	60	22	39
충북	-	-	-	18	9	9
충남	980	980	0	40	15	24
경북	-	-	-	42	16	26
경남	-	-	-	34	21	14
세종	-	-	-	9	7	2
제주	700	562	138	0	0	0
대전	-	-	-	25	24	1
전남	-	-	-	11	10	1
전북	-	-	-	108	90	18
계	1,803	1,631	172	1,407	813	594

※ 2024년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시범 실시

※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액을 합산한 것임.

자료: 교육부

❑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장애인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이 2024년에 처음 지방비 매칭 구조로 개편되면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가 저조하여 예산편성이 가능했던 106개의 기초지자체만이 지방비 매칭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였고,

기초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 연장[69]으로 인하여 바우처 실사용은 8월부터 가능하게 되어 사용기간 축소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2025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 사업 역시 예산이 2024년 대비 33.3% 증가한 26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사업규모가 확대될 예정으로 향후 지방비 매칭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역시 2025년부터 자치단체 경상보조 방식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교육부는 광역지자체의 지방비 재정 상황 및 예산 상황과 지방비 매칭 가능성,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규모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 등을 미리 고려하여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참여 의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비 매칭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비 매칭을 위한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2025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과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모두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매칭

69)공모사업(시·군·구) 공고 연장(~`24.3.12.), 추가 공고 연장(`24.5.2.~5.22.), 공문안내(`24.6.13.)(교육부)

예산편성을 완료하여, 이에 따라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교부하여 사업을 진행중에 있음('25.08.기준).

2)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70]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4143-300) 사업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기반 안착을 통해 지역단위 평생학습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군·구 단위의 평생학습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선정심사 및 성과관리, 기초자료 개발,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자료개발 및 성과관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70) 문의: 02-6788-5193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현액은 9억 9,5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예산현액 전액을 보조·출연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음.

< 2024년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995	-	995	995	-	-	100
○ 평생학습도시 조성	640	-	640	640	-	-	100
○ 기초자료개발 및 성과관리	355	-	355	355	-	-	100

나) 검토의견: 보조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보조금 정산 절차 관리 강화 필요

❑ 동 사업은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71]에 따라 교육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면, 수행기관은 교육부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며, 당해연도말 사업 수행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관련 법령[72]은 중앙관서의

---

71) **「평생교육법」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 "도시협의회"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

장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자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73]

❑ 보조사업자는 원활한 정산을 위하여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2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3) 기획재정부, 202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99~100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육부는 동 사업의 시행주체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비를 지원할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교육부가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직접 교부하고 있음.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종료 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74]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을 완료해야 함.

---

7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동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수익금 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내에 정산되었어야 할 2023년도 사업을 2025년도에야 정산을 완료하여 보조금 반납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보조금 미정산 현황 >

(2024년 12월말 기준)

구분	내역사업	지자체명	금액 (천원)	정산완료일	비고
2022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경북 문경시	90,000	‘23.11.21.	
	기존 평생학습도시 지원	대전 유성구	20,000	‘22.12.30.	
		강원 인제군	20,000	‘23.11.23.	
		경북 의성군	25,000	‘23.11.21.	
2023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강원 양양군	90,000	‘24.12.3.	
		경북 봉화군	90,000	`24.10.16.	
		전남 구례군	90,000	‘25.3.20.	연내 미정산
	마을배움터 운영 지원	강원 철원군	21,000	‘24.11.28.	
		경북 봉화군	45,000	‘24.12.3.	
2024	특성화 사업 운영 지원	경기 연천군	25,000	미정산	’25년 내 정산 예정
		서울 은평구	25,000	미정산	
		전북특별자치도	44,000	미정산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이 지연됨에 따라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정산 독려를 통해 정산이 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내에 정산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25년 6월 현재, 2024년 사업 중 아직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예년과 같이 회계연도를 넘겨 정산할 가능성이 있는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종료 후 특별한 이유없이 보조사업 정산이 늦춰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1) 한국학 진흥[75]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한국학 진흥(2432-303) 사업은 한국학 거점 지원 및 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 한국학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학 온라인 강좌를 개발 및 보급하여 해외에 한국학을 확산하며, 한국학 기초자료 수집·연구 등을 통해 한국학의 기초연구를 강화함으로써 국내·외의 한국학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으로 해외한국학사업과 국내한국학사업이 있음.

< 한국학진흥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사업내용	2024 예산액
해외한국학사업	① 한국학 취약 지역 기초 인프라 구축(교육시스템) 지원 ② 한국학 중심 권역에는 한국학 교육 중심 거점 대학 육성 ③ 한국학 교육·연구 네트워크를 위한 해외전략연구소육성 ④ 세계적 수준의 한국학 연구성과물 산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지원 ⑤ 한국의 주요 저서 외국어 번역 등	7,076
국내한국학사업	① 한국학 온라인 강좌 제작·보급 ② 한국학국영문사전편찬·제공 ③ 한국학대형기획총서 집대성 ④ 국내외 중요 고서·고문헌을 수집·정리·제공 등	14,720

(자료 : 교육부)

75) 문의: 02-6788-5185

(2) 결산개요

❑ 2024년도 한국학 진흥 사업의 예산현액은 217억 9,600만원으로 전액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교부되었고[76],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부받은 217억 9,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임.

< 2024년도 한국학진흥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 시행주체 (기관명)	교육부		사업시행주체						
		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 한국학 진흥	한국학 중앙연구원	21,796	21,796	21,796	-	21,796	21,796	-	-	100
○해외한국학사업 (350-02)	한국학 중앙연구원	7,076	7,076	7,076	-	7,076	7,076	-	-	100
○국내한국학사업 (350-02)	한국학 중앙연구원	14,720	14,720	14,720	-	14,720	14,720	-	-	100

(자료 : 교육부)

76) 전액 사업출연금(350목)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검토의견 : 한국학진흥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 필요

❑ 한국학 진흥 사업은 한국학의 기초연구를 강화하여 국내·외의 한국학 진흥 및 확산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내역사업 '해외한국학사업'은 ①해외한국학씨앗형사업, ②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 ③한국학세계화랩사업, ④한국학술번역사업, ⑤한국학전략연구소육성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고, 내역사업 '국내한국학사업'은 ①K학술확산연구소사업, ②한국학 국영문사전편찬사업 ③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 ④한국학기초자료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

❑ 2024년도 한국학 진흥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액 217억 9,600만원 중 32.4%에 해당하는 70억 7,600만원을 해외한국학 사업에 집행하고 67.6%에 해당하는 147억 2,000만원을 국내한국학사업에 집행함. 특히 국내한국학사업의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은 전체 한국학 진흥 사업의 50.5%에 해당하는 110억원을 집행함.

< 2024년도 한국학진흥 사업추진 실적 >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사업 목적(내용)	지원 대상	사업추진 실적	집행액 (비중)
내역	내내역				
해외국학사업	해외한국학씨앗형사업	▪ 한국학 초기 지역의 해외대학에 한국학을 도입,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해외 대학	-신규 6개과제, 계속 32개 과제 지원 -한국학 학과(전공) 개설: 1개 대학 -연구소(센터) 설립: 8개소 -교과목개설: 47개 -장학금지원: 262명 -연구저서 출판: 14권 -연구논문 게재: 33편	2,874 (13.2%)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	▪ 한국학 연구·교육 역량을 갖춘 세계 각지 대학을 선정, 장기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한국학 거점기관으로 육성	해외 대학	-신규 2개 과제, 계속 17개 과제 지원 -한국학교수 채용: 6명 -연구소(센터) 설립: 1개소 -장학금지원: 144명 -연구저서 출판: 45권 -연구논문 게재: 97편	3,372 (15.5%)
	한국학세계화랩사업	▪ 국내외 석학 및 중진, 신진학자의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 및 우수 저서 산출. 확산 지원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연구자	-연구저서* 출판: 3권 *북미, 서유럽 등 저명 출판사 출간 -연구논문 게재: 5편	-
	한국학전략연구소육성사업	▪ 해외한국학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할 지역별 선도 대학 육성을 위해 중핵사업을 통해 연구기반이 안정된 대학/연구소를 지원	해외 대학/연구 기관	-신규 1개 과제, 계속 5과제 지원 -한국학 네트워크(전략연구소 웹페이지 개설) 1개소 -한국학 학술회의 개최 1회 -한국학 강의 제공	650 (3.0%)
	한국학술번역사업	▪ 한국고전 및 근현대 학술저술을 영문으로 세계에 소개하여 해외 한국학 진흥 및 국가 이미지 제고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계속 6과제 지원 -저서 출판: 7권 *북미, 서유럽 등 저명 출판사 출간	180 (0.8%)
	소 계				**7,076 (32.4%)**
국내한국학사업	K학술확산연구소사업	▪ 해외 수요에 맞춘 한국학 분야별 온라인 강좌 및 교재 개발, 보급을 통해 해외 한국학교육을 강화하고 학술 한국 인지도 제고	국내 대학/연구 기관	-계속 12과제 지원 -한국학 온라인 강좌 제작: 110강좌 -우수성과 공유회 개최: 2개 연구소 -논문 게재: 39편 -저서 출판: 16권 -학술회의 개최: 28회 -연구소별 해외대학 MOU 체결 등 확산 활동	11,000 (50.5%)
	한국학국영문사전편찬사업	▪ 국내외 한국학 연구 · 교육을 돕기 위한 주제별, 분야별 사전 편찬 지원	국내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계속 6과제 지원 -저서 출판: 2권 -논문 게재: 11편 -사전 DB 구축: 500건	480 (2.2%)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	▪ 한국학 주요 테마에 대한 대형 학술총서 발간을 통해 한국학 지식의 심화 및 체계화	국내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계속 3과제(15권 집필) 지원 -저서 출판: 33권 -논문 게재: 18편	900 (4.1%)
	한국학기초자료사업	▪ 한국학 기초자료 발굴·수집, 정리, DB구축, 심층연구 지원	국내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신규 2과제, 계속 8과제 지원 -한국학 기초자료 DB구축: 97,413건	2,340 (10.8%)
		소 계			**14,720 (67.6%)**
예산집행 총계					21,796 (100%)

(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학 진흥 사업은 성과지표로 '해외한국학지원사업' 만족도를 설정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해당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은 해외학국한지원사업 연구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5점 만점) 평균으로 정하고 목표 대비 실적으로 그 달성도를 정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달성도는 각각 102%, 102%, 95.8%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학진흥 사업 성과지표 현황 >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외한국학 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점)	목표	4.4	4.5	4.8	4.8	교육부 경영평가 편람의 계량지표 평가 방법인 목표부여(편차) 방식 적용	해외한국학 지원사업 연구자 만족도 평균 (5점 척도)	해외한국학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4.5	4.6	4.6	-			
	달성도	102	102	95.8	-			

(자료: 교육부,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 그런데 성과지표인 '해외한국학지원사업' 만족도는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만족도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동 사업의 목적인 '국내외 한국학 진흥 및 확산'의 성과 평가의 지표로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동 사업에서 6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한국학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실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77] 최근 3년(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학진흥 사업 과제 참여 연구자 1,168명[78]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전체 조사대상 중 11.7%에 해당하는 137명만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도 성과목표를 95.8%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성과 측정으로 판단되는바 응답률을 높이는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 진흥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으로, 국내외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 지표를 개발하는 등 성과 측정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 향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해외한국학사업 및 국내한국학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하고, 해당 지표는 연구자의 만족도

---

77) 「2024년도 한국학진흥사업단 만족도 및 연구 수요조사 결과보고서」(2024.12,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한국진흥사업단) 참고
- ○ 조사대상: 최근 3년('22~'24년) 한국학진흥사업 과제 참여자 1,168명
- ○ 조사방법: e-메일을 통해 설문URL 배포
- ○ 조사항목: 서비스 만족도, 사업 수요, 사업 및 사업단에 관한 의견 등
- ○ 응답자수: 137명

78) 모집단 : 2022~2024년 한국학진흥사업 과제 참여자: 1,168명
(과제관리시스템 등록자 기준,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전임연구원, 국내/국외, 중복 제거)

외에 연구실적, 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결과 수요자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학 진흥 및 확산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2446-300)[79]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2446-300) 사업은 이공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역사업으로는 학문후속세대지원, 대학연구기반구축, 학문균형발전지원 사업이 있음.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사업내용	2024 예산액
학문후속세대지원	학위과정생부터 우수한 박사후연구자까지 학문후속세대의 성장 단계에 따른 연수·연구 기회를 지원하여 연구단절 방지 및 연구역량 제고	110,102
대학연구기반구축	대학부설연구소 및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의 특성화·전문화된 기초연구 거점 구축, 우수한 박사급 연구인력의 안정적 소속 제공	233,122
학문균형발전지원	지역대학·보호분야 및 비전임교원, 융합연구 등 상대적으로 연구 여건이 열악하고 연구비 지원이 적은 연구자와 학문분야 지원을 통해 균형있는 연구 발전 유도	168,373

(자료 : 교육부)

79) 문의처: 02-6788-5185

(2) 결산개요

❑ 2024년도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사업 예산현액은 5,115억 9,700만원으로 전액 한국연구재단에 교부되었고[80], 한국연구재단은 교부받은 5,115억 9,700만원을 전액집행하여 집행률은 100.0%임.

< 2024년도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 시행주체 (기관명)	교육부		사업시행주체						
		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 이공학학술 연구기반구축	한국 연구재단	511,597	511,597	511,597	-	511,597	511,597	-	-	100
○ 학문후속세대 지원(360-05)	한국 연구재단	110,102	110,102	110,102	-	110,102	110,102	-	-	100
○ 대학연구기반 구축(360-05)	한국 연구재단	233,122	233,122	233,122	-	233,122	233,122	-	-	100
○ 학문균형발전 지원(360-05)	한국 연구재단	168,373	168,373	168,373	-	168,373	168,373	-	-	100

(자료 : 교육부)

80) 전액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한국연구재단 출연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나) 검토의견 : 인프라고도화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학연구기반구축' 사업은 내내역 사업으로 대학중점연구소지원,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사업이 있음.

❑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은 대학 내 산재된 연구장비를 연구 분야별로 집적화하여 공동활용하고, 연구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핵심연구지원센터(Core-facility)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장비전담인력에 의한 관리·지원을 통한 장비활용도 향상, 혁신적연구수행을 위한 최첨단 R&D 장비 구축·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 동 사업 내에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인프라고도화' 사업을 신설하고 537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인프라고도화 사업은 대학이 연구거점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혁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R&D 장비 도입 및 전담운영인력 육성·운영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과제별 평균 50억원[81]의 장비 구축비를 초기(1년차)에 일괄 지원하고, 전담운영인력 육성 등 운영 예산 연 5억원을 5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4년도에 10개 과제를

81) 교육부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연구분야별 특성 및 수행기관의 구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20억원~최대 70억원 지원

2025년도 9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중임.

【 과제별 연차별 지원예산(안) 】 (단위: 억원)

구 분	1년차 (9개월)	2년차 (12개월)	3년차 (12개월)	4년차 (12개월)	5년차 (12개월)	합계
① 첨단R&D 장비 구축비	50	-	-	-	-	50
② 장비 운영·관리 및 개선비	3.75 (9개월)	5	5	5	5	23.75
③ 전담운영인력 육성 및 운영						
④ 공동활용 활성화						
합 계	53.75	5	5	5	5	73.75

【 '24~'25년도 지원과제 수 및 예산 】

구 분	'24년도	'25년도
지원과제 수	총 10개 과제 (신규 10개)	총 19개 과제 (신규 9개/ 계속 10개)
지원예산 (백만원)	53,750 (신규 53,750)	53,375 (신규 48,375/ 계속 5,000)

(자료:교육부)

❑ 교육부는 동 사업을 통해 첨단R&D 장비의 과감한 투자로 최우수 수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이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24년도 1차년도 인프라고도화 사업은 10개 기관[82]의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과제별 첨단R&D 장비 구축을 완료하는 사업임.

82) 교육부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대학 내 핵심연구지원센터, 대학부설연구소, 대학공동실험실습관으로 정하고 있음.

동 사업은 당초 6월에 사업개시를 하여 1차연도 사업수행기간(2024.6.1.~2025.2.28., 9개월) 내에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2차연도부터는 장비를 활용한 연구·분석·개발, 논문발간 및 전문가 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었음.

【24년도 세부 과제별 연차별 사업계획】(예시)

주관 기관	시설명	주요 수행 일정	1 단계			2 단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경상국립 대학교	광화학 나노소재 전문 핵심연구 지원센터	• 장비 설치 및 시범 운행	장비구축				
		• 실시간 XAS 분석법 구축		측정분석			
		• 실시간 전기화학 IC-XAS 측정			반응분석		
		• 우주극한환경 심화 연구				신소재 개발 기술 확보	
		• 공동활용 활성화, 인력양성 등		MOU 체결, 산학연 연계, 세계적 논문 게재 등			
예산 (백만원)		(총계) 5,494	3,494	500	500	500	500

(자료:교육부)

❑ 그런데 2024년 결산기준(2025.2.28.)[83] 10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장비구축을 완료하였고, 그 외 6개 기관은 장비구축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2차연도에 계획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한 과제수행이 적기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83) 대학회계는 학년도 기준으로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 종료함.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학회계) ⑤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사립학교법」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 2024년도 인프라고도화 장비구축 현황 >

기술 분야	대학명	시설명	연구장비	예산액 (백만원)	장비구축 현황
생명	숙명여대	여성건강 연구원	1) 고분해능 싸이클릭 이온 이동성 질량 분석기 2) 탈착 전기분무 & 매트릭스 보조 레이터 탈착 이온화 이미징 다중 반사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3) 단일형광분자 레이져절단현미경 4) 단일세포 공간분석 시스템	4,742.3	1차연도 완료
	서울대	기초과학 공동기기원	1) 고경사 확산 자기공명 영상 시스템	7,171.3	1차연도 완료
	포항공대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1) 초저온 플라스마 집속 이온빔 2) Cryo-ET용 GPGPU 클러스터	5,526.3	1차연도 완료
재료 소재	성균관대	공동기기원	1) 초저온 3차원 국소 원자단층 현미경	5,410.3	1차연도 완료
전기 전자	전북대	반도체공정 연구센터	1) 미소디바이스 특성평가 2) 전자빔리소그래피 시스템 3) 저차원소재합성용 CVD장비	5,891.3	2차연도 완료 (2025.4월말)
	포항공대 (중형)	반도체기술 융합센터	1) 고성능 전자빔 리소그래피 시스템 2) 2차원 전이금속 칼코겐화합물 성장을 위한 8인치용 유기화학기상증착기 3) 대면적 그래핀 성장 장비 4) 대면적 TMDC 전사 장비 5) 저온 플라즈마 기반 보호층 박막 증착장비 6) 전이금속 디칼코겐화물 전용 식각 장비 7) TMDC 기판 전용 세정/습식식각 장비	5,012.3	2차연도 완료 (2025.4월말)
에너지	한양대	청정에너지 연구소	1) 근상압 X-선 광전자 분광기 2) 초저온 집속이온빔-주사전자현미경 3) 양자/분자 역학 시뮬레이션 클러스터	6,592.3	2차연도 완료 (2025.5월말)
생명	이화여대	형광코어 이미징 분석센터	1) 7테슬라 소동물용 전임상 자기공명 영상분광기 2) 고주파 광음 영상분석기 3) 소동물용 3차원 micro-CT 영상분석장치 4) 엑스선 조사기 5) 고성능 광학 자동 슬라이드 스캐너	5,233.3	2차연도 완료 (2025.6월말)
기초 과학	경상 국립대	광화학 나노소재 전문 핵심연구 지원센터	1) 실시간 극저온 엑스선 흡수 분광기	3,494.3	
	부산대	신물질 양자현상 통합해석 연구지원센터	1) 극고분해능 2차원 전자 에너지 손실 분광기 2) GPU 기반 초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	4,676.3	2차연도 완료예정 (2025.12월말)

(자료:교육부)

❑ 동 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3월에 신규과제 공고를 하고 4월부터 5월까지 선정평가를 거쳐 2024년 6월말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음.

< 2024년도 인프라고도화 장비구축 추진경과 >

신규과제 공고	사업 설명회	신청·접수	선정평가			결과 발표	협약 체결
			서면 평가	발표 평가	현장 평가		
3.12.	3.13., 3.15.	3.28. ~4.12.	4.23. ~4.24.	5.8. ~5.9.	5.16. ~5.21.	6.20.	6월말

(자료:교육부)

❑ 이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각 과제 선정기관에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개시일(2024.6.1.)보다 사업 추진이 지연된 측면이 있고, 조달청 입찰 지연, 첨단 R&D 장비의 특성상 제작, 통관 및 도입에 장기간 소요 등으로 1차연도 사업수행 기간(2024.6.1.～2025.2.28.)내에 장비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1차연도 내에 구축을 완료하지 못한 6개 기관의 경우 2차례의 연구개발과제 변경심의[84]를 통해 장비구축

84) 2024년 제5회 연구개발과제 변경심의('24.11.21.)와 2025년 제1회 연구개발과제 변경심의('25.4.7.~4.8)

일정 및 연구개발비 이월 변경 승인을 득하였고 이후 장비구축 완료시점에 따라 구축완료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 향후 교육부는 인프라고도화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준비를 통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각 과제 수행기관의 연차별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연차별 성과 평가를 하는 등 면밀하게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동 사업은 글로벌 수준의 혁신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 R&D 장비 도입 및 전담운영인력 육성·운영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인바, 교육부는 각 과제 수행기관의 첨단 R&D 장비의 체계적 운용 및 전담운영인력을 위한 교육훈련[85] 관련 현황과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장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85) 교육부에 따르면 각 과제 수행기관에서는 장비전담운영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내부·외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①맞춤형 전문교육 및 1:1 멘토링 프로그램, ②온라인·오프라인 통합 교육 콘텐츠 제공 및 SOP 기반 실습 프로그램, ③장비 공급사 및 산업계 협업을 통한 고급 교육 제공, ④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와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 및 국제 교류 기회 확대 등 각 수행기관의 자율성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는 설명임.

3) 대학창업 활성화[86]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대학창업 활성화(2256-310)사업은

- 대학의 창업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대학에 집적된 창업교육 성과 및 창업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대학창업교육체제구축 사업,

- 학생창업경진대회를 통해 400팀의 유망창업팀을 발굴하고 단계별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학생창업육성 사업,

- 대학원 실험실(Lab)이 자체 보유한 연구성과 및 유망기술이 실제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 지원을 하여 고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 대학 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마련 등을 위해 맞춤형 펀드를 마련하는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

-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청년의 의견을 수렴·

86) 문의: 02-6788-5188

반영하기 위한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

-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행정기관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청년인턴 운영 사업으로 구성됨.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231억 3,200만원으로, 이 중 222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3,6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6.4%임.

< 2024년도 대학창업활성화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대학창업활성화	23,132	-	23,132	22,296	-	836	96.4
○ 대학창업교육체계 구축	5,998	-	5,998	5,998	-	-	100
○ 학생창업팀 육성	2,133	-	2,133	2,133	-	-	100
○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3,704	-	3,704	3,704	-	-	100
○ 대학창업펀드 조성	7,500	-	7,500	7,500	-	-	100
○ 청년자문단 운영	67	-	67	44	-	23	65.7
○ 청년인턴 운영	3,730	-	3,730	2,917	-	813	78.2

나) 검토의견

(1)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청년인턴 비율 확대 필요

❑ 대학창업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인턴 운영 사업은 공공부문에 유능한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청년들의 일경험 확대 및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하려는 사업임.

- 이는 2023년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청년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에서 제공하기 힘든 농식품, 외교, 문화유산 등 부처별 특화분야에 대한 일경험을 제공하며, 정책과정 경험 및 참여를 통해 국정 전반에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성과목표 현황 >

성과목표		실적		
		2023	2024	2025
참여기관 채용인원(명)	목표	2,000	5,000	5,000
	실적	1,948	4,921	-
예산사항		약 278억원	623억원	642억원

자료: 국무조정실

❑ 2024년 교육부 청년인턴 채용규모는 282명으로서 2023년(50명) 대비 232명 증가하였음.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규모를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림에 따라 그 규모를 2023년 대비 4배 넘게 늘린 것임. 그러나 교육부의 2024년 청년인턴 채용 현황을 보면, 본부 및 소속기관 채용규모는 282명 중 3명에 그치며, 나머지 279명은 국립대학 및 국립교대로 나누어 채용되었음.

< 교육부 청년인턴 기관별 채용 인원 >

구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국립대(27교)	국립교대(10교)
인원	3명	229명(교당 8~9명)	50명(교당 5명)

자료 : 교육부

❑ 청년의 일경험 확대 및 정책과정 경험 및 참여라는 동 사업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청년인턴의 채용은 교육분야 정책과정 경험 및 참여라는 목적 달성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 국립대 및 국립교대 인턴들의 주요 담당 업무는 대부분 학교 내 행정 및 사무보조 업무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업무는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공분야 청년인턴들이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87]

87) 대학교 근로장학생은 하루 평균 2~3시간, 6개월 이내로 근무하는 반면, 대학의 청년인턴은 하루 평균 8시간, 연속하여 5개월~1년간 채용되어 일하고 있음.

< 2024년 교육부 청년인턴 담당업무 현황 >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채용분야	채용기간 (예정)	주요 담당 업무
A대학교	행정	6개월 (5~10월)	◦ (행정 지원) 문서관리·작성, 각종 자료조사 및 대학육성사업 등 업무 지원 ◦ (회의·행사 지원) 원활한 회의·행사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운영 보조 등
B대학교	행정	6개월 (5~10월)	◦ 다양한 행정경험 기회 보장을 위해 학사행정 전반과 관련한 업무 수행 ◦ 학사 제도 파악 및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학사DB 구축 관련 업무 지원
C대학교	행정	6개월 (5~10월)	◦ 문서관리·작성, 민원 응대, 시설관리 등 도서관 행정 지원
D대학교	행정	6개월 (5~10월)	◦ 학내 행사 기획 및 운영 보조 ◦ 물품관리 및 업무 지원 ◦ 회의자료 취합 및 작성 지원 ◦ 주요 업무보고 관련 업무
E대학교	행정	6개월 (4~9월)	◦ 전임교원 공개채용 행정 업무 지원 ◦ 교원 채용 관련 전산 시스템 관리 지원 ◦ 교내 행사(퇴임식, 신임교원아카데미) 지원
F대학교	행정	6개월 (5~10월)	◦ 국유재산, 물품관리 및 등록금 수납 등 행정 지원
G대학교	행정	6개월 (4~9월)	◦ A관 공용강의실 운영계획 수립 ◦ A관 교양강의실 수업 기자재 관리 ◦ A관 시설(전기·소방·안전 등) 관리 ◦ A관 수업활동 지원

자료: 교육부

❑ 교육부와는 달리 다른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청년인턴을 정책 연관성이 높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부처는 본부 및 소속기관 소속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했으며, 법무부의 기타 채용인원은 전부 검찰청 소속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독립성으로 인

해 소속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을 뿐, 법무부도 청년인턴 채용을 전부 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부처 산하 특수법인에서 인턴을 다수 채용하고 있음.

< 2024년도 중앙부처 청년인턴 채용 현황[88][89] >

(단위 : 명)

부처명	본부 채용인원	소속기관 채용인원	기타 채용인원	합계
기획재정부	40	0	0	40
교육부	**2**	**1**	**257**	**2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	158	0	187
외교부	96	0	0	96
통일부	20	11	0	31
법무부	12	197	93	302
국방부	31	10	0	41
행정안전부	39	83	0	122
국가보훈부	10	24	0	34
문화체육관광부	23	123	0	146
농림축산식품부	25	0	0	25
산업통상자원부	19	1	0	20
보건복지부	25	0	41	66
환경부	37	105	0	142
여성가족부	9	0	0	9
국토교통부	81	101	0	182
해양수산부	25	217	0	242
중소벤처기업부	11	46	0	57

88) 각 부처별 직제 규정에 따라 구분
89)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노동청별로 인턴을 채용하여 집계 제외

❑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개최한 2024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의 주요부처 청년인턴 운영사례를 보면, 교육부에서 배치되어 일하는 청년인턴들과는 달리 주로 정책과 관련된 인턴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4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주요 운영사례 >

구분	기관명	주요 운영사례
장관급 기관	기재부	▸보고서 작성법 및 한글·엑셀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업무 관련 정책보고서 제출(3회) ▸근무부서 소개, 직원인터뷰 진행 등 '인턴이 인터뷰했네' 시리즈 기획·제작
	행안부	▸채용시 구체적인 직무기술 제시하고 희망 부서 신청토록 해 청년의 적성에 맞게 매칭 ▸행안부 업무관련 다양한 주제 연구소모임 운영하여 장관상 표창(23명)
	국토부	▸국토교통 관련 정책연구 경진대회 개최(5개월 연구지원)하고, 정책개선에 반영 ▸'청년인턴 아카데미' 운영하여 국토교통 기관 등 취업 관련 교육 지원
	고용부	▸다양한 부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3개월) 이후 희망부서 배치 ▸청년인턴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 아이디어 실행(고용정책 팝업스토어 운영)
	문체부	▸청년인턴의 관심이 높은 문체부 관련 소속기관·공공기관 방문 및 교류 지원 ▸행정·사서·무대·학예 등 다양한 업무 바탕으로 관련기관 11곳 취업('24.11월 기준)
	중기부	▸혁신기업·중소기업 및 창업현장 등 부처 관련 주요 현장체험 통해 진로 지원 ▸정책 및 홍보 분야로 나누어 경진대회 개최하고 정책 개선·반영 검토
	법무부	▸법무·검찰·보호·교정·출입으로 직무 나누어 관련 진로 관심있는 청년 직무배치 ▸근무기관별를 각 인턴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 부여(홍보·행사·교육 등)
	국방부	▸'청년인턴 내일점프 과정' 개설해 AI교육 및 금융관리 등 사회적응 교육 지원 ▸다자안보협의체 직무 수행한 인턴이 '23년 불합격한 희망기관에 정규직 채용
	산업부	▸'산업기술 홍보'를 '24년 프로젝트 업무로 발굴하여 관련 홍보영상 3편 제작 ▸국제기구 공동개최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리에종을 참여해 글로벌 역량 강화
	환경부	▸본부 25%, 지방청 등 소속기관 75% 배치하여 지역청년 기회 제공 위해 노력 ▸소속기관별 다양한 직무 및 현장활동 지원하여 환경분야 관련기관 다수 취업
	해수부	▸지역조직 활용해 지역청년 참여기회 확대, 기관별 직무 및 활동 다양하게 제공 ▸국제행사 실무 참여 홍보콘텐츠 제작 업무 등 기관별로 다양한 프로젝트 업무 발굴

차관급 기관	인사처	▸생성형 AI 활용 공모전 기획운영 프로젝트 추진하며 직접 AI 교육받고 업무 투입 ▸'찾아가는 공직 박람회''(30회 이상) 기획 운영 아이디어 제시하여 청년관점으로 개선
	법제처	▸법제처 내부 '자치법제 연구'에 참여, 법제 교육 제공하고 청년인턴 시각 반영 ▸법제처 주요 과제 홍보콘텐츠 '청년인턴 위해서' 시리즈 기획·제작 업무 발굴·지원
	식약처	▸식품·의약품 등 세부분야별 전공·관심에 매칭해 업무 전문성 강화, 취업 도움 ▸근무 시작 전 직무캠프를 열어서 식약처 직무 이해 강화하고 인턴간 유대감 형성
	통계청	▸대학생 대상 통계관련 진로 및 취업정보 설명후 채용공고, 인턴 이후 통계 공무원 합격 ▸'통계혁신 아카데미' 운영해 통계교육 실시, '런치토크'로 소통 및 조직 적응
	조달청	▸청년인턴을 청내 청년 의견기구로 한 '청년정책 자문단'으로 구성(단장: 청장) 운영 ▸프로젝트 업무를 청년인턴이 직접 선정해 '조달맨 with 청년인턴' 콘텐츠 제작
	농진청	▸농업분야 진로 희망자 대상으로 구체적인 업무 부여하고, 전문교육 실시 병행 ▸일반인 포함 대상으로 한 경진대회 참여 지원하여 수상
	기상청	▸전공자 중심 기상 및 기후 분야 전문역량 강화하도록 직무 및 교육 지원 ▸지방청별로 배치되어 지역청년 참여 넓히고, 지역별 다양한 현장 활동 지원
	방사청	▸산하 교육원(방위사업교육원) 활용해 청년인턴 신규자 교육과정 개설하여 교육 제공 ▸멘토 지정후 내실있는 멘토링 위해서 월간 근무실적 제출해 우수 멘토링 표창
	질병청	▸질병청 정기 발간물인 '건강 트렌드 리포트'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업무 지원 ▸청년인턴이 트렌드리포트 채널 개설해 직원-인턴간 소통하고 적응 돕는 창구 마련

자료: 국무조정실

❑ 이에 교육부는 청년의 일경험 확대 및 정책과정 경험 및 참여라는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을 본부 및 소속기관에 현재보다 증원하여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무부에서 검찰청을 청년인턴 채용에 포함시킨 것과 같이 교육부도 교육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청년인턴 채용기관에 교육청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2) 청년자문단 운영 및 청년인턴 운영 사업의 별도 세부사업 편성 필요

❑ 대학창업 활성화 사업은 본래 대학생들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학생창업팀 육성,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대학창업펀드 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2023년부터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이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포함되었음.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이를 위한 청년인턴 운영 사업도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가되었음.

❑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 청년인턴 운영 사업이 대학창업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청년 관련 국정과제에 청년 창업 기반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나, 두 사업이 국정운영과정에의 청년참여 확대, 사회진출청년 진로선택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학창업활성화와는 다소 관련성이 없어 보임.

❑ 특히 2023년에는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만 청년 관련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동 사업에 신규 편성되었으나, 2024년에는 대학창업 활성화

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청년인턴 운영 사업까지 동 사업에 추가되었는 바, 사업의 일관성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고려하여 두 사업을 청년정책역량강화사업(가칭)과 같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4) 한국장학재단 출연[90]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한국장학재단 출연(2608-300) 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대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학자금대출 관련 사업과 재단 고유사업비 및 재단운영비로 구성됨.

❑ 재단의 주요사업인 학자금대출 관련 사업은 ①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대납이자, ②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③일반상환학자금대출 군이자면제, ④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 ⑤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차보전, ⑥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으로 구성됨.

90) 문의: 02-6788-5193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액은 3,673억 8,200만원이고, 전액 집행하였음.

< 2024년도 한국장학재단 출연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비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한국장학재단출연	367,382	-	-	367,382	367,382	-	-	100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채권 대납이자	191,020	-	△5,391	185,629	185,629	-	-	100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18,863	-	△2,680	16,183	16,183	-	-	100
○ 일반상환학자금 군이자 면제	874	-	126	1,000	1,000	-	-	100
○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9,045	-	1,794	10,839	10,839	-	-	100
○ 일반상환학자금 이차보전	26,684	-	6,151	321,835	321,835	-	-	100
○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27,489	-	-	27,489	27,489	-	-	100
○ 고유사업비	42,118	-	-	42,118	42,118	-	-	100
○ 재단운영금	51,289	-	-	51,289	51,289	-	-	100

나) 검토의견: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91]) 이자면제 사업의 수요 추산 정확성 제고 필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사업(이하 “이자면제 사업”이라 함)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4년 7월 시행)에 따라 이자면제 사업의 지원범위와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102억 3,800만원 증액된 188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이자 면제 대상 확대 현황>

	기존대상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16조의2 (이자의 면제)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자(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제1항)	→	좌동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제2항제1호,제2호)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의 채무자(제3호) 다자녀 가구의 자녀(제4호)		
	-	→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제3항)
제16조의2 제4항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좌동
	제2호 ~ 제4호		
	-	→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제5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91) ICL(Income Contingent Loan)

❑ 그런데, 예산집행과정에서는 편성된 예산액에서 26억 8,000만원이 ICL 대납이자 사업으로 내역변경되어 실제로는 161억 8,300만원이 한국장학재단에 교부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실집행률은 출연된 금액을 기준으로 96.8%이나, 당초 편성예산액 대비로는 83.1%로 다른 내역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도 한국장학재단 출연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사업시행주체					
				교부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학자금대출	ICL	○ 대납이자	191,020	185,629	185,629	185,623	-	6	97.2
		○ 이자면제	18,863	16,183	16,183	15,668	-	515	83.1
	일반대출	○ 군이자면제	874	1,000	1,000	988	-	12	113.0
		○ 특별상환유예	9,045	10,839	10,839	10,747	-	92	118.8
		○ 이차보전	26,684	32,835	32,835	32,393	-	442	121.4
	○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27,489	27,489	27,489	27,489	-	-	100
○ 고유사업비			42,118	42,118	42,118	38,742	2,849	527	92.0
○ 재단운영비			51,289	51,289	50,828	50,166	282	179	99.1

자료: 교육부

* 예산액, 집행액은 자체수입 제외 기준

❑ 특히, ICL 이자면제 사업 내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법률 개정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가된 ‘중위소득 이하 채무자에 대한 이자면제 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상황으로, 예산액 82억 1,400만원 중 39억 9,700만원을 실제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48.7%임.

< 최근 3년간 이자면제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이자면제	8,091	4,684	57.9	8,625	5,903	68.4	18,863	15,668	83.1
- 군이자면제	1,869	1,203	64.3	1,665	1,050	63.1	992	806	81.3
- 기초차상위 이자면제	2,308	459	19.9	2,642	583	22.1	2,593	1,985	76.6
- 다자녀 이자면제	3,914	3,022	77.2	4,318	4,269	98.9	7,064	8,880	125.7
- 중위소득 이하 이자면제	-	-	-	-	-	-	8,214	3,997	48.7

자료: 한국장학재단

해당 사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되어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 조사가 부족하고, 사업 수요 등을 예측하기에는 사업이 시행된 기간이 짧아 정확한 예산 추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집행 실적이 당초 편성액의 절반 이하인 것은 사업의 수요 예측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바, 추계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2024년도 이자면제 사업예산 편성 근거 및 집행내역 >

구 분	편성 근거	집행내역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18,863백만원(①+②+③+④) ① 군이자면제: 992백만원 - 17,463명(대출자 중 군복무자)× 3.34백만원(대출 잔액)×1.70%(대출금리) ② 기초차상위 이자면제: 2,593백만원 - 재학중 이자면제 1,197백만원 (140,771백만원×1.7%×6/12) + 의무상환 개시 전 이자면제 1,397백만원 (164,305백만원×1.7%×6/12) ③ 다자녀 이자면제: 7,064백만원 - 재학중 이자면제 2,313백만원 (272,171백만원×1.7%×6/12) + 의무상환 개시 전 이자면제 4,750백만원(558,858백만원×1.7%×6/12) **④ 중위소득 이하 이자면제: 8,214백만원** - **966,320백만원** × 1.7%(대출금리)×6/12	16,183백만원(①+②+③+④) ① 군이자면제: 992백만원 - 17,463명(대출자 중 군복무자)× 3.34백만원(대출 잔액)×1.70%(대출금리) ② 기초차상위 이자면제: 1,991백만원 - 재학중 이자면제 474백만원 (55,765백만원×1.7%×6/12) + 의무상환 개시 전 이자면제 1,517백만원 (178,471백만원×1.7%×6/12) ③ 다자녀 이자면제: 9,064백만원 - 재학중 이자면제 3,198백만원 (376,235백만원×1.7%×6/12) + 의무상환 개시 전 이자면제 5,866백만원(690,118백만원×1.7%×6/12) **④ 중위소득 이하 이자면제: 4,136백만원** - **486,588백만원** × 1.7%(대출금리)×6/12

자료: 교육부

❑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당초 188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6억 8,000만원을 ICL 대납이자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업 홍보 미비 등의 이유로 2학기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예상보다 해당 사업의 실제 지원자가 적었으며,

이자면제를 위해 편성된 ICL 이자면제 사업 예산은 한국장학재단의 재단채 이자 납부에 사용된다는 목적성이 같아 ICL 대납이자 사업 예산에 포함되는 부분이므로 내역변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재단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채 발행에 따른 채권 이자를 상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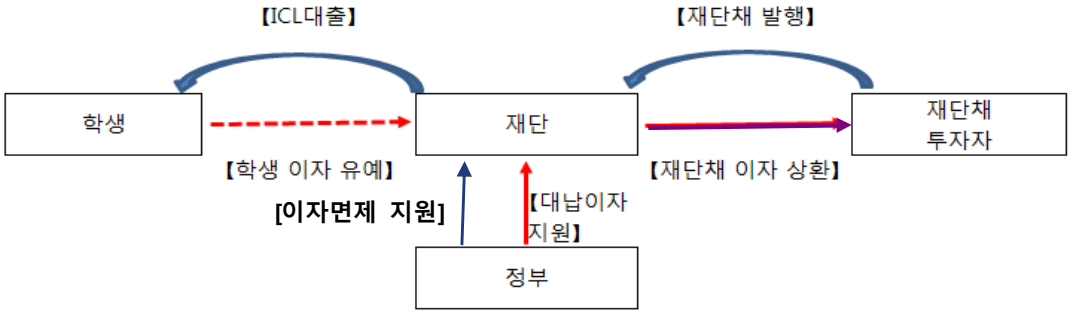

학자금 대출의 이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인 1.7%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이 재단채 이자를 상환할 경우 시중금리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납부분을 ICL대납이자 사업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자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이자면제액을 ICL 이자면제 사업 예산액으로 충당하고 있음.

<table>
<tr><th colspan="2">채권조달</th><th colspan="2">ICL</th><th colspan="2">일반상환</th></tr>
<tr><td colspan="2">채권발행</td><td colspan="4">채권만기 시 상환(학생 원금 상환액)</td></tr>
<tr><td rowspan="3">채권이자
3.0%
(예시)</td><td>금리 차 1.3%</td><td colspan="2">대납이자 예산 지원</td><td colspan="2">이차보전 예산으로 지원</td></tr>
<tr><td rowspan="2">학자금 대출
이자 1.7%
('25년기준)</td><td>대납이자
예산지원</td><td>이자면제
예산</td><td>학생 이자
상환액으로 납부</td><td>군이자면제
예산으로 지원</td></tr>
<tr><td>(이자면제
대상 아닌 경우)</td><td>(이자면제
대상인 경우)</td><td>(이자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td><td>(이자면제
대상인 경우)</td></tr>
</table>

다만, ICL 이자면제 예산은 이자면제 대상에 대한 대납이자 납부라는 점에서 ICL 대납이자 사업 예산에 포함되는 부분이나, 현재는 이자면제 사업 예산을 별도 내역으로 분리하여 대납이자에서 이자면제 사업 예산만큼 감액 표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이자면제 사업과 대납이자 사업이 재단채 이자 상환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내역사업 간 내역변경을 최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예산 편성 시 이자면제 사업 예산과 대납이자 사업 예산을 분리하여 별도의 내역으로 편성하고 있는 만큼 각각의 내역사업에 대한 수요 측정 또는 예산 편성시 세부산출 내역에 대한 추계방식을 개선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2024년도 학자금 지원구간 및 취업후 학자금 대출 잔액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계	복지자격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총 대출 잔액	**6,522,381**	858,604	1,083,054	975,367	751,717	664,959	374,949	597,361	419,787	460,627	172,207	163,747
(비율)	(100.0%)	(13.2%)	(16.6%)	(15.0%)	(11.5%)	(10.2%)	(5.7%)	(9.2%)	(6.4%)	(7.1%)	(2.6%)	(2.5%)
인원	**972,838**	139,355	155,265	148,734	115,241	96,536	55,652	86,430	64,134	69,618	20,828	21,045
(비율)	(100.0%)	(14.3%)	(16.0%)	(15.3%)	(11.8%)	(9.9%)	(5.7%)	(8.9%)	(6.6%)	(7.2%)	(2.1%)	(2.2%)
대상 잔액 92)	**490,446**	-	116,111	94,342	93,030	108,054	78,909	-	-	-	-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	1,718,974	2,864,957	4,010,939	5,156,922	5,729,913	7,448,887	8,594,870	11,459,826	17,189,739	9구간 기준액 초과
기준중위소득비율	(100.0%)	-	(30%)	(50%)	(70%)	(90%)	(100%)	(130%)	(150%)	(200%)	(300%)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자료: 한국장학재단

92) 중위소득 이하(1구간~5구간) 중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사람들의 대출 잔액

❑ 따라서 교육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기준이었던 중위소득 이하 대출잔액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집행실적, 2024년 중위소득 이하 사업 지원 대상자 현황 등 여러 기준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추계방식 등을 개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수요 조사를 면밀히 진행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이 사업 대상자들에게 적절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24년도 ICL 중위소득 이하 이자면제 사업 예산 산출 근거 >

구분	산출	산출 근거
대출잔액(A)	483,160만 원	□ **483,160백만원 = 966,320백만원 x 6/12** ㅇ 966,320백만원 = ('20년~'22년 3개년 평균 재학생 1~5구간 전체 대출 잔액 706,308백만 원 + '20년~'22년 3개년 평균 졸업 후 2년 1~5구간 전체 대출 잔액 375,894백만원) x 89.3%
대출금리(B)	1.70%	대출금리 1.7% 가정
소요예산(A×B)	8,214백만 원	

자료: 한국장학재단

5)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9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은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에서 출연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①“국가장학금 지원”, ②“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③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생 대상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④중소기업 취업과 창업 희망자 및 고졸 후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구성됨.

93) 문의: 02-6788-5193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액은 4조 7,204억 5,300만원이고, 예산액 대비 97.5%인 4조 6,004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1,200억원을 불용하였음.

❑ 불용사유에 대하여 교육부는 내역사업인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들의 학적 변동(휴학, 자퇴)으로 반환금이 발생하였고, Ⅱ유형 내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 신청률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내역사업인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18억 2,000만원이 다른 내역사업인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내역 변경되었는데, 이는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사업의 2024년 예산 축소에 따라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사업의 Ⅱ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해 변경된 것으로 보여짐.

< 2024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비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720,453	-	-	4,720,453	4,600,453	-	120,000	97.5
○ 국가장학금 지원	4,097,498	-	△1,820	4,095,678	3,975,678	-	120,000	97.1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469,125	-	-	469,125	469,125	-	-	100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57,626	-	-	57,626	57,626	-	-	100
○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94,184	-	1,820	96,004	96,004	-	-	100
○ 운영비(인건비)	2,020	-	-	2,020	2,020	-	-	100

나) 검토의견: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의 사업수요 확인과 추진 독려 필요

❑ 내역사업인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직업 체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년과 대비하여 내내역사업 모두 지원인원과 집행액이 증가하였는데, 지원인원은 전년대비 6.6%(139,978명→149,239명, 9,261명 증), 집행액은 16.7%(3,744억 4,500만원→4,036억 2,600만원, 577억원 증) 증가하였음.

반면, 집행률은 내내역사업 모두 전년대비 하락하였는데, 특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이 전년대비 가장 큰 폭인 16.8%p 하락하였으며,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은 지원인원이 늘어났음에도 집행률이 6.1%p 하락하였음.

< 최근 2년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지원실적 >

(단위: 백만원, 명, 2025.4.17.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지원 인원	지원금액			지원 인원	지원금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139,978	374,445	345,926	92.4%	149,239	467,387	403,626	86.4%
- 국가근로장학금	128,044	329,695	304,703	92.4%	135,535	404,287	348,910	86.3%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9,940	38,000	34,762	91.5%	10,862	47,500	42,401	89.3%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1,994	6,750	6,461	95.7%	2,842	15,600	12,315	78.9%

*근로장학사업 지원실적은 사업운영비가 제외된 수치임.
자료: 한국장학재단

❑ 먼저, 각 사업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은 2024년 예산액이 4,042억 8,700만원으로 2023년에 비해 22.6% 증가하였으나, 집행률은 6.1%p 감소하였음.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2024년도에 국가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하면서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전년대비 늘어났고[94], 교외근로 지원단가 인상(11,150→12,220원) 등으로 전체적인 사업예산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대학이 제출한 근로 사업수요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획 대비 9구간 지원 대상자의 근로장학금 지원이 저조하여 집행률이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94) 9구간 인원이 전년대비 488.3% 증가하여 국가근로장학금 지원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음.

<2024년 학자금지원구간별 지원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인원	금액	금액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12,014	32,912	9%
1구간	34,734	90,958	26%
2구간	15,722	41,135	12%
3구간	15,498	40,520	12%
4구간	13,678	34,977	10%
5구간	4,971	12,551	4%
6구간	12,903	32,754	9%
7구간	6,193	15,381	4%
8구간	11,331	28,236	8%
9구간	6,342	15,069	4%
기타*	2,149	4,416	1%
합계	135,535	348,910	100%

* 학자금 지원구간 예외대상자(긴급 경제적 위기 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는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미확정 실적으로 추후 변동 가능
자료: 교육부

❑ 그런데, 교육부는 지원대상 구간을 9구간 이하로 확대하면서 9구간 인원이 추가되었고, 교외근로 지원단가가 인상되어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4년 예산 편성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교외근로장학생은 65,000명을 선발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원단가는 1,070원이 상

승한 것을 고려하면 지원단가 인상으로 인한 예산은 약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에서 증액된 예산액 대부분이 확대된 구간의 근로장학금 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2024년 9구간 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은 6,342명, 소요된 지원액은 150억 6,900만원으로 증액된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편성근거>

사업명	편성 근거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469,125백만원 - 교외근로장학금 :256,559백만원(6.5만명×12,220원×323시간) - 교내근로장학금 :195,228백만원(7.5만명×(9,860원×80%)*×330시간) *(대학 대응투자) 교내근로 장학금의 20%는 대학이 대응투자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15,600백만원(4천명×15,000원×260시간) - 사업운영비 : 1,738백만원

자료: 교육부

❑ 참고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학의 근로수요를 산출하였고, 본예산을 총 6,274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83억 1,700만원 증액하였으나,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에서는 과거 집행 실적[95]과 2025년도 1학기 지원 실적 및 2학기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산한 근로수요가 계획 대비하여 감소(교내·외 근로장학생 20→16.1만명)할 것으로 예측되어 불용규모 최소화를 위하여 본예산 대비 1,000억원을 감액한 추경안을 제출한 바, 수요예측의 정확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	627,442	527,442
산출	- 교외근로장학금 : 260,968 : 6.5만명×12,430원×323시간 - 교내근로장학금 : 349,136 :13.5만명×(10,030원×80%)×323시간 ※ 20% 대학 대응투자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15,600 : 8.0천명×15,000원×130시간 - 사업운영비 : 1,738	- 교내·외 근로장학금 : 510,104 : 16.1만명×9,800원[96]×323시간 (추경감액 : 100,000) ※2025년도에 한해, 교내·외 근로장학금 구분 없이 사용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15,600 : 8.0천명×15,000원×130시간 - 사업운영비 : 1,738

자료: 교육부

95) '25년 총 사업 예산 6,274억 4,200만원의 70%인 4,379억 2,500만원을 상반기 3월에 교부하였음.
□ 최근 3개년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불용액(실집행률)
('21)500억원(86.4%) → ('22)838억원(79.9%) → ('23)286억원(92.4%)
※ 최근 3년 평균 541억원(86.2%)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근로장학금 시간당 지원 단가가 본예산에 비해 감소되었는데, 교육부에 따르면 이는 2025년 본예산 기준 교내·외 시간당 지원 단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값으로, 실제 지원 단가는 20255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임.

❑ 지원 대상자를 8 → 9구간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자 수의 변동으로 사업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예산안 편성 시 각 대학이 제출한 사업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학의 근로장학 사업 추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불용되는 예산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사업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 다음으로,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을 살펴보면 2015년 82,536명이던 다문화학생 수가 2023년 181,178명으로 약 2.2배 증가함에 따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67.5억원으로 편성된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예산이 2024년 156억원으로 2배 가량 증액하였으나, 2024년 실집행률이 2023년 실집행률인 95.7%보다 16.8%p 하락한 78.9%로 전년보다 저조한 것으로 보임.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명)

연도	전체	국제결혼(한국인-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중국동포·고려인·난민 등)
		국내출생	중도입국	
’24년	193,814	134,817	11,987	47,010
’23년	181,178	129,910	10,896	40,372
’22년	168,645	126,029	9,938	32,678
’21년	160,058	122,095	9,427	28,536
’20년	147,378	113,774	9,151	24,453
’19년	137,225	108,069	8,697	20,459
’18년	122,212	98,263	8,320	15,629
’17년	109,387	89,314	7,792	12,281
’16년	99,186	79,134	7,418	12,634
’15년	82,536	68,099	6,261	8,176

자료: 교육부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에 비해 2024년 멘토 및 멘티 인원을 4천명에서 8천명으로 2배 가량 증가시켰으며,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시급을 2,000원 가량 증액하여 산출하였음.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예산 세부 산출 내역>

`23년 예산	`24년 예산
6,750백만원	15,600백만원
4,000명 × 13,000원 × 130시간	8,000명 × 15,000원 ×130시간

자료: 교육부

❑ 다문화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다문화·탈북학생의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한국장학재단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참여 대학수 및 참여 멘토 및 멘티 수가 증가한 부분은 인정됨.

<도시/농어촌 지역 예산 대비 결산 현황(인원, 금액)>

(단위: 백만 원, 명)

연도	예산	결산	집행률	멘토 인원 ⓒ	멘티 인원	도시/농어촌 현황					
						도시			농어촌		
						멘토 인원 ⓐ	멘티 인원	금액	멘토 인원 ⓑ	멘티 인원	금액
’22	6,750	6,092	90.3%	2,041	2,671	1,607	1,993	4,387	523	678	1,705
’23	6,750	6,461	95.7%	1,994	2,697	1,493	1,908	4,417	603	789	2,044
’24	15,600	12,315	78.9%	2,842	3,931	2,082	2,652	8,016	969	1,279	4,299

※ 대학생(멘토) 1인이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중복 활동 가능함에 따라 ⓐ+ⓑ=ⓒ
※ 도시/농어촌 기준 : (농어촌) 읍·면 소재지인 경우, (도시) 읍·면 외 소재지인 경우
자료: 한국장학재단

다만, 동 사업은 멘토링 사업으로 멘토와 멘티의 1대1 매칭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멘티의 프로그램 참여 지원에 따라 멘토 인원이 결정되므로 적극적인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 멘티 대상자인 다문화·탈북학생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4년 결산을 기준으로 멘토 1인당 평균 활동시간이 286시간인 점을 고려하여, 세부 산출 내역의 멘토 활동 시간을 조정하는 등 예산 추산 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은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국장학재단은 2023년 대비 2024년 총 예산이 2.3배 증액되면서 2024년 집행률은 약 16.8%p 감소하였으나, 실 집행금액은 2023년보다 약 1.9배 높아졌고, 재단의 2024년 예산 증액에 대응하여 신규 참여대학, 멘토 및 참여기관을 적극적으로 모집[97]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설명함.

97) 참여대학 확대('23., 74개교 → '24., 114개교)
참여기관 확대(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멘토 43% 증가('23., 1,994명 → '24., 2,842명)
멘티 46% 증가('23., 2,697명 → '24., 3,931명)

6)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98]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4134-303) 사업은 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과 ② '매치업 운영' 사업으로 구성됨.

❑ ①'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99] 운영'은 대학·공공기관 등의 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대학의 교수·학습 혁신을 촉진하는 사업이고, ②'매치업(Match業) 운영'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구·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임.

98) 문의: 02-6788-5193

99)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인터넷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를 뜻하는데, 교수자의 강의 영상을 일방적으로 청강하는 것이 아니라, 퀴즈,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등 다양한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액은 194억 100만원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예산 전액을 출연·집행하였음.

< 2024년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19,401	-	19,401	19,401	-	-	100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	15,609	-	15,609	15,609	-	-	100
○ 매치업 운영	3,792	-	3,792	3,792	-	-	100

나) 검토의견: K-MOOC 사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홍보 활성화 및 강의 컨텐츠 선정 기준 개선

❑ 동 사업의 시행주체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로부터 2024년 예산액 전액인 194억 100만원을 교부받아 192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3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율은 99.4%임.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사업시행주체					
		교부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19,401	19,401	19,401	18,092	1,251	58	93.3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운영	15,609	15,609	15,609	14,358	1,251	-	92.0
○ 매치업 운영	3,792	3,792	3,792	3,734	-	58	98.5

* `24년 K-MOOC 운영 사업은 `25년 6월 종료됨.
자료: 교육부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이라 함)는 공공 주도하에서 적은 인력과 예산[100]으로도 마이클 센델, 유발 하라리, 제임스 카메론, 제임스 다이슨 등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각 분야의 석학 및 예술가, 활동가, 기업가, 노벨상 수상자 등을 강사로 구성한 프로

100)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예산은 2023년 244억 1,300만원에서 2024년 156억 900만원(전년 대비 △88억 400만원), 2025년도에는 128억 1,800만원(전년 대비 △27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면서 2년 연속 감액되었음.

그램인 ‘위대한 수업’과 같은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여 상시강좌로 등록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을 대중들에게 보급해왔고, 이외에도 학점인정, 직업훈련과의 연계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평생교육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2024년 12월 기준 K-MOOC의 평균 이수율은 40.4% 수준으로, 해외 코세라(Coursera)와 같은 MOOC 플랫폼의 등록자 대비 강의 이수율이 5~1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이수율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2024년 K-MOOC 강좌의 수강건수를 살펴보면 수강건수 최하위 강좌의 경우 수강건수가 4건에 불과하며, 수강건수 하위 10개 강좌의 수강건수 총합이 130건 정도로 저조함. K-MOOC 강좌를 하나 개설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최대 5,500만원[101] 규모임을 고려하면, 효율성이 저조한 강의가 일부 있음을 알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101)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종합감사」, p86

< 최근 4년간 K-MOOC 강좌 수강통계 >

(단위: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상위강좌	1	12,172	4,302	7,762	7,757
	2	3,787	2,391	4,649	3,428
	3	3,310	1,829	3,181	2,402
	4	3,152	1,757	2,205	2,135
	5	3,150	1,391	1,909	1,750
	6	3,136	1,366	1,748	1,738
	7	2,744	1,362	1,678	1,684
	8	2,661	1,360	1,503	1,558
	9	2,379	1,290	1,433	1,417
	10	2,221	1,133	1,367	1,385
	계	38,712	18,181	27,435	25,254
하위강좌	1	5	7	11	4
	2	46	23	13	6
	3	55	25	18	7
	4	55	33	20	9
	5	57	36	20	15
	6	68	42	28	18
	7	76	51	30	21
	8	79	51	31	22
	9	79	52	32	22
	10	84	52	32	23
	계	604	372	235	147

※ 선정 및 개발 당해연도의 강좌는 제외

※ 자율참여, 교양강좌, 해외교류, 외부연계 강좌는 제외

자료 : 교육부

- K-MOOC 회원 수 (2024년 기준, 약 158만명)와 방문 건수(2024년 기준 약 906만건)를 감안했을 때, K-MOOC 2024년도 수강 1위 강좌의 수강 건수는 7,757건이나, 수강 건수가 낮은 하위강좌들은 20건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K-MOOC 강의 중 수강 건수 하위 10개 강좌 중 가장 하위인 강좌의 수강건수는 4건으로 평균 수강 건수가 246건[102]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음.

< 최근 5년간 K-MOOC 방문 건수 및 회원 수 >

(단위: 건,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방문건수	5,592,448	6,280,329	5,900,504	7,028,432	9,060,183
회원수	739,140	961,858	1,161,498	1,360,144	1,576,247

자료 : 교육부

따라서, K-MOOC 강의가 대중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선보이고 있으나, 수강건수 하위강좌 10개의 수강건수가 각각 20건 내외로 나타나는 것은 현재 K-MOOC 강의의 컨텐츠 선정에 있어 수강자들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이므로 강의 컨텐츠 및 주제 선정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02) `24년 수강 신청 건수는 581,877건이며, `24년 누적 운영 강좌 수는 2,805개임. 다만, 종료강좌 등을 제외한 `24년 운영강좌 수는 2,366개임.

<연도별 K-MOOC 개발·운영 강좌 현황(누적)>

연도	20	21	22	23	24
강좌 수(개)	999	1,358	1,879	2,388	2,805

자료: 한국장학재단

❑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K-MOOC 강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K-MOOC 개별강좌 평가 지표에서 강좌 주제 선정과 관련하여 “강좌 개발의 필요성 및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K-MOOC 강좌 선정 평가는 강좌 개발기관이 제출한 ‘개별 강좌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때 강좌 개발기관이 수요 분석을 하여 강좌 주제 및 내용 등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수요 분석 결과 및 해당 강의의 필요성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K-MOOC 강좌 선정평가 절차>

구분	수행 기관
사업공고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참여 희망 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선정 결과 심의 및 승인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료: 교육부

<K-MOOC 개별강좌 평가 지표>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Ⅰ.기본여건 (20)	1. 사업 추진체계(10)	1.1. 기관의 K-MOOC 운영목표와 발전계획	2
		1.2. 운영조직 및 인력 구성 계획	4
		1.3. 예산 편성 및 확보	4
	2. 사업 관련 기관 역량(10)	2.1. 사업 관련 기관 실적	10
Ⅱ.강좌개발 (55)	3. 강좌 주제 선정(15)	3.1. 강좌 개발의 필요성 및 적합성	15
	4. 강좌 내용 및 구성 (30)	4.1. 강좌 내용	15
		4.2. 교수설계 및 상호작용 전략	10
		4.3. 평가 계획	5
	5. 교수자 선정(10)	5.1. 교수자 전문성	5
		5.2. 교수자의 강의역량	5
Ⅲ.강좌 운영 및 활용(25)	6. 강좌 운영(20)	6.1. 강좌 운영 계획	10
		6.2. 강좌 콘텐츠 품질관리 계획	5
		6.3. 강좌 홍보 계획	5
	7. 강좌 활용(5)	7.1. 강좌 활용 계획	5
합 계			100

자료: 교육부

❑ 그러나, 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강좌 수요 및 강좌 개발 필요성, 적합성 등은 사업 개발기관에 의하여 작성되며, 그 타당성 검증은 전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수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개별강좌 평가 지표의 세부 점수 및 항목을 조정하고, 선정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해당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또한, 개별 강좌 사업 계획서의 제출 증

빙 자료 항목을 조정 및 세부화하고 증빙 자료의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강좌 수요 예측 및 확보를 위해 K-MOOC 강의 콘텐츠 주제 및 강의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여 대중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개별 강좌 사업 계획서 양식 中 강좌 개발 필요성 >

3. 강좌 주제 선정(15점)

3.1. 강좌 개발의 필요성 및 적합성(15점)

3.1.1. 강좌 선정 기준 및 방법[1)]

□ 1수준

○ 2수준

3.1.2. 강좌 개발의 필요성 및 K-MOOC와 적합성[2)]

□ 1수준

○ 2수준

3.1.3. 주요 학습 타겟[3)]

□ 1수준

○ 2수준

[작성 방법]

○ 기존 K-MOOC 강좌와의 유사성 및 차별성을 고려하여 작성. 필요 시 별도 명기 가능

1) 자료에 근거하여 강좌 주제·내용 선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강좌 선정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쳤을 경우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작성

※ (예) 학습자 수요 조사, 기관 내 우수강좌, 학문적 중요도, 최신 동향,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중요성 등

2) K-MOOC를 통해 해당 강좌를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을 기술

- **분야지정강좌는 신청분야에 대한 적합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 (예) 사회적 요구, 최신동향, 사회/교육/경제적 파급효과 반영, 기존 K-MOOC 강좌와의 연계 등

3) 구체적인 학습 타겟을 강좌 내용과 연관 지어 기술

[제출 증빙자료]

○ 상기 제시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

- 학습자 수요조사 결과, 우수강좌에게 수여하는 상장, 강의 내용과 동일한 Youtube 영상 조회수, 산업 내 해당 과목 및 지식에 대한 수요 분석 자료, 최신 산업·기술과의 연계성 등

자료: 교육부

❑ 또한, K-MOOC 콘텐츠 홍보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K-MOOC 사이트 외에도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 공모전 당선자 인터뷰 등 K-MOOC 사업과 관련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임.[103]

그러나 K-MOOC의 각 온라인 플랫폼이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업로드된 총 콘텐츠 수 및 조회수 등을 살펴보면, 그 수치가 저조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이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K-MOOC의 유튜브를 살펴보면, 해당 플랫폼은 K-MOOC에 대한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가장 최근에 업로드 된 영상은 5월 전 영상('25 8월 기준)[104]이며, 최근 1년간 영상들의 조회수가 500회 미만인 바, 적절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K-MOOC의 온라인 플랫폼은 K-MOOC 강의를 클립 형태로 편집하여 강의 샘플을 제공하고 K-MOOC 사업의 개요를

103) K-MOOC 유튜브에서 3분 이내의 강좌 소개 영상(2025년 7월 기준, 157개, 조회수 4,116회)이 업로드 되어있으나, 1년전 영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156개 영상은 4년전에 업로드된 영상임.
104) 2025년 재직자 AI·디지털(AID) 집중과정 온라인 사업 설명회, 조회수 526회

설명하는 영상 등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회수가 저조하여 홍보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K-MOOC 온라인 플랫폼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과 접근성이 높은 숏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 제공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유튜브 영상 예시를 보면, 사업설명회와 같은 영상보다는 K-MOOC 활용 안내 영상의 조회수가 더 높으며 해외 Coursera의 경우에도 Coursera에 대한 홍보영상의 조회수가 약 900만회로 나타나므로,

K-MOOC 강의에 대해 소개하는 숏폼 영상, 혹은 대학 학점 인정 및 공공기관 교육 훈련으로 인정하는 등의 활용도에 대한 영상 등을 통해 홍보를 위한 영상 업로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하여 K-MOOC 유튜브를 단순한 사업설명회 영상 업로드 창구가 아닌 대중과 소통하는 핵심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시청자들이 쉽게 흥미를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이 보다 쉽게 K-MOOC 강의를 접하고 더 나아가 실제 수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K-MOOC 유튜브 영상 및 Coursera(美) 유튜브 영상 예시>

2025년 재직자 AI · 디지털(AID) 집중과정 온라인 사업 설명회

조회수 533회 • 5개월 전

2025년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매치업(Match業) 온라인 사업설명회

조회수 268회 • 5개월 전

K-MOOC 유튜브 최신 영상(사업설명회)

K-MOOC와 함께 세계로, K-MOOC 활용 안내

조회수 9.9만회 • 2년 전

K-MOOC 활용 안내 홍보 영상

Build In-Demand Job Skills on Coursera

조회수 927만회 • 3년 전

Coursera 홍보영상

< K-MOOC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현황 >

(2025년 6월 현재)

구분	K-MOOC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개설일	2015.10.	2015.9.22.	2017.1.4	2017.1.4	2015.8.18
회원 수	166.9만명	4,150	6,402	7,800	10,113
총 콘텐츠 수	2,807강	874건	515건	833건	401건
조회 수 ('25.1.1.~ 6.10.)	-	17,972건	2,082건	1,622건	9,678건

자료: 교육부

7) 국립대병원 지원[105]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병원 지원(2743-301) 사업은 국립대병원이 교육과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의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병원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이전·신축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국립대병원의 진료, 교육,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 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확충 및 보수사업,

- 첨단 의료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진료·연구·교육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구입 및 교체 사업,

-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실현과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으로 구성됨.

105) 문의: 02-6788-5188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1,113억 6,900만원으로, 이 중 1,079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34억 9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6.9%임.

< 2024년도 국립대병원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립대병원 지원	111,369	-	111,369	107,960	-	3,409	96.9
○ 시설확충 및 보수	56,262	-	56,262	56,133	-	129	99.7
○ 장비구입 및 교체	31,085	-	31,085	29,884	-	1,201	96.1
○ 정책사업	24,022	-	24,022	21,943	-	2,079	91.3

나) 검토의견

(1) 임상교육훈련센터 등 교육시설 사업 실집행 제고 필요

❑ 동 사업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병원의 임상교육훈련센터 설립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보건 및 의료계열 학생, 전공의를 포함한 지역 내 의료인력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는 시설로서 모의실습 중심의 임상 교육, 훈련[106]을 제공하는 시설임.

❑ 정부가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안)」('24. 9.)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병원의 교육,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할 예정임.

106) 웹기반 맞춤형 교육, 시뮬레이터 및 VR 활용 시뮬레이션 교육 등

<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

□ 국립대병원의 교육여건 확충

◦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 학생·전공의, 지역 보건의료인력 등에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 지원

* 센터 완공(예정) 시기 : (2021년) 제주대병원 → (2024년) 충남대병원 → (2026년) 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병원 → (2027년) 부산대·충북대병원 → (2028년) 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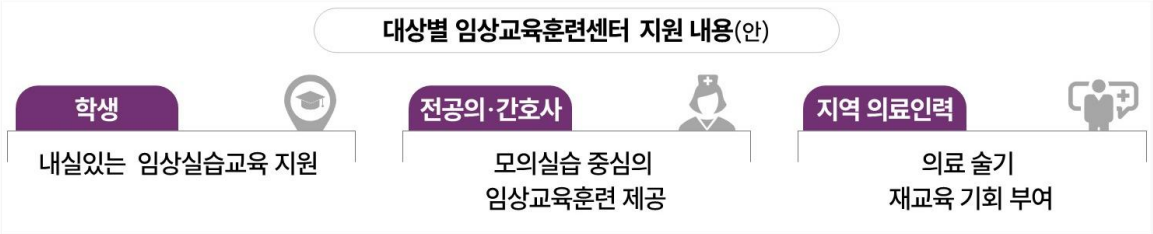

- 병원의 강점,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특화 교육훈련과정 운영

자료: 교육부

❑ 그러나 2024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병원의 실집행률은 16%에 불과하고, 특히 과반이 넘는 4개의 병원은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실집행률 0%).

< 2024년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대학병원별 실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 행률 (B/A)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4,556	4,556	4,556	-	4,556	1,113	3,443	24.4
칠곡경북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3,916	3,916	3,916	-	3,916	1,425	2,491	36.4
전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1,000	1,000	1,000	-	1,000	-	1,000	0

분당서울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3,600	3,600	3,600	-	3,600	292	3,308	8.1
전북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3,600	3,600	3,600	-	3,600	-	3,600	0
양산부산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500	500	500	-	500	-	500	0
충북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500	500	500	-	500	-	500	0
합계	17,672	17,672	17,672	0	17,672	2,830	14,842	16.0

자료: 교육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24년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 전부를 개별 병원에 전액 교부하였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출연사업에 대한 자금 교부시 사전에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해당 사업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배정된 예산을 개별 병원에게 전액 교부한 것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의 관리 및 책무성 확보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개별 병원의 요청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개별 병원들은 시설물 건축 설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국립대병원의 의사결정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함.

<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지연 사유 >

병원명	지연 사유
경북대병원	-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조정('24.8.)으로 설계 절차 추진에 시일 소요 - 설계 재개 후 지자체 건축 인허가 승인('24.10.) 및 시설공사 계약 진행(시공업체 계약('24.12), 건설사업관리 계약('25.1))에 따라 센터 건립 공사 진행 중
전남대병원	- 당초 센터 신축 계획이였으나, 병원 경영 효율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공간을 활용한 리모델링 추진으로 계획 변경 진행 중 * 본원 하부조직인 빛고을전남대병원의 병동을 축소하고 해당 공간을 임상교육훈련센터로 리모델링 하기 위한 사전 절차 진행 중(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비 복지부·광주시 등 협의 중)
서울대병원	- 사업 선정('23.4월) 및 문화재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심의 진행(~'23.9월) - 기본설계 추진('23.10.~'24.2.) 및 사업비·연면적 조정 등 총사업비 협의조정('24.3.) 절차 진행 -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24.4.) 및 실시설계 추진('24.4.) - 조달청 적정성 검토 요청(중간·실시설계 '24.11.~'25.7.)
전북대병원	- 사업 선정('23.4.), 총사업비 심의 자료 제출('23.9.) 및 총사업비 심의 완료('23.11.) 등 총사업비 관리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 - 병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부지 선정('24.1.) 및 내부공간기획('24.2.~.3.) - 내부계획 수립 및 보고·공공건축물 조성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24.7.)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물 조성 절차 진행('24.7.~'25.2.) - 기 선정 부지의 지반 불안정, 응급헬기 동선 부적합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 타당성 재검토 실시 후 신축 부지 변경 결정('25.1.) - 부지 변경에 따라 기존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수정('25.2.~3.)
양산부산대병원	- 총사업비 심의 완료('24.8) 및 건축기획 방식(민간업체 참여 여부) 결정을 위한 내부 검토 진행(~'25.1.) - 건축기획 실시(자체 수행, ~'25.2.) 및 기본설계 진행 중(~'25.9.)
충북대병원	- 총사업비 심의 완료('24.8월) 및 공공건축 사전검토 자료 작성('24.9~11) - 공공건축심의 완료('24.12월), 설계 공모 이후 설계 계약 중

자료: 교육부

❑ 향후 교육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

화하고, 사업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책정된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2)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의 사업성과를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

❑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제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에는 건립을 완공했으며, 2024년 기준 칠곡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이후 교육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 계획에 따르면, 강원대, 경상국립대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보임.

❑ 동 사업은 사업의 성과지표를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병원 선정 개수'로 설정하고 있으나, 해당 성과지표로는 사업의 본래 목적인 국립대병원의 교육 기능 강화 달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음.

< 2021~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병원 선정(개, 누적)	목표	2	4	6	8	매년 2개 국립대병원 선정	임상교육훈련센터 사업 수행 공모	임상교육훈련센터 선정평가 결과
	실적	2	4	6	8			
	달성도	100	100	100	100			

자료: 교육부

❑ 현재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임상교육훈련센터 사업 수행 공모를 통해 측정하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4년까지 총 8개의 임상교육훈

련센터 설치 병원을 선정하여 달성률을 100%로 보고하였음. 그러나 2024년 각 대학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은 대부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 즉,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과지표로 측정된 성과 달성도는 100%로 실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이에 교육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사업 평균 실집행률로 변경하는 등 사업의 실제 집행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책임교육정책실

<총 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107]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제1조), 그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108]로 구성됨(제3조)[109].

---

107) 문의: 02-6788-5185

108) 교육세입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

1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 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한 재정수요에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며(제3조 제1항), 이 중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 유형(국가시책, 지역현안수요, 재난안전관리)으로 세분하여 유형별로 각각 60%, 30%, 10%의 비율로 배분되나(제5조의2)[11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제5조의3 신설, '23. 12. 31.)을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은 내국세분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여, 상향비율(0.8%)에 해당하는 재원은 AI 교원연수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사업에 한정하여 사용됨[111][112].

1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교부 기준

<table>
<tr><th colspan="2">종류와 재원</th><th colspan="2">교부 기준</th></tr>
<tr><td colspan="2">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97% + 교육세 일부*)</td><td colspan="2">시·도교육청별로 총액을 교부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집행</td></tr>
<tr><td rowspan="3">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3%)</td><td>국가시책
(60%)</td><td>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td><td>·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 매년 1월 31일까지 교부하되, 필요시 교부시기 조정 가능</td></tr>
<tr><td>지역현안
(30%)</td><td>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발생할 때</td><td rowspan="2">·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수시)</td></tr>
<tr><td>재난안전관리
(10%)</td><td>재해의 발생 또는 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td></tr>
</table>

*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2023년 신설) 전출금 제외

자료: 교육부

1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23.12.31. 개정, 2024.1.1. 시행)**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교부 기준>

종류		교부기준	한시적(2024~2026)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97% + 교육세 일부***	**내국세의 20.79% 중 96.2% + 교육세 일부***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3%**	**내국세의 20.79% 중 3.8%**
	국가시책	3%의 60%	3%의 60% (180/380÷47.4%)
	지역현안수요	3%의 30%	3%의 30% (90/380÷23.7%)
	재난안전관리	3%의 10%	3%의 10% (30/380÷7.9%)
	디지털교육혁신	**<신설>**	**0.8%의 100% (80/380÷21.0%)**

*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17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2023년~) 전출금 제외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지방재정법」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3. 12. 31.]

[법률 제19938호(2023. 12. 31.)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112) 해당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3.8%로 상향했던 특별교부금 교부비율을 2026년부터 3%로 회복)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2025.2.20.)되어 전체회의 계류 중임.

(2) 결산개요

❑ 2024 회계연도 교부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68조 8,732억원 중 64조 6,208억원을 집행하고 4조 2,524억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3.8%임.

교부금 종류별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은 예산현액 66조 3,384억원 중 62조 2,249억원을 집행하고 4조 1,135억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이 93.8%였고, 특별교부금은 2조 5,347억원 중 2조 3,958억원을 집행하고 1,389억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이 94.5%임.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1조 2,008억원 중 1조 1,350억원을 집행하였고,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6,004억원 중 5,67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2,001억원 중 1,892억원을 집행하였고,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5,333억원 중 5,041억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873,209	-	68,873,209	64,620,773	-	4,252,436	93.8
보통교부금		66,338,469	-	66,338,469	62,224,931	-	4,113,538	93.8
특별교부금		2,534,740	-	2,534,740	2,395,842	-	138,898	94.5
	국가시책	1,200,852	-	1,200,852	1,135,058	-	65,794	94.5
	지역현안	600,426	-	600,426	567,529	-	32,897	94.5
	재난안전관리	200,142	-	200,142	189,177	-	10,965	94.5
	디지털교육혁신	533,320	-	533,320	504,078	-	29,242	94.5

(자료: 교육부)

❑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도교육청 교부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 15조 5,271억원(24.0%), 서울시교육청 5조 7,798억원(8.9%) 등의 순임.

< 2024년도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

시·도 교육청	보통 교부금	특별교부금				합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디지털교육혁신		비중
서울	5,547,348	109,379	35,549	6,959	80,588	5,779,823	8.9%
부산	3,454,470	58,843	62,173	65,934	28,488	3,669,908	5.7%
대구	2,878,055	62,819	40,956	-	24,431	3,006,261	4.7%
인천	3,146,332	68,191	31,458	6,029	22,299	3,274,309	5.1%
광주	1,852,644	38,585	16,637	9,134	16,850	1,933,850	3.0%
대전	1,812,412	40,609	26,179	4,706	18,814	1,902,720	2.9%
울산	1,542,371	36,227	9,354	779	13,879	1,602,610	2.5%
세종	766,032	25,302	119	-	7,112	798,565	1.2%
경기	15,098,615	222,819	86,728	18,345	100,581	15,527,088	24.0%
강원	2,888,786	42,053	37,712	7,153	18,739	2,994,443	4.6%
충북	2,606,728	59,033	16,145	3,109	23,168	2,708,183	4.2%
충남	3,576,685	74,129	31,961	12,738	24,381	3,719,894	5.8%
전북	3,309,096	55,432	40,736	10,939	25,740	3,441,943	5.3%
전남	3,597,267	63,732	22,537	17,537	29,326	3,730,399	5.8%
경북	4,226,643	81,793	56,617	6,108	27,314	4,398,475	6.8%
경남	4,944,515	66,969	36,544	19,707	32,089	5,099,824	7.9%
제주	976,931	29,141	16,123	-	10,280	1,032,475	1.6%
합계	62,224,931	1,135,058	567,529	189,177	504,078	64,620,773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 처리의 절차상 문제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13]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도록 정하면서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제9조제2항), 예결산상 차액(세계잉여금[114])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제9조제3항).

❑ 이처럼 원칙적으로 세입경정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교부금 규모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세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2년간 교부금 조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세수결손에 따른 국세의 감액 추경이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

---

11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14)「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지방교부세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하려는 취지임[115].

❑ 최근 10년간(2016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 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교부금이 증감된 경우는 총 7회(2020년 2회)이고, 감액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조 1,144억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 9,982억원이 각각 감액된 바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증감액 및 정산내역>

(2025.7.11.기준, 단위: 억원, %)

회계연도	본예산	추경 증감액	세계잉여금 정산분	불용액	최종 교부액	증가율
2016	412,284	19,331	-	-	431,615	9.5
2017	429,317	17,868	18,724	-	465,910	7.9
2018	495,407	-	29,121	-	524,528	12.6
2019	552,488	-	52,817	-	605,305	15.4
2020	553,722	2,534 △21,144	319	-	535,431	△11.5
2021	532,300	63,658	7,413	-	603,371	12.7
2022	650,595	109,854	52,526	-	812,976	34.7
2023	757,607	-	-	△103,970	653,637	△19.6
2024	688,732	-	364	△42,524	646,572	△1.1
2025	722,794	△19,982	-	-	702,812	8.7%

(자료: 교육부)

1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제14157호, 2016. 5. 29. 개정ㆍ시행)

<개정이유> 교육교부금과 유사한 제도인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법률 제12151호, 2014.1.1)이 개정된 바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개정되지 않았음.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국세 감액 추경에 의해 교육교부금이 감액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지방교부세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교육교부금도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교육교부금 감액 경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그런데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경우 내국세입이 예산 대비 수납 실적이 적게 나타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는데, 추가경정 예산에 따라 감액 조정하거나 차차년도에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연도 예산상 교부금을 연도 중 미교부하여 불용으로 처리 하였음.

❑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금의 불용 처리는 2023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한 현상으로 2023년도 10.4조원(예산액 대비 13.7%), 2024년도 4.3조원(예산액 대비 6.2%)을 각각 불용 처리하였음.

< 2023 ·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 처리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율 (B/A)
2023년도	75,760,666	-	75,760,666	65,363,666	-	10,397,000	13.7
2024년도	68,873,209	-	68,873,209	64,620,773	-	4,252,436	6.2

(자료: 교육부)

❑ 정부는 불용 처리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제43조제5항)[116]에 따른 예산배정 유보 및 집행 보류권에 근거한 조치라는 설명임. 그러나 법정 의무지출[117]인 교부금은 초중등교육을 위한 필요 재원으로서

116)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 동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입경정 조차 없이 연도 중에 불용 처리한 것은 국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금 정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시 교육부는 향후 세수 결손 등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여 당해연도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으나[118][119], 이

117)「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③ 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118)「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19) 해당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로 교육부는 '24년 세수결손 발생시 기획재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 최소화 등 협조요청(교육부장관명의 공문 발송)으로 조치완료하였다는 설명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5.5)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세수결손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적절한 불용처리 시정 필요	[지적사항]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 75조 7,606억원 중 10조 3,970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불용 처리되었음 [시정요구사항] 교육부는 향후 세수결손 등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여 당해연도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	시정	'24년 세수결손 발생시 기획재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 최소화 등 협조요청(교육부장관명의 공문 발송)	조치완료

와 같은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이어 2024년에도 법률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또는 정산규정에 따르지 않고 연도 중 미교부·불용 처리하여 부적절한 선례를 반복하였음.

❑ 향후 교육부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감액하거나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하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취지에 반하여 교부금을 미교부·불용 처리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대응계획 마련 필요

❑ 지방교육재정은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해 운영되는데,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8조)[120]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회계로서 교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제159조)[121]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22]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음.

< 2024년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가결산 >

구분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자체 이전 수입	자체 수입	내부 거래	기타	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증액 교부금*	국고 보조금	특별회계 전입금**					
금액(억원)	646,572	9,439	5,224	32,106	155,173	9,519	68,345	82,804	1,009,183
비중(%)	64.1%	0.9%	0.5%	3.2%	15.4%	0.9%	6.8%	8.2%	100.0%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입금
(자료: 교육부)

1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121)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2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재방교육재정에서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2024년 기준 약 65%) 교부금이 감액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는데, 최근 3년 연속(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결손 발생으로 연도 중 교부금이 감액 조정되었는바 지방교육재정 불안정성이 우려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도 중 감액내역>

(2025.7.11.기준, 단위: 억원, %)

회계연도	본예산	추경 증감액	세계잉여금 정산분	불용액	최종 교부액	증가율
2023	757,607	-	-	△103,970	653,637	△19.6
2024	688,732	-	364	△42,524	646,572	△1.1
2025	722,794	△19,982	-	-	702,812	8.7%

(자료: 교육부)

❑ 세수결손으로 교부금 10.4조원, 4.3조원을 연도 중 각각 불용처리하였던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경우, 시·도교육청은 보유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123]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124])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등 교부금 감액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남.

12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2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023 · 2024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감소에 따른 대응 >

(단위: 억원)

회계연도	세입감소		시·도교육청 대응						
	보통교부금 감액	기타 (지자체 전출금 등)	기금 활용		기금 전출금	지출 구조조정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시설비	인건비	예비비	기타
2023	△104,141	△1,965	19,449	6,736	△50,613	△14,341	△5,000	△3,000	△6,743
2024	△44,567	5,707	6,843	888	△8,107	△10,679	△4,152	△3,342	△4,850

※ 기재부 재추계 발표 이후 시 ·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서 증감액 기준

(자료: 교육부)

구체적으로 2024년도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843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888억원을 활용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8,10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1조 679억원 등 약 2조 3천억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였음.

< 2024년 교부금 불용처리에 따른 시 · 도교육청별 대응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세입감소*		시·도교육청 대응						
	보통교부금 감액**	기타 (지자체 전출금 등)	기금 활용		기금 전출금	지출 구조조정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시설비	인건비	예비비	기타
서울	△3,667	△2,000	-	-	△2,120	△1,790	△689	△235	△833
부산	△739	1,010	794	-	-	692	-	-	372
대구	△2,398	399	-	1,600	-	△174	1	△234	7
인천	△2,080	122	1,000	-	-	△506	219	△255	△416
광주	△1,544	324	270	-	-	△712	77	△144	△171
대전	△1,188	385	500	-	-	△216	△14	△111	38
울산	△1,230	261	353	-	-	△396	△115	△108	3

구분	세입감소*		시·도교육청 대응						
	보통 교부금 감액**	기타 (지자체 전출금 등)	기금 활용		기금 전출금	지출 구조조정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시설비	인건비	예비비	기타
세종	△638	107	244	-	-	△117	△106	△54	△10
경기	△12,582	65	998	-	△7,194	△417	△1,333	△475	△2,100
강원	△1,910	1,069	-	△902	1,353	△1,689	△556	△410	△441
충북	△2,172	92	1,206	-	-	△391	△5	△171	△306
충남	△2,345	522	△222	-	-	△1,462	△339	△102	△142
전북	△2,188	455	630	-	-	△141	△267	△410	△284
전남	△2,378	323	-	-	42	△1,051	△141	△136	△770
경북	△2,769	857	-	300	-	△656	△779	△329	152
경남	△4,093	1,289	1,070	-	-	△1,568	△105	△150	89
제주	△646	429	-	△110	△188	△85	-	△17	△38
계	△44,567	5,707	6,843	888	△8,107	△10,679	△4,152	△3,342	△4,850

* 기재부 재추계 발표 이후 시 ·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서 증감액 기준
(자료: 교육부)

❑ 2025년도의 경우에는 세수결손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으로 교부금 약 2조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바 시도교육청은 전년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재정부족분에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기금보유액 및 예비비 활용, 지출 구조조정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할 전망이라는 의견임.

❑ 그런데 시·도교육청별로 재정여건에 차이가 있어 대응 여력이 부족한 교육청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시·도교육청의 주요 가용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시·도 조례로 사용요건과 연내 사용 한도를 정하고 있어(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50~90%)[125] 시·도교육청별로 적립금 활용 여건에 차이가 있고, 기금보유액만으로 해당 연도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임.

<2025년 추가경정(감액)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추계액 및 기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보통교부금 본예산 확정 교부액*	보통교부금 추가경정 감액	참고. 2025년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계	**696,596**	**△19,273**	35,362	30,130
서울	62,413	△1,727	3,828	8,672
부산	38,439	△1,064	4,281	3,874
대구	31,161	△862	1,981	2,464
인천	38,665	△1,070	1,418	128
광주	20,848	△577	1,293	154
대전	20,941	△579	1,224	254
울산	17,258	△477	214	692
세종	9,060	△251	1,125	273

125)「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시·도교육청별 재정안정화계정 사용한도(2025.7.11. 현재)>
※ 사용한도: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0%	50%	70%	70%	80%	85%	70%	70%	70%	70%	50%	90%	70%	80%	70%	80%	50%

(자료: 교육부)

구분	보통교부금 본예산 확정 교부액*	보통교부금 추가경정 감액	참고. 2025년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경기	170,521	△4,718	3,620	532
강원	31,333	△867	4,996	5,740
충북	28,196	△780	2,763	571
충남	39,699	△1,098	814	32
전북	36,144	△1,000	2,565	1,525
전남	39,243	△1,086	990	648
경북	46,598	△1,289	2,954	3,301
경남	55,139	△1,526	1,273	1,019
제주	10,937	△303	22	250

* 특별교부금은 회계연도 중 사업 부서 및 교육청 신청 등으로 조정되어 연도말 교육청별 금액 확정
** 추후, 시·도교육청 추경 등으로 변동 가능성 有
(자료: 교육부)

❑ 이와 같은 지방교육재정 불안전성은 교육현장의 재정 불안을 가중시켜 교육환경 개선과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교육부는 교육청과 면밀한 협조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계획적으로 대응하여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세수입의 장기적 추이와 지방교육재정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과 예산 및 기금별 재정 운용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일반회계>

1)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26]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502-302)은 「지방재정법」 제58조[127]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하는 것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 제2항제1호[128]), 전체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내 사업별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국가시책사업에 대하여 국가시책사업심의회[129]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 예산을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함[130].

---

126) 문의: 02-6788-5185

127)「지방재정법」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28)「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129)「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3(2014.7.31.신설)에 따라 '국가시책특별교부금심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시행규칙 개정(2024. 11.13, 제4조의3 삭제 및, 제9조 신설)으로 '국가시책특별교부금심의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심의사항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외에 보통교부금 산정·교부·이의신청 등을 포함함. 2025년 제1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발족(2025.2.)

(2) 결산개요

❑ 2024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예산현액 1조 2,008억 5,200만원 중 1조 1,350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657억 9,4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4.5%임.

< 2024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특별교부금	2,534,740	-	2,534,740	2,395,842	-	138,898	94.5
국가시책	1,200,852	-	1,200,852	1,135,058	-	65,794	94.5

(자료: 교육부)

1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2024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p.10)

나) 검토의견 : 국가시책사업 대상 사업 정비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131]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유아, 초·중등교육 및 특수 교육 관련 국가시책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교부대상으로 ①국가책임 교육·돌봄, ②디지털 교육혁신, ③공교육 경쟁력 제고, ④교육복지 지원, ⑤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⑥진로·직업교육, ⑦행·재정지원 등 7개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4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7개 정책사업, 30개 단위사업 내 127개 세부사업에 교부하였음.

❑ 2024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가책임 교육·돌봄 사업 5,053억원(42.4%), 디지털 교육혁신 사업 1,979억원(16.6%), 공교육 경쟁력 제고 사업 1,922억원(16.1%), 교육복지 지원 658억원(5.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 882억원(7.4%), 진로·직업교육 사업 1,131억원(9.5%), 행·재정지원 사업 288억원(2.4%) 등을 교부하였음.

---

1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의3(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2024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

정책사업	단위사업	교부액
1. 국가책임 교육·돌봄	[1-01] 유보통합	27,096
	[1-02] 유아교육	41,604
	[1-03] 늘봄학교	205,384
	[1-04] 기초학력보장	200,800
	[1-05] 특수교육	30,449
	소 계	505,333
2. 디지털 교육혁신	[2-06] 디지털 역량 제고	22,158
	[2-07] 디지털 기반 구축	155,432
	[2-08] 디지털 교과서 개발	20,326
	소 계	197,916
3. 공교육 경쟁력 제고	[3-09] 교육과정	34,007
	[3-10] 교과교육지원	8,958
	[3-11] 미래교육 체제구축	36,004
	[3-12] 교수학습 자료개발	6,643
	[3-13] 예술·체육교육	61,391
	[3-14] 창의융합교육	7,303
	[3-15] 글로벌교육지원	9,333
	[3-16] 교육전념 여건조성	16,796
	[3-17] 교원역량강화	4,496
	[3-18] 학부모교육	7,287
	소 계	192,218
4. 교육복지 지원	[4-19] 이주배경 학생지원	28,666
	[4-20] 학생성장 통합지원	37,140
	소 계	65,806
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5-21] 학생안전	4,869
	[5-22] 학생건강	26,525
	[5-23] 학폭대응	54,883
	[5-24] 양성평등	1,950
	소 계	88,227
6. 진로·직업교육	[6-25] 직업교육	56,253
	[6-26] 진로교육	8,038
	[6-27] 진학지원	48,816
	소 계	113,107
7. 행·재정지원	[7-28] 과학행정체계 구축	5,437
	[7-29] 교육정보화 지원	2,943
	[7-30] 행재정 운영지원	20,399
	소 계	28,779
합계		1,191,387
집행잔액 감교부		△56,329

자료: 교육부, 2024~2025년도 특별교부금 교부 보고(2025.3.)

❑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르면, 국가시책사업의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내로 하되, 동일 사업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및 연장평가와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132].

또한, 성과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133][134].

❑ 그러나 최근 5년간 국가시책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사업이 3년을 초과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연속 초과사업(건수)의 비율 및 교부액은 전체

---

132) 「2024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p.11
1. 국가시책사업수요
바. 운용방법
○ 국가시책사업의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내로 하되, 동일 사업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및 연장평가와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1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의2(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34)「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173호)
제12조(평가결과의 활용)① 교육부장관은 다음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국가시책사업별 예산 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부서는 평가결과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사업별 평가결과에 대한 반영 및 활용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최하위 등급 평가 사업을 다음연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대책 등을 포함해야 하며, **개선대책 등이 미흡하거나 연속적으로 최하위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교부금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2024년 기준 10년 이상 장기 연속지원 중인 사업은 31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국가시책사업의 3년 사업기간 제한 원칙 및 성과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3년 이상 연속 지원사업 현황(2020~2024년) >

구분	사업수(건)			교부액(백만원)		
	전체	3년 이상	비율(%)	전체	3년 이상	비율(%)
2020	99	57	57.58	925,185	589,056	63.67
2021	98	52	53.06	1,086,802	600,837	55.28
2022	85	58	68.24	1,458,899	736,139	50.46
2023	82	55	67.07	1,336,333	1,001,314	74.93
2024[135]	127	76	59.84	1,191,387	615,100	51.63

(자료: 교육부)

< 10년 이상 연속 지원사업 내역(2024년 기준) >

연번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 시작연도
1	[1-03] 늘봄학교	늘봄학교 운영 체제 구축	2010
2	[1-04] 기초학력보장	기초학력 보장 지원	2006
3	[1-04] 기초학력보장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2006
4	[3-11] 미래교육 체제구축	EBS 교육방송 지원	2004
5	[3-12] 교수학습 자료개발	학습자 중심 현장 맞춤형 교과서 개발 지원	2008
6	[3-12] 교수학습 자료개발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	2012
7	[3-12] 교수학습 자료개발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	2014
8	[3-13] 체육 · 예술교육	예술활동 일상화	2007

135) 2023년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체계를 세부사업 기준에서(2023년 82개) 30개 단위사업으로 개편하면서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의 기준이 모호해짐에 따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의 개수가 크게 증가함.

연번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 시작연도
9	[3-14] 창의융합교육	인성 · 시민역량 함양	2012
10	[3-15] 글로벌교육지원	어린이동화 교류대회	2011
11	[3-16] 교육전념 여건조성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2013
12	[3-18] 학부모교육	학부모 지원 기반 강화	2009
13	[3-18] 학부모교육	학부모 소통 강화	2009
14	[4-19]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이주배경학생, 탈북학생 교육 지원)	2006
15	[4-20] 학생성장 통합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2014
16	[4-20] 학생성장 통합지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2014
17	[5-23] 학폭대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지원	2012
18	[5-23] 학폭대응	학교폭력 신고·사안처리 및 화해·분쟁 조정 지원	2011
19	[5-23] 학폭대응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2013
20	[5-23] 학폭대응	학생 상담 내실화	2011
21	[6-25] 직업교육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내실화	2014
22	[6-26] 진로교육	진로교육정보망 통합운영 및 고도화	2012
23	[6-27] 진학지원	수능시험 시행지원	2003
24	[6-27] 진학지원	수능모의평가 시행지원	2003
25	[6-27] 진학지원	대입전형 지원시스템	2009
26	[6-27] 진학지원	대입상담센터	2009
27	[6-27] 진학지원	고교대상 직업교육 진로진학 지원	2009
28	[7-28] 과학행정체계 구축	나이스 교육통계시스템 조사	2013
29	[7-30] 행 · 재정운영지원	시 · 도교육청 평가	2009
30	[7-30] 행 · 재정운영지원	지방교육재정 분석 지원	2010
31	[7-30] 행 · 재정운영지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설립·운영 지원	2011

(자료: 교육부)

❑ 특히 장기 시행 중인 '수능시험 시행지원' 등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교육부장관의 사무로서 국가시책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10년 이상 국가시책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어 3년 제한 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음.

< 교육부장관 법정 사무(예시) >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136]	사업 시작연도	근거
[6-27] 진학지원	수능시험 시행지원 ◦수능 및 모의평가 시행 ◦수능 및 모의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문항 출제 및 문제지 배부, 성적 산출 및 성적통지표 배부	2003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137]
[7-28] 과학행정체계 구축	나이스 교육통계시스템 조사 ◦유·초·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교육청 등) 통계자료의 효율적 수집·분석 등을 위한 나이스 교육통계 상·하반기 시스템 개선·유지관리	2013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138]
[7-30] 행·재정운영 지원	시·도교육청 평가 ◦국정과제·국가시책사업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지표(20개)별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통과여부(P/F)점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성과 공유 및 확산 ◦시·도교육청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교육공동체(학생·학부모·교원)만족도 조사 실시	2009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139]

136) 교육부의 <2024~2025년도 특별교부금 교부 보고(2025.3.) 참조하여 작성

❑ 이처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목적, 특성 및 추진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관행적 반복은 국정과제로 추진하여야 할 신규 교육정책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불가피하게 동일 사업을 3년 이상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 유지의 필요성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성과·연장평가 등 성과관리, 교육청 대응투자비율 확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도 자체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 향후 교육부는 장기간 지속추진하고 사업에 대하여 지속・반복적 지원의 필요성,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목적 및 특성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국고 지원 또는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등 국가시책사업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137)「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138)「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교원、직원、학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39)「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2) 지역현안 특별교부금[140]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1502-300)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것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제2항제2호[141]), 전체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감의 신청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시급성, 지역간 형평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함.[142]

---

140) 문의: 02-6788-5185

14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1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별표 1] 및 2024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p.17)

(2) 결산개요

❑ 2024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예산현액 6,004억 2,600만원 중 5,675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328억 9,7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4.5%임.

< 2024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특별교부금	2,534,740	-	2,534,740	2,395,842	-	138,898	94.5
지역현안	600,426	-	600,426	567,529	-	32,897	94.5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 적절성 검토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143]에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대상으로 ①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②학교 교육시설 개선 사업, ③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의 시설 관련 사업, ④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교육 사업, ⑤기타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대상 >

구분	사업 내용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강당・체육관(다목적교실을 포함한다), 수영장, 도서관, 특별교실, 급식실 및 기숙사 등의 신・증축 지원
학교 교육시설 개선 사업	체육관 보수, 수영장 보수, 바닥 및 천장 교체, 출입문 및 복도중창 교체, 외벽보수, 내・외부 도장, 옥상 방수, 포장, 담장, 옹벽 보수, 운동장 정비 등의 지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의 시설 관련 사업	연수원, 수련원, 정보원 및 과학교육원 등의 시설 신축・증축 및 개선 지원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교육 사업	시·도교육감이 지역·학교별 특색을 반영하여 제안한 지역 특색 교육프로그램 사업
기타 지역교육현안사업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14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의3(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교육부는 2024년부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교육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2023.12.6.)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인재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등 교육 전 단계에 걸쳐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 교육발전특구 선순환 체계(안) >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목표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역 주도 교육개혁 지원 •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	• 지역인재 유출 방지
	↓	↓	↓
추진 방향	•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 • 유보통합 시범운영	• 공교육 경쟁력 제고 • 디지털기반 수업 혁신	• 고교-대학-지역 연계 강화 • 지역 인재 선발·양성
	↓	↓	↓
성과 지표	• 출산율 상승	• 학업성취도 상승 • 사교육비 감소	•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

(자료 : 교육부)

또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타 특구와 연계를 강화하며, 교육개혁과제(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

전환 등)를 우선 지원하면서, 지역별로 특례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144].

❑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및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3개 유형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2월 1차로 31개 특구, 7월 2차로 25개 특구를 지정하여 총 56개 교육발전특구에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음.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운영 현황 >

유형	신청 단위	1차('24. 2월)	2차('24. 7월)	합계
1	기초 지자체	20건 (21개 기초지자체)	21건 (21개 기초 지자체)	41건 (42개 기초 지자체)
		(인천) 강화 (경기) 고양, 양주, 동두천 (강원) 춘천, 화천, 원주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충남) 서산 (경북)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전남) 광양	(경기)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충북) 보은 (충남) 공주, 금산 (전남) 순천 (경북)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경남) 남해	

144) 교육부는 시범사업(3년, 2024-2026) 이후 본격적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교육발전특구는 각종 법적 규제의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별 맞춤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혁신 및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이와 관련 하여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2건의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민전 의원대표발의, 2206874)(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205895)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유형	신청 단위	1차('24. 2월)	2차('24. 7월)	합계
2	광역 지자체	6건 (6개 광역 지자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1건 (1개 광역 지자체) 세종	7건 (7개 광역지자체)
3	광역지자체 지정 기초지자체	5건 (5개 광역, 22개 기초지자체) 충남 (아산) 경북 (안동-예천) 경남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3건 (3개 광역, 19개 기초지자체) 경남(의령, 창녕, 거창, 함양) 전북(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8건 (8개 광역, 41개 기초지자체)
합계		31건	25건	56건

(자료 : 교육부)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일반적으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은 강당·체육관 등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체육관 보수·바닥 및 천장 교체 등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 관련 사업 등임.

그런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지역교육 혁신 및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교육과정(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전환 등) 프로그램운영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고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유사한 내용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과 시범지역 지정기준 및 추진일정 등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이 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격, 내용 및 사업 추진체계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사업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교육사업'에 대해 교육감이 신천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하므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목적에 부합하다는 의견임.

<국가시책 특교사업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비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145]
[1-01] 유보통합 유보통합시범운영	유보통합모델 시범운영 지역기반 유보통합
[1-03] 늘봄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거점형 늘봄센터 확산	지역특색 늘봄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사회 연계 늘봄체계 운영
[2-06] 디지털 역량 제고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지원	디지털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지역맞춤형 디지털 인재 양성 AI디지털 융합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
[3-11] 미래교육 체제구축 IB 프로그램 도입 · 확산 지원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 지원	IB프로그램 운영 자율형 공립고 2.0 전환 운영
[6-25] 직업교육 마이스터고 역량 강화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 · 운영	마이스터고 지정 · 운영 협약형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지원

❑ 한편, 최근 5년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대상별 교부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전체 교부액의 92%~ 96%를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사업'에 교부하여 왔음.

그런데 2024년도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사업' 교부액 비율은 54.1%로 줄어들고, '지역별 ·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교육 사업' 교부액 비율은 전년 2.5%에서 36.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교부한 데에 따른 것임.

145) 교육부가 제출한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교육발전특구) 집행내역'의 사업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임.

<최근 5년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대상별 교부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도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학교 교육시설 개선 사업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의 시설 관련 사업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교육 사업		그 밖에 지역교육현안 사업	
	사업수 (비율%)	교부액 (비율%)	사업수 (비율%)	교부액 (비율%)	사업수 (비율%)	교부액 (비율%)	사업수 (비율%)	교부액 (비율%)	사업수 (비율%)	교부액 (비율%)
20	260 (36.67%)	239,953 (51.02%)	430 (60.65%)	203,086 (43.18%)	11 (1.55%)	21,734 (4.62%)	6 (0.85%)	4,065 (0.86%)	2 (0.28%)	1,440 (0.31%)
21	226 (27.83%)	229,947 (42.30%)	565 (69.58%)	292,420 (53.80%)	16 (1.97%)	17,275 (3.18%)	5 (0.62%)	3,934 (0.72%)	- (0.00%)	- (0.00%)
22	229 (21.09%)	243,976 (32.76%)	832 (76.61%)	465,586 62.51%)	18 (1.66%)	29,331 (3.94%)	5 (0.46%)	3,933 (0.53%)	2 (0.18%)	1,992 (0.27%)
23	161 (19.21%)	168,150 (34.84%)	649 (77.45%)	275,659 (57.12%)	15 (1.79%)	26,307 (5.45%)	12 (1.43%)	12,104 (2.51%)	1 (0.12%)	367 (0.08%)
24	100 (16.89%)	112,876 (18.95%)	448 (75.68%)	209,865 (35.23%)	25 (4.22%)	50,467 (8.47%)	17 (2.87%)	218,447 (36.67%)	2 (0.34%)	4,066 (0.68%)

(자료 : 교육부)

❑ 구체적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대상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부산 305억원, 경북 297억원, 대구 214억원 등 총 1,892억원을 교부하였고, 2025년의 경우 총 3,008억원을 교부하는 등 2년간 총 4,900억원을 교부하였음.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합계
부산	30,465	33,000	63,465
대구	21,444	20,200	41,644
인천	3,300	3,000	6,300
광주	11,000	11,000	22,000
대전	10,070	10,000	20,070
울산	3,028	5,271	8,299
세종	126	3,000	3,126
경기	7,451	21,125	28,576
강원	18,451	29,137	47,588
충북	4,213	13,785	17,998
충남	9,100	11,860	20,960
전북	15,560	34,810	50,370
전남	4,877	24,144	29,021
경북	29,652	38,158	67,810
경남	13,866	35,713	49,579
제주	6,600	6,600	13,200
합계	189,203	300,802	490,005

(자료 : 교육부)

❑ 시범사업은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험삼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와 범위는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동 사업은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총 56개 교육발전특구 지정,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으로 대규모 예산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146].

이에 더해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당초 학교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등을 주 사업대상으로 하여 왔는데, 해당 재원의 상당액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교부함으로써 학교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이 시급한 지역의 현안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147].

❑ 향후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격, 내용 및 사업추진체계를 고려하여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동 사업이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범위 및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현안사업에 적시성 있게 교부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46)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 예산안에 2억원(정책연구용역)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 중 동 시범사업은 특별교부금에서 추진할 것을 전제로 전액 삭감된 바 있음.

147)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학교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사업' 관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신청은 876건(7,172억원)이었으나, 실제 교부지원은 548건(3,227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남(통학로 개선사업 제외).

3)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148)]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1031-303) 사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을 통한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지원 및 교과용도서의 상시 수정・보완, 가격결정, 검정심사 운영 지원 등 체계적 질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학교 교수학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과용도서 개발, 교과용도서 심의회 운영,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등 9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148) 문의: 02-6788-5184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액은 57억 2,700만원으로, 예산현액 65억 9,000만원 중 63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8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5.6%임.

< 2024년도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5,727		6,590	6,302	80	208	95.6
○ 교과용도서 개발	2,997		3,220	3,113	-	107	96.7
○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151		151	151	-	-	100
○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확산	40		60	34	25	1	56.7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975		975	885	-	90	90.8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31		46	31	15	-	67.4
○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508		508	508	-	-	100
○ 학습자 중심 미래형 교과서 개발 정책연구	100		119	78	40	1	65.5
○ 교과서 정책자문단 운영	39		39	39	-	-	100
○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		586	577	-	9	98.5
○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지원	886		886	886	-	-	100

나) 검토의견: 법령상 근거 없는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을 시정할 필요

❑ 동 사업의 비목 중 민간위탁사업비(320-02)는 교과용도서 개발,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확산,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지원 등 5개 내역사업에서 사용되는 비목임.

< 동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민간위탁사업비 (320-02)	5,155	223	5,378	5,194	-	184
○ 교과용도서 개발	2,773	223	2,996	2,903	-	93
○ 교과용도서 우수 사례 발굴·확산	15	-	15	14	-	1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973	-	973	883	-	90
○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508	-	508	508	-	-
○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지원	886	-	886	886	-	-

자료: 교육부

❑ 2024년 동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3억 7,8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이 중 51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149]에 따르면, 교과용도서는 국정·검정·인정도서로 구분되고,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3항 및 제4항[150]은 수학·과학·정보 과목의 검정심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그 외 과목의 검정심사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151]하고 있어, 정부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

---

149)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15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생 략)
3.「초·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과학·정보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검정실시의 공고
나. 영 제9조에 따른 검정 심사
(생 략)
④ 교육부장관은「초·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수학·과학 및 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과학기술기본법」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생 략)

151)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서는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를 요구하고 있고, 교과용도서 개발, (서책형)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지원 내역사업은 법령상 근거에 기반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임.

<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및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 >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위탁기관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
교과용도서 개발	초등 국정도서를 위탁하여 편찬	한국교원대, 서울교대, 대구교대 산학협력단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3항 및 제4항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지원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3항 및 제4항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확산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사례 발굴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외부기관의 수정 요구 및 사회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교과서 수정·보완 사항 반영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확산,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역사업은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 없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특히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역사업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152]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수정하고 검정도서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수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저작자나 발행자가 아닌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8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수년간 반복되어 온 관행임.

< 최근 8년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역사업 현황 >

연도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내용	집행액 (백만원)
2017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2017.1.1.~12.31.	2017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380
2018		2018.1.1.~12.31.	2018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500
2019	〃	2019.5.1.~12.31.	2019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945
2020	〃	2020.4.9.~12.31.	2020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1,080

15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수정) ①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도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내용	집행액 (백만원)
2021	〃	2021.2.8.~12.31.	2021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1,066
2022	〃	2022.1.18.~2.28.	2022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20
	〃	2022.3.7.~12.31.	2022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897.4
2023	〃	2023.2.17.~12.31.	2023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915.4
2024	〃	2024.3.27.~12.31.	2024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883

자료: 교육부

❑ 법령상 근거 없이 집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부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결산심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교육부는 2024년에 대통령령에 위탁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153]와의 연계가 어렵고, 제22대 국회에서 동 조항의 개정이 추진 중임을 고려해 입법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다는 설명임.

❑ 그러나,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제26조), 국정도서의 편찬을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154]하고 있는 등, 대통령

153)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4)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령에서만 위탁을 규정한 선례가 존재하므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를 근거로 하여서도 대통령령에 민간위탁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교육부는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 미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거나,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참고] 최근 8년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확산 내역사업 현황[155)]

연도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내용	집행액 (백만원)
2017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2017.3.27.~11.30.	초등학교 3~4학년군 교과용도서 활용 연수교재 개발·보급	62.7
			교과용도서 개발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28.8
2018	공주 교육대학교	2018.3.20.~12.31.	초등학교 5~6학년군 교과용도서 활용 연수교재 개발·보급	50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2018.3.24.~12.31.	2018년 교과용도서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50
2019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19.12.9.~2020.7.8.	사회과 교과용도서의 지도 표현 및 지명 표기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4.5
	(사)한국 민속학회	2019.12.10.~2020.4.9.	초등 교과서 전래 놀이의 교육적 적절성 분석 정책연구	4.5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2019.3.19.~10.31.	2019 교과용도서 우수 연구사례 발굴 및 확산	48
2020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19.12.9.~2020.4.8.	사회과 교과용도서의 지도 표현 및 지명 표기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20.5
	(사)한국 민속학회	2019.12.10.~2020.4.9.	초등 교과서 전래 놀이의 교육적 적절성 분석 정책연구	20.5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2020.5.18.~12.17.	미래형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전환 및 지원 플랫폼 설계 연구	30
	대구대학교	2020.6.15.~12.14.	원격수업 저작권 문제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국정도서의 저작권 관리방안 등 제반사항을 중심으로-	20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2020.7.7.~10.31.	2020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50
2021	전남대학교	2021.7.14.~11.13.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한국 고대사 서술 및 영토 표현 연구(이슈페이퍼)	10
	연세대학교	2021.8.3.~12.27.	초등 교육용 어휘 목록 개발	40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2021.9.6.~11.26.	2021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50
2022	부산대학교	2022.6.13.~12.12.	교과용도서 개선 방안 제안 연구	25
	㈜이앤티 글로벌	2022.9.19.~11.18.	2022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15
2023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2023.12.5.~12.29.	한-미 역사 교과서 비교 분석 이슈페이퍼	5
	주식회사 나무엘	2023.6.14.~7.3.	2023년 교과서 포럼	15
2024	광주대학교	2023.11.14.~8.31.	디지털대전환 시대 초등 교과용도서 관련 정책 방향	20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2024.11.28.~12.22.	2024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포럼	14

155) 자료: 교육부

4) 영재교육 지원사업[156]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영재교육 지원사업(1031-305)은 영재교육 운영 기반 마련과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영재교육연구원 운영지원” 사업과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두 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영재교육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출연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원에 대하여 사업출연금(350-02)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원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 위탁운영 중임.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현액은 22억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전액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100%임.

156) 문의: 02-6788-5186

< 2024년도 영재교육 지원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영재교육 지원사업	2,201	-	2,201	2,201	-	-	100.0
○ 국가영재교육연구원 운영지원	576	-	576	576	-	-	100.0
○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1,625	-	1,625	1,625	-	-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국가영재교육연구원 종단연구 참여 독려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인 “국가영재교육원 운영지원”(2024년도 예산 5억 7,600만원) 사업은 「영재교육진흥법」[157]에 따라 설치·지정된 국가영재

157)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①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
2. 영재교육 정책연구
3. 영재의 판별에 관한 연구·개발
4. 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개발
5. 영재교육지원시스템의 연구·개발
6. 교원 연수자료의 연구·개발 및 연수 실시
7.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8. 특례자의 판별 및 적정 교육과정에 관한 심사
9. 특례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
10. 그 밖에 영재교육 관련 연구 업무 수행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교육연구원을 운영하여 영재교육 관련 연구와 자료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임.

동 내역사업은 다시 영재교육 관련 연구 수행(2024년도 예산 3억 9,000만원), 국가 창의인재관리시스템 운영(1억 2,000만원), 영재교육 교류협력 체제 지원(1억 6,000만원), 영재교육 운영현황 모니터링(5,000만원) 사업으로 구분됨.

❑ 영재교육 관련 연구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는 "영재교육 종단연구"로, 8개 영재학교[158] 신입생을 대상으로 25년간 추적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영재교육의 중·장기적 영향과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종단연구는 2017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41년까지 실시하는 '종단연구 2017'과 2022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46년까지 실시하는 '종단연구 2022'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의 방식으로 진행됨.

❑ 한편, 최근 연구 대상자의 연구 참여가 저조한 측면이 있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58) 경기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 종단연구 2017은 2024년 기준 연구 8년차에 접어들면서 대상자의 대학시기의 경험과 대학원 진학 및 사회 진출 현황 등에 관한 설문조사・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런데 결과보고서에 따를 때 8차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는 연구에 동의한 813명 중 66.3%인 539명으로, 이는 1차년도 728명에 비해 189명(26%)이 감소한 수준임.

< 8개년 설문조사 참여자 수 >

학교	대상 학생 수	1차년도 조사 참여자 수(%)	2차년도 조사 참여자 수(%)	3차년도 조사 참여자 수(%)	4차년도 조사 참여자 수(%)	5차년도 조사 참여자 수(%)	6차년도 조사 참여자 수(%)	7차년도 조사 참여자 수(%)	8차년도 조사 참여자 수(%)
경기과학 고등학교	127	123 (96.9)	122 (96.1)	113 (89.0)	99 (78.0)	89 (70.1)	75 (59.1)	79 (62.2)	81 (63.8)
광주과학 고등학교	97	72 (74.2)	95 (97.9)	89 (91.8)	76 (78.4)	72 (74.2)	72 (74.2)	77 (79.4)	74 (76.3)
대구과학 고등학교	93	88 (94.6)	88 (94.6)	84 (90.3)	65 (69.9)	65 (69.9)	62 (66.7)	63 (67.7)	69 (74.2)
대전과학 고등학교	93	93 (100.0)	87 (93.5)	89 (95.7)	68 (73.1)	65 (69.9)	60 (64.5)	74 (79.6)	69 (74.2)
서울과학 고등학교	126	123 (97.6)	115 (91.3)	120 (95.2)	80 (63.5)	75 (59.5)	74 (58.7)	78 (61.9)	70 (55.6)
세종 과학예술 영재학교	84	73 (86.9)	76 (90.5)	70 (83.3)	60 (71.4)	55 (64.3)	62 (73.8)	60 (71.4)	64 (76.2)
인천 과학예술 영재학교	78	78 (100.0)	59 (75.6)	75 (96.2)	58 (74.4)	52 (66.7)	49 (62.8)	53 (67.9)	49 (62.8)
한국과학 영재학교	115	78 (67.8)	80 (69.6)	92 (80.0)	84 (73.0)	83 (72.2)	63 (54.8)	71 (61.7)	63 (54.8)
계	813	728 (89.5)	722 (88.8)	732 (90.0)	590 (72.6)	556 (68.3)	517 (63.6)	555 (68.3)	539 (66.3)

자료: 교육부

8개년 간 설문조사 참여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수 학생이 영재학교에 재학중이던 3차년도까지는 720명 이상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여 참여율이 약 90%에 달하였으나, 대상자가 영재학교를 졸업한 시점인 4차년도 이후에는 참여가 대폭 감소하여 참여자 수가 500명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

❑ 심층 면담의 경우 2차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재학교 재학 마지막 해인 3차년도에 88명이 면담에 참여하였음. 대학 진학 이후 매년 50~60명만이 지속적으로 심층면담에 참여하고 있어, 8차년도부터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 10명의 패널을 추가로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차년도 88명 대비 26명(29.6%)이 감소한 62명만이 면담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됨.

< 심층 면담 패널 추가 현황 >

(단위: 명)

학교	3차년도 면담 학생 수	8차년도 면담 학생 수와 추가 패널 현황
경기과학고등학교	11	8 + 1(추가)
광주과학고등학교	10	4
대구과학고등학교	9	4 + 1(추가)
대전과학고등학교	14	8
서울과학고등학교	13	10 + 2(추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2	8 + 4(추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10	3
한국과학영재학교	9	7 + 2(추가)
계	88	52 + 10(추가)

자료: 교육부

❑ 종단연구 2022는 2024년 기준 연구 3차년도로 영재학생들의 영재학교 3년 동안의 인지적·정의적 성장을 분석하고 영재학교에서의 교육경험과 성장이 학생들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등을 실시하였음.

❑ 종단연구 2022의 경우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연구대상 731명 중 2024년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이 전체의 46.6%에 불과한 341명이었으며, 심층면담에는 2차년도 연구 참여자 56명 대비 6명(10.7%) 감소한 50명이 참여한바, 종단연구 2017의 3차년도에 비해서도 참여율이 현저히 낮음.

❑ 교육부는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의 종단연구 참여 여부는 졸업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패널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며, 종단연구 참여 졸업생들과의 대면 만남을 정기적으로 주최하여 참여 동기를 높이고자 할 계획이 있다는 입장임.

❑ 다만,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구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동 연구가 25차년도까지 실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추세로는 향후 더 많은 참여자의 이탈이 우려되므로, 교육부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독려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영재키움 프로젝트 선발 인원 배정 기준 개선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업은 영재교육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를 발굴하여 해당 학생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영재교육원이 “영재키움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위탁수행 중임.

❑ 원칙적으로 「영재교육진흥법」 및 관련 법령상 영재교육대상자[159]는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 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등을 거쳐 특정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160]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159)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①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신체적 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60)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자를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동 사업은 해당 규정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사유에는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한부모가족・다문화가정의 자녀, 소년・소녀 가장과 조손가정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등이 있음.

❑ 한편,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자격요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시・도별 선발인원을 "시도별 교육급여 수급자 수 비례할당"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어[161] 그 기준이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대표성 측면에서, 전체 참여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교육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2.64%, 2024년 21.53%로 도서벽지・읍면 지역 거주자의 비중(2023년 36.53%, 2024년 35.42%)보다도 낮으며, 그 외에도 다자녀가정(2023년 15.83%, 2024년 16.11%), 한부모 가정(2023년 6.53%, 2024년 7.5%) 등 다양한 유형의 학생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161) 정확히 "기본할당인원(1인) + 시도별 교육급여 수급자 수 비례할당 방식으로 선발인원을 배분하고 있음.

< 소외계층 지원자격별 참가자 현황 >

(단위: 명)

지원자격		2023년		2024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교육급여 수급자		163	22.64%	155	21.53%
특수교육대상자		7	0.97%	8	1.11%
도서벽지·읍면 지역		263	36.53%	255	35.42%
그밖에 사회 경제적 이유	학교장 추천	22	3.06%	21	2.92%
	국가보훈처 지정 교육보호대상자	13	1.81%	12	1.67%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1	0.14%	1	0.14%
	법정 차상위 계층	13	1.81%	15	2.08%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자녀	18	2.50%	16	2.22%
	한부모 가정보호 대상자	47	6.53%	54	7.5%
	아동복지 전담기관 보호 대상자	3	0.42%	1	0.14%
	다문화 대상자	38	5.28%	45	6.25%
	소년·소녀 가장 및 조손가정의 자녀	1	0.14%	0	0%
	다자녀가정 (3자녀 이상)의 자녀	114	15.83%	116	16.11%
	순직 군경·소방관·교직원의 자녀	2	0.28%	3	0.4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5	0.69%	6	8.33%
	군인·경찰·소방관·환경미화원의자녀	9	1.25%	11	1.53%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1	0.14%	1	0.14%
계		720	100.0%	720	100.0%

자료: 교육부

❑ 특히, 17개 시도교육청 지원자격별 참가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유형의 편차가 상당히 크고, 강원/충남/전남/경북/제주 등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교육급여수급자의 비중이 10% 미만임.

< 17개 시도교육청 지원자격별 참가자 현황 >

연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백분율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교육급여수급자	25	14	10	21	2	10	6	4	23	2	4	1	8	1	2	21	1	155	21.53%
2	특수교육대상자	2					1								2		3		8	1.11%
3	도서벽지·읍면지역	2	3	5	4			5	3	61	11	20	15	27	25	23	40	11	255	35.42%
4	학교장 추천	2	4	2		1	2			3	1	1			1	3	1		21	2.92%
5	국가보훈처 지정 교육보호대상자	3	2	1	1				1	1				2		1			12	1.67%
6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1																	1	0.14%
7	법정 차상위 계층	6	1	2	2		1						1	1				1	15	2.08%
8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자녀	4	2	2	3		1	1		1			1				1		16	2.22%
9	한부모 가정보호 대상자	9	6	4	7			2	1	8	1	2		2	1	3	8		54	7.50%
10	아동복지 전담기관 보호 대상자			1															1	0.14%
11	다문화 대상자	4	8	1	1	1	2	5		8	1		2	4	2	2	3	1	45	6.25%
12	소년·소녀가장 및 조손가정의 자녀																		0	0.00%
13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25	10	8	2	5	5	2	1	25	3	1	6	6	5	4	7	1	116	16.11%
14	순직 군경·소방관· 교직원의 자녀			1	2														3	0.42%
15	장애 정도가 심한자의 자녀	1	2				1			1					1				6	0.83%
16	군인·경찰·소방관·환경미화 원의자녀	1								2	5		2				1		11	1.53%
17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1																	1	0.14%
합계		86	52	37	43	9	23	21	10	133	24	28	28	50	38	38	85	15	720	100.00%

자료: 교육부

❑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배정인원의 4~5배 인원이 프로그램에 신청한 데 비해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자 수가 배정된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시·도 간 신청 대비 선발 비율에 차이가 존재함. 이에 최종 선발자 수는 지역별 신청자 수와 기존 참여자의 이탈 등을 감안하여 증·감 조정하고 있음.

< 17개 시도교육청별 신청·선발 현황 >

지역	최초 신규배정 인원	신청자 수(A)	선발자 수(B)	경쟁률 (B/A ×100)
서울	18	50	20	40.0%
부산	11	52	20	38.5%
대구	8	17	5	29.4%
인천	11	21	7	33.3%
광주	7	1	1	100.0%
대전	6	4	3	75.0%
울산	3	11	4	36.4%
세종	2	6	3	50.0%
경기	28	32	17	53.1%
강원	6	15	9	60.0%
충북	6	27	10	37.0%
충남	7	28	10	35.7%
전북	9	22	12	54.5%
전남	8	27	15	55.5%
경북	9	27	14	51.9%
경남	27	81	29	35.8%
제주	4	15	4	26.6%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 재구성

❑ 교육부는 “교육급여 수급자 수”는 가장 명확하고 통계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취약계층 지표이므로 정책 추진의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식 지표로 활용한다는 설명임.

❑ 그러나 교육급여 수급자 수가 다양한 취약계층 유형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 이에 따라 교육급여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배정한 인원이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최종적으로는 수요를 반영하여 인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기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잠재적 수요 왜곡과 불필요한 행정 낭비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부는 영재키움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보다 합리적인 인원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 2024년 시・도별 선발인원 배정 계획(안)

(단위: 명)

순	지역	'24년 신규 선발 인원(170명)				'23년 기선발 인원 (E)	'24년 배정 인원		
		수급자 수 비율 배정 (A)	기본 배정 (B)	충원 인원 (C)	신규 선발 합계 (D)=(A+B+C)		총계 (D+E)	교육급여 수급자 수	교육급여 수급자 비율
1	서울	17	1		18	67	85(11.81%)	39,305	12.30%
2	부산	10	1		11	32	43(5.97%)	24,091	7.54%
3	대구	7	1		8	33	41(5.69%)	17,352	5.43%
4	인천	10	1		11	38	49(6.81%)	23,747	7.43%
5	광주	6	1		7	8	15(2.08%)	14,761	4.62%
6	대전	5	1		6	20	26(3.61%)	10,643	3.33%
7	울산	1	1	1	3	17	20(2.78%)	3,236	1.01%
8	세종	1	1		2	8	10(1.39%)	1,553	0.49%
9	경기	27	1		28	124	152(21.11%)	62,059	19.42%
10	강원	5	1		6	15	21(2.92%)	10,710	3.35%
11	충북	5	1		6	18	24(3.33%)	11,386	3.56%
12	충남	6	1		7	19	26(3.61%)	13,258	4.15%
13	전북	8	1		9	38	47(6.53%)	19,504	6.10%
14	전남	7	1		8	22	30(4.17%)	15,199	4.76%
15	경북	8	1		9	24	33(4.58%)	19,758	6.18%
16	경남	11	1	15	27	56	83(11.53%)	26,760	8.37%
17	제주	3	1		4	11	15(2.08%)	6,300	1.97%
총계		137	17	16	170	550	720(100.0%)	319,622	100%

자료: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동북아역사재단 지원[162]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2447-301) 사업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출연하여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현안 분석, 조사·연구 및 대응논리 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자체수입으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 사업 등 9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현액은 156억 7,200만원으로, 전액 동북아역사재단에 출연금으로 교부하였고. 동북아역사재단은 156억 7,200만원 중 148억 3,1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94.6%임.

162) 문의: 02-6788-5184

< 2024회계연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15,672	-	15,672	14,831	-	841	94.6
○ 사업비	5,443	-	5,443	5,388	-	55	99.0
-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658	-	658	653	-	5	99.2
-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1,336	-	1,336	1,318	-	18	98.7
-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	458	-	458	454	-	4	99.1
-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324	-	324	319	-	5	98.5
-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 사업	900	-	900	897	-	3	99.7
- 교류 및 홍보 사업	625	-	625	623	-	2	99.7
-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	494	-	494	484	-	10	98.0
- 연구관리 및 지원	123	-	123	120	-	3	97.6
-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525	-	525	520	-	5	99.0
○ 인건비	8,233	-	8,233	7,402	-	831	89.9
○ 경상비	2,940	-	2,940	2,930	-	10	99.7
○ 자체수입	△944	-	△944	△889	-	△55	94.2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인건비의 연례적 불용을 개선할 필요

❑ 2024년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은 인건비 예산 82억 3,300만원 중 74억 200만원을 집행하여 인건비 항목의 집행률은 89.9%임. 인건비 불용액은 매년 증가(’22, 2억 3,800만원→’24, 8억 3,100만원)하고, 집행률은 매년 하락(’22, 97%→’24, 89.9%)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인건비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재단 인건비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7,474	7,699	7,854	8,025	8,233
집행액	7,061	6,914	7,616	7,381	7,402
불용액	413	785	238	644	831
집행률	94.5	89.8	97.0	92.0	89.9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 이처럼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정원 대비 현원에 지속적으로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020~2024년 동안 연평균 결원은 4명으로 매년 결원이 존재하였고, 특히 2024년의 경우 총 결원 22명에 대한 신규채용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15명만 채용이 이루어져 충원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 2025년 7월 기준으로도 9명의 결원이 발생한 상황임.

< 최근 5년간 재단 정원·현원 현황 >

(단위: 명)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7.
정원	113	113	114	114	114	114
현원	108	111	111	108	110	105

※ 1. '22.3. 직제규정 개정 시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
2. 2020~2024년은 매년 연말 기준
3. 2020~2024년 평균 결원: 4명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 2024년 재단의 신규채용 현황 >

(단위: 명)

공고일	채용예정	채용인원	임용일	비고
2024.1.29.	1	1	2024.3.18.	공무직
2024.3.21.	8	4	2024.7.1.	연구직
2024.3.27.	1	1	2024.6.17.	행정직(개방형)
2024.7.26.	1	1	2024.9.26.	행정직
2024.7.26.	9	6	2024.11.11.	연구직
2024.10.25.	2	2	2024.12.23.	공무직
소계	22	15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단 설립[163] 19년차를 맞으면서, 정년퇴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퇴직자가 연평균 10명 이상 발생하였고, 특히 최근 3년간 정년퇴직 인원의 평균 충원 기간이 9개월 22일에 달하는 등 채용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163) '06.9.1.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등기

< 최근 5년간 재단 퇴직자 현황 >

(단위: 명)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퇴직자 총계	9	10	7	12	13

※ 연평균 10.2명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 최근 3년간 재단 정년퇴직 인원 충원 소요기간 >

(단위: 명)

연도	인원	정년퇴직일	임용일	소요일
2022	1	2022-07-01	2023-01-01	6개월
2023	2	2023-01-01	2023-07-17	6개월 16일
	4	2023-07-01	2024-07-01	1년
2024	2	2024-01-01	2024-11-11	10개월 10일
	3	2024-07-01	2025-08-01	1년 1개월
평균				**9개월 22일**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 재단 측은 인건비 불용의 원인으로, 채용을 희망하는 부문이 해당 시기의 역사적 쟁점과 국제 정세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연구직의 경우 적합한 후보자 확보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제한적인 승진으로 직급별 정원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낮은 급여와 복지 수준으로 대학 및 타 공공기관으로 이직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임.

❑ 역사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채용 공고를 낸 시점 재단이 채용을 희망하는 전문성을 보유

한 인력 풀은 더욱 제한적인 것 또한 사실임.

그러나, 정년퇴직 인원에 대한 재공고 기간을 살펴보면, 퇴직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길게는 8개월이 소요되는 등, 평균 충원 기간 9개월 22일 중 절반에 해당하는 4개월 17일 가량이 공고 지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재단 정년퇴직 인원 공고 소요기간 >

(단위: 명)

연도	인원	정년퇴직일	공고일	소요일
2022	1	2022-07-01	2022-10-27	3개월 29일
2023	2	2023-01-01	2023-4-21	3개월 21일
	4	2023-07-01	2024-3-21	8개월 25일
2024	2	2024-01-01	(1차)2024-3-21 (2차)2024-7-26	2개월 21일
	3	2024-07-01	(1차)2024-7-26 (2차)2025-5-1 ※ '24.7. 채용공고 인원('24.11. 전형완료) 9명 중 미충원 인원 추가 공고	26일
평균				**4개월 17일**

※ 소요일은 정년퇴직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 즉,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퇴직 일자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측에서 채용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임용 시기가 늦어져 결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재단 측은 향후 정기채용(연 4회)을 통해 정·현원차를 최소화하고, 승진제도 개선으로 직급별 정원을 충원하며, 공무직 직급제도 확대 및 개편을 통한 처우 개선, 청년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연례적인 인건비 불용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임.

❑ 2025년 이후에도 2027년에는 4명, 2028년에는 6명 등 정년퇴직 인원이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단은 제시한 개선방안을 충실히 실천함은 물론, 정년퇴직 인원의 선제적 채용 공고를 통해 결원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연도별·직군별 예상 정년퇴직 인원 >

(단위: 명)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연구직	2	1	3	2	5
행정직	2		1	3	2
무기계약직		1		1	

※ 2025년은 당연퇴직 등 퇴직예정 인원 포함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2)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2232-321)[164]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2232-321) 사업은 예비교원의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적용 및 교사의 수업 혁신을 위해 대학 교원 연수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 동 세부사업은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교사 재교육 지원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164) 문의: 02-6788-5189

(2) 결산개요

❑ 2024년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은 79억원이 사업출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68억원이 집행되고 11억원은 불용되어 집행률은 86.1%임.

< 2024년도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7,900	-	7,900	6,800	-	1,100	86.1
○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4,900	-	4,900	4,900	-	-	100.0
○ 교사 재교육 지원	3,000	-	3,000	1,900	-	1,100	63.3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사업의 결과 점검 및 효과성 파악 필요

❑ 2024년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중,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으로 수행된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내역사업은 4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여건 변화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되었고,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이 2024년 6월에 수립되어 7월에 예산이 배정되고 사업이 시작되었음.

또한 '교사 재교육 지원' 내역사업은 3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65]에 따라 신설된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166]으로 수행되는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사업과의 중복 방지를 위한 사업 재설계 필요 등에 따라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되었고, 2024년 9월에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배정되어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사업 중복 방지를 위한 재설계 및 사업 기간 조정으로 예산 규모는 30억원에서 19억원으로 조정됨.

이와 같은 사업 지연으로 2024년에 편성된 두 내역사업은 2024년 12월 중간보고회와 2025년 6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 상황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제19938호), 2023.12.31. 개정, 2024.1.1. 시행
166) 일반회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1502-303)

< 2024년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내역 >

사업명	일정	내용
교원양성 과정 개선대학 지원	'23.4.~'24.6.	· 교원양성과정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24.6.	· 2024년도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24.7.	· 예산 수시배정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사업여건 변화로 중요한 사업 내용이 바뀌는 등 검토가 필요하여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 · 사업 주관·참여 대학 선정 및 대학별 사업 착수
	'24.12.	· 중간보고회
	'25.6.	· 최종보고회
교사 재교육 지원	'24.1.~2.	· 교원양성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담당자 의견 수렴 등
	'24.4.	·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온라인 협의 및 함께차담회를 통한 협의
	'24.5.	· 교사 재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안) 마련
	'24.6.~8.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수행되는 연수와의 중복 방지 및 사업 기간 조정에 따른 예산 규모 조정 논의
	'24.9.	· 예산 수시배정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수행되는 연수와의 중복 방지를 위한 재설계 필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 · 2024년도 교사 재교육 지원 사업 기본 계획 수립
	'24.10.	· 참여 컨소시엄 선정 및 컨소시엄별 사업 추진
	'24.12.	· 중간보고회
	'25.6.	· 최종보고회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첫째, 유사한 내용으로 동일한 기관이 지원받지 않도록 사업 결과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은 예비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 개편·개선에 중점을 두고 초등 교원 양성기관은 컨소시엄으로, 중등 교원 양성기관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교사 재교육 지원 사업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대비하여 수업 혁신의 주체인 교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원 양성기관이 권역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함.

그러나 두 사업은 모두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공통적으로 '교실혁명을 위한 교원역량 체계(CRCF, Class Revolution Competency Framework)'에 기반하여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24년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사업 비교 >

구분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교사 재교육 지원
사업목적	·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현장 이해도가 높은 다역량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선도 모델 지원	· (예비)교원들이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을 이해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수업혁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의 지원 역량 강화
사업 주요내용	· 대학이 교원양성과정 개선 모델을 상향식으로 제안하고, 선정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및 우수모델 개발·확산 지원 - (공통·필수)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을 이해하고 수업 혁신의 핵심 기제인 AIDT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 추진 ※ 교실혁명을 위한 교원 역량 체계(CRCF)에 기반한 교원양성과정 개편 추진 - (중점추진) 미래형 교원양성체제, 예비교원의 전문성·현장성이 강화된 양성과정 개편 등 대학의 혁신 방향 제시	·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교원 역량 체계(CRCF)를 기반으로 (예비)교원의 AIDT 적용 교과별 실습 지원 체계 구축 - 권역별 교원양성대학 컨소시엄을 구축·운영하여 컨소시엄 내·외의 교류·협력을 통해 AIDT 연수 노하우 공유 및 성과 확산 - 교원양성 정규교육과정에 AIDT 활용 수업을 반영하여 예비교원의 수업 혁신 역량 강화 지원 - 교육청 연계형 교원 특별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및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
사업기간	· 2024. 6. ~ 2025. 6.	· 2024. 9. ~ 2025. 6.
사업수행	· 출연(한국연구재단)	· 출연(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대상	·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중 5주기 역량진단 결과 A, B 등급 대학	· 교원양성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4개 내외) 6개
사업유형	· 초등 컨소시엄, 중등 단독	· 권역별 컨소시엄
예산액	· 49억원 - 초등 컨소시엄 16억원(4개×4억원) - 중등 단독 28억원(16개교×1억 7,500만원) - 위탁관리비 5억원	· 19억원(3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11억원 불용) - 컨소시엄 15억 6,000만원(6개×2억 6,000만원) - 위탁관리비 3억 4,000만원
비고	· '교사 재교육 사업'과 동시 신청 시 공통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	·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의 필수과제로 AIDT 관련 교원양성과정 개선을 지원하므로 해당 사업 선정 대학은 참여를 제한하되, 초등양성기관의 경우 초·중등 연계를 위하여 사업 계획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대학으로 참여 가능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두 사업에서는 계획 수립 및 공모 당시 두 사업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 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두었으나, 두 사업의 내용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 일부 수행 내용이 유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부는 이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유사한 내용으로 동일한 참여 기관이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결과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주관대학 및 참여·협력대학 >

사업명	유형/권역	주관대학	참여/협력대학
교원 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20)	초등 컨소시엄 (4)	경인교대	서울교대, 춘천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중등 단독 (16)	가톨릭관동대, 경희대, 계명대, 공주대, 대구대, 동국대, 목원대, 서원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주대, 조선대, 중앙대, 한양대	-
교사 재교육 지원 (6)	수도권 (2)	서울대	서울교대, 인천대
		아주대	경기대, 단국대, 대진대
	강원·충청권 (1)	강원대	강릉원주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경상권 (2)	대구가톨릭대	대구교대
		부산대	경남대, 경상국립대, 신라대
	전라·제주권 (1)	전남대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전북대, 제주대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둘째,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추후 교원양성기관에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두 내역사업은 모두 2024년 사업으로 종료되어 추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고 학교의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비율도 저조한 상황이므로,[167] 두 사업을 통해 개선된 교육과정, 체계 등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다만 AI 디지털교과서 이외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일상생활에서부터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으로 개선된 교육과정, 체계 등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교육과정, 체계 등이 교원양성기관에서 운영되는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해당 결과를 추후 교원양성기관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167) 2025년 4월 기준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학교 수 비율은 34.3%(1만 1,932개교 중 4,098개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국고대여학자금융자(6036-300)[168]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고대여학자금융자(6036-300) 사업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융자함으로써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169] 등에 근거를 두고 수행됨.

---

168) 문의: 02-6788-5189

16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① 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자금대여사업
2. 주택사업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결산개요

❑ 2024년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 계획액은 기타 민간융자금으로 37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73억 2,600만원이 증액 변경되어 계획현액은 544억 5,100만원이며, 이 중 512억 8,800만원이 집행되고 31억 6,300만원은 불용되어 집행률은 94.2%임.

< 2024년도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변경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고대여학자금융자	37,125	17,326	54,451	51,288	-	3,163	94.2
○ 기타 민간융자금	37,125	17,326	54,451	51,288	-	3,163	94.2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계획액의 변경 집행 지양 필요

❑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의 2024년 당초계획액 371억 2,500만원은 2023년 계획액을 기준으로 편성됨.

구체적으로 건수는 2023년 계획액 건수 1만 1,867건에 편성 당시 집행이 완료된 2019~2022년 건수의 연평균 증감률 △10.5%가 적용되었고, 단가는 2023년 계획액 단가 356만 8,000원이 적용됨.

❑ 그러나 2024년 1분기에 계획액의 69.6%인 258억 3,000만원이 집행됨에 따라, 2024년 1분기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수정계획액 544억 5,100만원이 편성됨.

구체적으로 건수는 2024년 1분기 지급 건수 6,792건에 편성 당시 집행이 완료된 2021~2023년 2~4분기 평균 지급 건수 7,526건이 합산되었고, 단가는 2024년 1분기 평균 지급 단가 380만 3,000원이 적용됨.

❑ 그러나 2024년 최종 집행 결과 건수는 1만 3,611건, 단가는 376만 8,000원으로 수정계획액 산출 기준을 하회하여 불용액이 발생함.

< 2024년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불용액	집행액 (C)	집행률	
	당초 (A)	변경 규모	수정 (B)			당초대비 (C/A)	수정대비 (C/B)
국고대여학자금융자	37,125	17,326	54,451	3,163	51,288	138.1	94.2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 계획액 산출근거 >

구분	산출 근거
당초 계획액	· 37,125백만원 (10,405건 × 3,568천원)
	- 건수: 2023년 계획액 건수 × 최근 4년간(2019~2022년) 연평균 증감률 = 11,867건 × (1+△10.5%) ≒ 10,405건
	- 단가: 2023년 계획액 단가 = 3,568천원
수정 계획액	· 54,451백만원(14,318건 × 3,803천원)
	- 건수: 2024년 1분기 지급 건수 + 최근 3년간(2021~2023년) 2~4분기 평균 지급 건수 = 6,792 + 7,526 = 14,318건
	- 단가: 2024년 1분기 평균 단가 = 3,803천원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 계획액 산출근거 관련 내역>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19~'24 연평균증감률
집행액	70,332	61,521	53,101	51,225	△10.0
건수	19,505	17,174	14,870	13,970	△10.5
단가	3.606	3.582	3.571	3.667	0.6

구분	2023		2024		2025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금액	41,481	54,162	37,125	51,288	33,412
건수	11,867	14,530	10,405	13,611	9,667
단가	3.568	3.728	3.568	3.768	3.420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아울러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의 2024년 계획액에는 20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170] 결과도 기준으로 적용됨.

교육부는 20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성과목표 미달성 등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에 대해, 2023년 계획액 414억 8,100만원 중 41억 4,900만원을 감액한 373억 3,200만원으로 2024년 계획액을 편성하는 지출구조조정안을 제출(2023.5.)하였고, 2024년 계획액은 지출구조조정안과 유사한 수준인 371억 2,500만원으로 편성됨.

그러나 학자금 융자 추가 수요 발생으로 2024년 계획액은 증액 변경되었으며, 퇴직 교직원 및 의대생 휴학 증가 등으로 최종 수요는 증액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함.

---

170)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ㆍ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의 2024년 계획액을 20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수준으로 편성하였다가 수요에 맞추어 증액 변경하고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동 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등에 따른 국가위탁사업으로서 사실상 의무 복지 성격의 사업이므로, 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해당 기금에서 수행되는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 사업이 사실상 의무 복지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계획액을 감액하는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감액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고 집행과정에서 수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증액 변경하여 집행하는 상황은 2023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실상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액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다가 증액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는 한편, 수요에 부합하는 계획액을 면밀하게 추계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21~2023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계획액 감액 편성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감액 기준		감액 편성 및 집행				
			연도	계획액	연도	계획액	수정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2021 회계연도	보통	집행부진	2022년	53,182	2023년	41,481	57,370	54,162	3,208
2022 회계연도	미흡	성과목표 미달성, 중복수혜 및 퇴직자 상환관리 문제 해소 부족	2023년	41,481	2024년	37,125	54,451	51,288	3,163
2023 회계연도	미흡	집행부진	2024년	37,125	2025년	33,412	50,503	(25,030)	

주: 2025년 수정계획액, 집행액은 2025년 1분기 기준임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연금급여(6131-400)[171]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연금급여(6131-400) 사업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172] 등에 근거한 의무적 지출사업임.

(2) 결산개요

❑ 2024년 연금급여 사업 계획액은 연금지급금으로 4조 4,845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3,562억 5,000만원이 증액 변경되어 계획현액은 4조 8,407억 7,900만원이며, 이 중 4조 8,176억 8,900만원이 집행되고 230억 9,000만원은 불용되어 집행률은 99.5%임.

---

171) 문의: 02-6788-5189

17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 2024년도 연금급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변경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연금급여	4,484,529	356,250	4,840,779	4,817,689	-	23,090	99.5
○ 연금지급금	4,484,529	356,250	4,840,779	4,817,689	-	23,090	99.5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연금급여 수요의 면밀한 추계 및 지속적 증가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연금 가입자, 탈퇴자, 수급자 등의 인원수와 평균 급여액 등을 바탕으로 연금급여 사업의 2024년 당초계획액을 산출하였으나, 추가 소요액 발생으로 계획액을 증액 변경하여 급여를 지급함.

❑ 이러한 상황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이에서도 나타나는데, 당초계획액의 연평균 증감율은 9.4%이나, 집행액은 보다 높은 11.0% 수준을 보여 매년 계획액을 증액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졌고 추가 소요액의 증감율은 79.8%에 이름.

< 연금급여 사업 당초계획액 및 집행액 추이 >

(단위: 백만원,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당초계획액(A)	3,136,410	3,407,725	3,703,240	4,108,274	4,484,529	9.4
(증감률)	(13.4)	(8.7)	(8.7)	(10.9)	(9.2)	
집행액(B)	3,168,281	3,437,337	3,859,684	4,362,354	4,817,689	11.0
(증감률)	(8.6)	(8.5)	(12.3)	(13.0)	(10.4)	
추가 소요액(B-A)	31,871	29,612	156,444	254,080	333,160	79.8
(증감률)	(△79.0)	(△7.1)	(428.3)	(62.4)	(31.1)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와 관련하여 연금급여 사업 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 수급자 수 및 가입자 수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현황을 살펴보면, 연금 수급자 수는 2020년 8만 465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 10만 7,717명에 이르는 등 연평균 7.6%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금 가입자 수는 2020년 32만 7,864명에서 2023년 33만 3,852명으로 매년 1%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2024년에는 3.1% 감소한 32만 3,542명에 이르러 연평균 0.3%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수 추이 >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합계	80,465	87,093	93,872	101,015	107,717	7.6
(증감률)	(9.1)	(8.2)	(7.8)	(7.6)	(6.6)	
교원	57,960	62,841	68,120	73,547	78,457	7.9
(증감률)	(9.5)	(8.4)	(8.4)	(8.0)	(6.7)	
사무직원	22,505	24,252	25,752	27,468	29,260	6.8
(증감률)	(8.1)	(7.8)	(6.2)	(6.7)	(6.5)	

주: 수급자 수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기준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수 추이 >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합계 (증감률)	327,864 (1.3)	330,322 (0.7)	333,231 (0.9)	333,852 (0.2)	323,542 (△3.1)	△0.3
교원 (증감률)	159,900 (△2.0)	156,632 (△2.0)	152,832 (△2.4)	148,968 (△2.5)	145,213 (△2.5)	△2.4
사무직원 (증감률)	167,964 (4.7)	173,690 (3.4)	180,399 (3.9)	184,884 (2.5)	178,329 (△3.5)	1.5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이와 같이 가입자 수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수급자 수의 영향 등으로, 연금수지는 2022년에 2,019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 1조 584억원 적자가 발생하였고, 재정수지는 2020년 1조 458억원에서 2021년 2조 1,35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4,4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연금수지 및 재정수지 추이 >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수입(A)	62,095	75,895	72,863	66,460	68,318
연금부담금(a)	42,638	43,402	44,576	45,844	45,640
기타 이자수입 등	19,457	32,493	28,287	20,616	22,678
총지출(B)	51,637	54,545	57,071	61,236	63,825
연금급여(b)	39,049	41,575	46,595	51,952	56,224
기타 사업비	12,588	12,970	10,476	9,284	7,601
재정수지(A-B)[1]	10,458	21,350	15,792	5,224	4,493
연금수지(a-b)	3,589	1,827	△2,019	△6,108	△10,584

주: 1) 재정수지는 투자증권평가손익금액 미포함 금액임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173]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서 5주년 주기로 수행한 2020년 제5차 연금재정 장기추계에 따르면, 재정수지는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감사원은 2025년에 발표한 기관정기감사 보고서[174]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제5차 연금재정 장기추계에 대하여, 수입 과다 추계(미래 신규 가입자의 연금부담금 과다 산정)와 지출 소요(폐교로 인한 조기 퇴직 연금급여 비용)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요소를 고려할 경우 2028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며 2046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재추계하였음.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에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보고서[175]에서 2028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42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추계 보다 재정수지 적자 전환과 기금 고갈을 앞선 시점으로 전망하는 결과가 존재함.

---

17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174) 감사원, 「감사 보고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정기감사」, 2025.6.
175)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25.2.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수지 적자 및 기금 고갈 시점 추계 >

구분		재정수지 적자	기금 고갈
사학연금	제5차 연금재정 장기추계	2029년	2049년
감사원	제5차 연금재정 장기추계 재추계	2028년	2046년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	2028년	2042년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 보고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정기감사」, 2025.6.,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25.2.

❑ 아울러 2022~207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각 연령계층 중,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차지하는 수와 비중은 증가 추세인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및 유소년인구(0~14세)가 차지하는 수와 비중은 감소 추세이고, 학령인구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퇴직, 폐교 등으로 인한 수급자 수 증가와 가입자 수 감소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2022~2072년) >

(단위: 만명,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30	2040	2050	2060	2072
총인구	5,167	5,171	5,175	5,168	5,131	5,006	4,711	4,230	3,622
고령인구	898	944	994	1,051	1,298	1,715	1,891	1,868	1,727
(65세 이상)	(17.4)	(18.2)	(19.2)	(20.3)	(25.3)	(34.3)	(40.1)	(44.2)	(47.7)
생산연령인구	3,674	3,657	3,633	3,591	3,417	2,903	2,445	2,069	1,658
(15~64세)	(71.1)	(70.7)	(70.2)	(69.5)	(66.6)	(58.0)	(51.9)	(48.9)	(45.8)
유소년인구	595	571	549	526	416	388	375	293	238
(0~14세)	(11.5)	(11.0)	(10.6)	(10.2)	(8.1)	(7.7)	(8.0)	(6.9)	(6.6)

주: 괄호 안은 해당 연령계층의 인구가 해당 연도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중위추계 기준, 2023.12.

< 학령인구(6~21세)(2022~2072년) >

(단위: 만명,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30	2040	2050	2060	2072
합계	750	730	715	698	597	412	425	377	278
증감	-	△20	△15	△17	△101	△185	13	△48	△99
(증감률)	-	(△2.7)	(△2.1)	(△2.4)	)(△14.5	(△31.0)	(3.2)	(△11.3)	(△26.3)
초(6~11세)	270	261	248	234	161	156	153	123	94
중(12~14세)	137	136	138	140	115	68	83	71	48
고(15~17세)	132	136	138	137	133	69	82	74	52
대(18~21세)	210	197	190	187	188	119	108	109	85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중위추계 기준, 2023.12.

❑ 참고로 폐교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 대상자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 폐지 등으로 퇴직한 경우가 준용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교직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함.[176]

폐교로 인한 연금은 2020년에 321명에 대해 총 62억 5,5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2024년에는 408명에 대해 총 89억 8,8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급규모가 증가하였고, 2024년에 일반적인 퇴직연금 개시연

17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기타 내용 생략)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기타 내용 생략)

령보다 조기에 지급된 금액[177]은 29억 9,500만원임.

<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 추이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급자 수		321	340	353	379	408
지급액	폐교~개시연령[1] 전	3,685	3,628	3,407	3,028	2,995
	개시연령 이후	2,570	3,251	3,995	5,048	5,993
	합계	6,255	6,879	7,402	8,076	8,988

주: 1) '개시연령'은 폐교가 아닌 '일반 퇴직'에 따른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2024년 연금급여 사업의 계획액은 초과하는 지급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증액 변경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5년은 5주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제6차 연금재정 장기추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담금 수입과 급여 지급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향후 수요 등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연금 가입자 수 감소

177) < 1996 이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 >

퇴직 연도	일반 퇴직	직제 개폐 등으로 퇴직
2016년~2021년	60세	퇴직한 즉시
2022년~2023년	61세	퇴직 +1년
2024년~2026년	62세	퇴직 +2년
2027년~2029년	63세	퇴직 +3년
2030년~2032년	64세	퇴직 +4년
2033년~	65세	퇴직 +5년

자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13561호, 2015.12.15. 개정, 2016. 1. 1. 시행) 부칙 제7조 및 제8조

와 수급자 수 증가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의 가중이 예상되므로,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급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일반회계>

1) 교육기부 활성화[178]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육기부 활성화(1035-404) 사업은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의 매칭을 연계하는 내용의 사업임.

동 사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사업 출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교육기부 자원 발굴, 체계적 지원 강화,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33억 1,300만원이며, 전액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교부되어 집행률은 100.0%임.

178) 문의: 02-6788-5186

< 2024년도 교육기부 활성화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교육기부 활성화	3,313	-	3,313	3,313	-	-	100%
- 교육기부 자원 발굴	683	-	683	683	-	-	100%
- 체계적 지원 강화	432	-	432	432	-	-	100%
-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836	-	836	836	-	-	100%
- 대학생·청년 교육기부, 예술·스포츠 재능기부	1,362	-	1,362	1,362	-	-	1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일회성 사업 추진 최소화 필요

❑ 동 사업 내역사업인 “체계적 지원 강화”는 구체적으로 교육기부 추진협의체 운영을 통한 교육기부 네트워크 형성 및 성과 공유 등 교육기부 기반 구축(교육기부 추진협의체 운영), 교육기부 포털 사이트를 매개로 한 기부자·수혜자 상호 매칭과 정보 공유 등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교육기부 포털사이트 유지·보수 및 운영) 두 가지 내내역사업으로 구분됨.

❑ 한편, 포털사이트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사업비로 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약 2억 3,400만원의 예산이 “메타버스 체험관 구축”을 위한 사업비였음.

< 포털사이트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비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2023		2024	
내역	예산	내역	예산
□ 예산액	410,000	□ 예산액	312,000
□ 집행액	410,000	□ 집행액	312,000
- 포털 사이트 운영(유지보수)	70,950	- 포털 사이트 운영(유지보수)	70,000
- 포털 사이트 개편	-	- 포털 사이트 개편	114,500
- 메타버스 체험관 구축	233,750	- 메타버스 체험관 구축	-
- 클라우드 서버 개선, 운영	40,000	- 클라우드 서버 개선, 운영	30,000
- 사업관리비(인건비, 간접비 등)	65,300	- 사업관리비(인건비, 간접비 등)	97,500

자료: 교육부

❑ 교육기부는 기존에 단기 체험 프로그램을 위주로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그로 인해 교육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음. 또한, 현장 체험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수혜 인원이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음.

메타버스 체험관 구축 사업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교육기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임.

❑ 메타버스 체험관은 2023년 늘봄학교·교육기부박람회 기간 동안의 시범운영('23. 12.)과 추가적인 콘텐츠 기획 연구 등(~'24. 2.)을 거쳐 2024년 4월 30일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메타버스 체험관은 정식 운영이 시작된 이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당초 2024년도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교육기부 메타버스 유지보수와 홍보 등 메타버스 체험관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추진되지 않았음.

< 2024년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계획 중 사업 추진계획(안) >

구분		세부내용	일정	비고
2. 교육기부 체계적 지원 강화				
	추진협의체	• 추진협의체 참여기관 공모(상반기)	5~6월 중	30일 내외
	자문위원회	• 자문위원회 개최(상반기)	5월 중	
	교육기부포털	• 디자인 및 기능 개선 • 연간 콘텐츠 생성 및 활성화, 관련 만족도 및 이벤트 수행	5월~8월 6월~12월	
	교육기부 메타버스	• 유지보수 및 홍보	5월~12월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 2024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및 동아리 인증제 모집 (신규 및 갱신)	4~5월 중	30일 내외

○ 교육기부 메타버스 유지보수
- (공고명) 2024년 교육기부 메타버스 유지보수
- (공고기간) 2024. 5월 ~ 6월
- (공고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 (주요과업) 교육기부 메타버스 오픈에 따른 유지보수를 통해 콘텐츠 관리 및 업데이트, 관련 자료 백업 등

자료: 교육부

그 결과 메타버스 체험관의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2024년 4월 30일 정식운영이 시작된 이후 5월까지 접속자 수는 2만 2,831명에 불과한 수준이고,

2025년도 사업 계획에도 메타버스 유지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교육기부 메타버스 유지보수나 콘텐츠 개발 관련 공고는 게시된 바 없음.

< 교육기부 메타버스 방문자 수 현황 >

(단위: 명)

구분	콘텐츠명	총 방문자 수
교육기부메타버스 타운		22,831
1	한국산림복지원(포로롱포이)	18,407
2	KAI(에비에이션캠프)	16,812
3	공항철도주식회사(메타아렉스)	16,736
4	CJ올리브네트웍스(SW창의캠프 팩토리원)	15,852
5	포스코 1%나눔재단(그리닛포스)	10,685
6	굿네이버스(클린빌리지)	9,014

자료: 교육부('24.4.30.~'25.5.21. 기준)

❑ 교육부는 '교육기부포털 및 채널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용역명_교육기부 포털 및 채널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역)'을 운영하면서 해당 사업 내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포함하여 추진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교육기부포털 및 채널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공고의 제안요청서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메타버스 체험관 홍보나 콘텐츠 관리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고,

실제 2025년 7월 현재 교육기부포털 공식 홈페이지의 메타버스 체험관을 방문하면 교육기부와 관련된 기관의 프로그램·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용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도라는 메타버스 체험관 개발 사업 취지에 공감하나, 이미 예산이 투입되어 개발된 플랫폼을 활용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정식운영 직후부터 방치한 것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됨.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일회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179]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4131-303) 사업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과 「평생교육법」 제19조의2[180]에 따라 설치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두 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음.

---

179) 문의: 02-6788-5186

180) **「평생교육법」**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55억 3,400만원으로, 54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4,3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9.2%임.

< 2024년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가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 운영	5,534	-	5,534	5,491	-	43	99.2
○ 국가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 운영	54	-	54	54	-	-	100.0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5,480	-	5,480	5,437	-	43	99.2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4~8일 간격의 국고보조금 교부 부적절

❑ 동 사업 내역사업 중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증진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인력 연수를 그 내용으로 함.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지역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 교부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17조[181]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여야 하며,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경상보조성격인 사업의 경우, 다른 법령에 교부방법과 절차가 정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해당 규정을 둔 것은 보조금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사업비가 부실·부정하게 집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중간 점검을 거친 후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18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그런데, 국립특수교육원의 동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59개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2월 7일 1차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2024년 2월 15일 2차로 보조금이 교부되어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이 두 차례 나누어 교부되었으나, 1차 교부와 2차 교부 사이의 기간이 8일에 불과함.

<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

자금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24. 02. 07.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고보조금 1차 교부	동해시청, 춘천시청 등 59개 지방자치단체
2024. 02. 15.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고보조금 2차 교부	동해시청, 춘천시청 등 59개 지방자치단체
2024. 05. 31.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고보조금 1차 교부	안성시청
2024. 06. 04.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고보조금 2차 교부	안성시청

자료: 국립특수교육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안성시에 대하여는 별도로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1차 보조금 교부 후 2024년 6월 4일 화요일 2차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의 간격을 두고 1차 교부금과 2차 보조금이 교부됨.

❑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점이 2월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도 전에 2차 보조금이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리지침의 취지에 따라 사업의 중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로, 2023년 동 사업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에도 6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4월 12일 1차 보조금 교부 후 7일이 지난 4월 19일 2차로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2차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4월 27일과 5월 4일, 3차로 선정된 지역에는 8월 30일과 9월 6일 각각 두 차례에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파악됨.

<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

자금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23. 04. 12.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고보조금 1차 교부	강릉시청, 동해시청 등 62개 지방자치단체
2023. 04. 19.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고보조금 2차 교부	강릉시청, 동해시청 등 62개 지방자치단체
2023. 04. 27.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2차선정 및 추가지원 국고보조금 1차 교부	남해군청, 영등포구청 등 8개 지방자치단체
2023. 05. 04.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2차선정 및 추가지원 국고보조금 2차 교부	남해군청, 영등포구청 등 8개 지방자치단체
2023. 08. 17.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대구 달서구 국고보조금 1차 교부	달서구청
2023. 08. 22.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대구 달서구 국고보조금 2차 교부	달서구청
2023. 08. 30.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3차 선정 지자체 국고보조금 1차 교부	안성시청, 노원구청, 군산시장
2023. 09. 06.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3차 선정 지자체 국고보조금 2차 교부	안성시청, 노원구청, 군산시장

자료: 국립특수교육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립특수교육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사업이 집행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특성상 1차 보조금 교부와 2차 보조금 교부 사이 간격이 길어지는 경우 예산 미확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나,

타 세부사업과의 형평성, 잘못된 관행의 고착화와 그에 따른 사업의 신뢰성 저하, 사업비 부실 집행의 우려 등 부작용을 고려할 때 동 사업 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국립특수교육원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따라 사업 중간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 영유아정책국

<일반회계>

1) 유아 사교육비 조사[182]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유아 사교육비 조사(1608-302)는 「유아교육법」 제3조의2제4항에 근거를 두고 유아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경감 등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 구체적으로 전국의 0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 표본(약 13,300여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24.7월~9월분) 현황을 조사하였음.

182) 문의: 02-6788-5192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액은 5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전액 집행됨.

< 2024년도 유아 사교육비 조사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유아 사교육비 조사	560	-	560	560	-	-	100
○ 유아 사교육비 조사	560	-	560	560	-	-	100
-일반연구비(260-01)	560	-	560	560	-	-	1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 필요

❑ 동 사업은 「유아교육법」 제3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18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임.

❑ 2024년도 예산액은 5억 6,000만원으로 통계청과 위탁계약을 통해 교육부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전액 집행됨.

---

183) **「유아교육법」**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2. 지역별·유형별 유치원 분포 현황
3. 유치원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아 정원 및 현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유아교육 지원 현황
6. 그 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 교육부는 2023년도 6월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추진과제 중 유아 사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확대[184] 및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다양한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확대 등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로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통계대행 기관으로 통계청을 선정('23. 8. 29.)하고,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계획 수립('24. 3. 13.) 및 업무협약(통계청, '24. 3. 26.)을 통해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한 것임.

구체적으로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통계대행사업으로 통계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위탁계약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집행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185]

---

184) 초등 입학을 대비한 유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만 5세 2학기에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으로 유아·학부모 대상 놀이중심 언어교육, 초1 통합교과 연계 등 초등 적응을 지원함
※ ('23.下) 전국 400개원(40억 원) → ('24) 1,000개원(100억 원) → 단계적 확대

185) < **유아 사교육비 조사 사업 집행절차** > 자료: 교육부

(교육부) 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총괄,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교부, 사업운영 지원, 표본·문항설계, 조사실시 지원·모니터링, 교육청·시도 및 현장 소통 지원 등

(통계청) 통계대행 총괄, 표본 추출·조사원 교육 및 조사 실시, 홍보, 입력·내검 지도, 통계조사 검증, 자료처리 및 집계, 예산 집행 및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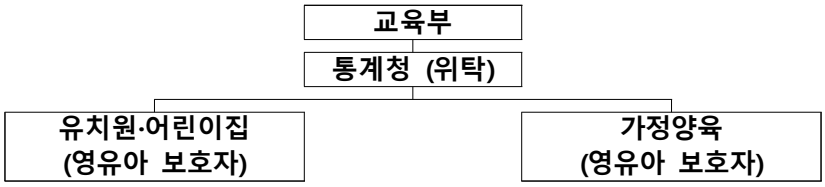

❑ 다만,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는 2017년도에 최초로 시행되었는데, 당시 조사 설계 및 문항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본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186]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본조사는 시행되지 않았고, 2024년도에 두 번째 시험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시험조사는 통계작성 대상이나 절차 또는 방법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 오차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조사로 본조사와 다르게 조사의 품질이 담보되지 않고, 공표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음.[187]

참고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통계청 주관하에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연 2회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공표를 통해 사교육비 연간 총액 규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등을 밝히고 있음.

❑ 한편, 현재 사교육 관련 법령으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

186) 교육부 보도자료(2017. 8. 28.), "교육부·통계청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및 가정양육자 대상, 시험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본조사 여부 결정)" 참고

187) **본조사는「통계법」제3조제1호에 따라**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한 조사로서 **조사품질이 담보되어 공표가 가능**하나, **시험조사는**「통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라 정부 또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또는 사후 확인과정에서 통계작성대상이나 절차 또는 방법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 오차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조사로서 **대외공개 목적이 아님**.

※ 다만, '2024년 유아사교육비 조사'의 주요 결과는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공표(2025. 3. 14.)시 함께 공개되었고, 동 자료는 통계청이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통계대행 방식으로 실시한 시험조사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므로 통계자료 이용 시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있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해당 법령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은 없음.

다만,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특성화 프로그램과 특별활동은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유아교육법」은 방과후 과정 운영과 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를 통해 사교육을 제한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은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188]

❑ 동 사업을 통해 유아의 사교육 이용과 비용 지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된다면 연령·가구소득·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여부·사교육 과목 등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 차이를 분석하여 공교육 정책 개선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초중고 사교육비 지출 경향과의 비교 및 연계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마련의

188)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보육과정)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입시 위주 중·고등학생 대상에서 '초등 의대반' 및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유아 사교육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189]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는 본조사와 다르게 조사의 품질이 담보되지 않고, 공표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자녀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교육비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되, 동 사업의 취지인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달성을 위하여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의 심층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본조사 시행을 통해 조사의 품질을 담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189) 데이터로 보는 사교육, 국회도서관, 『Data & Law』(2025-6호, 통권 제31호) 발간(2025. 7. 2.) 참고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2024년에 29조 원이 넘었으며, 초・중・고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이른다. 이는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의미를 넘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 기본권이 흔들리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되었다.

< 2025년 서울시 유아 사교육비 현황 >

우리나라 유아 대상 사교육은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영어 사교육비는 2025년 3월 31일 기준 약 143만 원으로 2020년 106만 원보다 약 35% 늘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포함한 학원 현황을 보면 강남・서초구가 65개로 타 자치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영어특성화 교육을 운영하는 유치원 현황도 모든 자치구에서 공립보다는 사립유치원에서의 비중이 크다(5. 31.기준). 출처: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2025. 6.)

2) 영유아보육료 지원[190]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료 지원(1633-331)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 활동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 구체적으로 내역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래에 0~2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연장보육료 지원, 미지급금 지원,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보육료 사업운영관리의 내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190) 문의: 02-6788-5192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액은 2조 6,73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1,770억원을 예비비로 배정하여, 예산현액은 2조 8,501억원으로 전액 집행됨.

< 2024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영유아보육료 지원	2,673,100	177,000	2,850,100	2,850,100	-	-	100
○ 0~2세 보육료	2,400,235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400,235	-	-	-	-	-	100
○ 장애아 보육료	71,109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71,109	-	-	-	-	-	100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28,309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8,309	-	-	-	-	-	100
○ 연장보육료 지원	77,485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77,485	-	-	-	-	-	100
○ 미지급금 지원	16,300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6,300	-	-	-	-	-	100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79,612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79,612	-	-	-	-	-	100
○ 보육료 사업운영 관리	50	-	-	-	-	-	100
-민간경상보조(320-01)	50	-	-	-	-	-	100

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내역사업 내에서 일괄 집행함에 따라 내내역사업별 집행액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음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영유아보육료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

❑ 동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191]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2세)에 대하여, 기관보육료 및 부모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임.[192]

< 2024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

(월 기준, 단위: 천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부모보육료	540	475	394	587
기관보육료	629	342	232	686
계	1,169	817	626	1,273

주: (부모보육료)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 부모의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 ※ 재원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
(기관보육료)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에 대해 0~2세, 장애아보육시 지원 ※ 1일 이상 출석시 전액 지원
자료: 교육부

191)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19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고보조율은 서울 35%, 지방 65%(차등보조율 ± 10%)임.

❑ 2024년도 예산액은 2조 6,731억원이고, ’24년도 보육시설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 배정(’24.10.2.)을 통해 1,770억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2조 8,501억원이며,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 2024년도 0~2세 보육료 지원 예산 산출내역 >

○ 0~2세 보육료 : 2,400,235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2,400,235백만원

가. ’23.1~5월 출생아 수 반영 6월 이후부터 중위추계 반영

・(0세반) (65,755×629천원 + 3,511×540천원 + 70,802×40천원)×12×69.4%

・(1세반) (132,196×342천원 + 148,036×475천원)×12×69.4%

・(2세반) (151,429×232천원 + 232,145×394천원)×12×69.4%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0~2세반 아동 全 계층
- (지원인원) (’24) 520천명
  *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아동 수 감소(전년 대비 △1.9%)
- (지원단가) 기관보육료 5.0%, 부모보육료 5.0% 인상
- (국고보조율) (’24) 69.4%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

구분		보육아동수(명)		보육료 지원단가(천원)	
		기관보육료 지원 (인건비 미지원 시설)	부모보육료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단가)	부모보육료 (지원단가)
0세반	’24년생	9,752	12,940 *부모급여 예산	629	-
	’23년생	53,357	70,802	629	40**
	’22년생	2,646	3,511	629	540
1세반	’22년생	34,620	52,524 *부모급여 예산	342	-
	’21년생	97,576	148,036	342	475
2세반	’21년생	151,429	232,145	232	394

※ 0~2세 보육료는 기관보육료(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보조금 지원) 및 부모보육료(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 바우처 지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률을 반영하여 예산 산출

* 부모급여 확대에 따라 만 0·1세 부모보육료는 부모급여 지원 예산에 반영

** 0세반에 재원하는 만 1세의 경우 보육료(54만원)가 부모급여(50만원)를 초과하므로, 50만원은 부모급여에 편성하고 차액인 4만원을 영유아보육료에 편성하여 지원

자료: 교육부

❑ 구체적으로 2024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의 '0~2세 보육료'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출생아 수 및 6월 이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값에 따른 0~2세 영아 수에 월별 보육료 이용률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인원을 월평균 52만명으로 산출하고, 보육료 지원단가에 평균 국고보조율 69.4%를 기준으로 최종 예산을 산출함.

❑ 그런데, 2024년도 8월까지 보육시설 이용 영아의 수가 이미 예산안 산출 시 예상인원인 52만명의 7.5%에 해당하는 3만 9,000명을 초과한 55만 9,000명에 달함에 따라, 교육부는 보육료 예산 부족을 사유로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24.9.30.)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음.[193]

---

193)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 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 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 2024년도 예비비 배정 일정(자료: 교육부) >

- (3~9월) 월별 부족액 추계, 부내 이·전용 가능 예산 파악 및 기재부 실무 협의
- (9.30.) 제42회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비비 대통령 재가
- (10.2.) 202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목적예비비 배정 통보(기재부→교육부)
- (10.2.) 변경내시 통보 및 지방비 편성 현황 제출 요청(교육부→시·도)

❑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육시설 이용 영아수가 증가한 것은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2022년도 어린이집 월별 이용률을 활용하여 보육료 지원 인원을 추계하였는데, 코로나-19의 감염상황 완화로 실제 어린이집 연령반별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함.

< 어린이집 연령반별 이용률 비교 >

연도	예산서상 이용률(n-2년) (A)			실제 이용률(n년) (B)				이용률 차이 (B-A)		
	0세반	1세반	2세반	0세반	1세반	2세반	평균	0세반	1세반	2세반
2020	16.2%	74.5%	86.3%	17.0%	74.6%	88.9%	60.2%	0.80%	0.10%	2.60%
2021	16.6%	75.3%	90.1%	18.7%	76.3%	89.4%	61.5%	2.10%	1.00%	△0.7%
2022	17.0%	74.6%	88.9%	21.1%	80.4%	91.8%	64.4%	4.10%	5.80%	2.90%
2023	18.7%	76.3%	89.4%	22.4%	85.0%	90.9%	66.1%	3.70%	8.70%	1.50%
2024	21.1%	80.4%	91.8%	22.9%	85.7%	91.5%	66.7%	1.80%	5.30%	△0.3%

자료: 교육부

❑ 그러나, 예산편성 시점에 차년도 '어린이집 이용률'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5년간 어린이집 평균 이용률은 2020년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도 예산 편성 시점인 2023년도에도 전년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경향'을 반영한 대상인원 추계 현실화를 통해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아울러, 동 사업은 2023년도에도 예산 편성 대비 지원 영아 수가 4만 9,000명 증가하였음을 사유로 예비비를 1,383억원 편성하여 집행한 바 있음.

한편,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194]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대상인원 추계 방법 현실화 등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향후 동 사업에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94) **「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2)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의 성과 관리 필요

❑ 영유아보육료 지원(1633-331)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는 수요 대비 부족한 어린이집 내 영아반 개설(유지) 유인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3.3.28)에서 제안되어 2024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도입되었음.

구체적으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195]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임.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지원기준 >

반구분	정원기준	지원반	지원인원	추가지원 단가
0세반 (0·1세혼합반)	3명	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	1명	(현원 2명) 629천원
1세반 (1·2세혼합반)	5명	현원 3명, 4명인 반 중 1개반	1~2명	(현원 3명) 684천원 (현원 4명) 342천원
2세반 (2·3세혼합반)	7명	현원 4명, 5명, 6명인 반 중 1개반	1~3명	(현원 4명) 696천원 (현원 5명) 464천원 (현원 6명) 232천원

* 지원단가(기관보육료): 0세(0·1세혼합반) 629천원, 1세(1·2세혼합반) 342천원, 2세(2·3세혼합반) 232천원

** 어린이집 1개소당 0세반(0·1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1세반(1·2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2세반(2·3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지원

자료: 교육부

19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이 있음(교육부 지침,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 368)

❑ 동 사업은 민간·가정어린이집 기준으로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의 영아가 재원하는 경우 보육료 수입으로는 보육교사의 임금 지급도 곤란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영아반 정원 미충족으로 인한 부족한 보육료 수입을 인센티브(보조금)를 통해 보전함으로써 어린이집 내 영아반 개설(유지)에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기관 이용을 원하는 영아가 언제라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보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영아반 입소 대기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보조금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수혜적 기능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이나 사업성과가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봄.

❑ 2024년도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의 본예산은 796억 1,200만원으로 이를 전액 집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예산 및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은 ’22년도 말 기준 연령별 반 개수 및 정·현원 현황을 반영하고 집행액은 ’24년도 말 기준 연령별 지원 반 개수를 반영하였음.

그런데, 모든 연령반에서 예산편성시 산출한 반 개수 대비 실제 집행한 반 개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집행액에 대한

산출 없이 예산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어 집행실적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예산 및 집행내역 >

'24년 예산 내역	'24년 집행 내역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79,612백만원 · (0세반) 6,190개×629천원×1명×12×69.4% · (1세반) 7,255개×342천원×1~2명×12×69.4% · (2세반) 7,674개×232천원×1~3명×12×69.4% ※ 연령별 반 개수와 지원단가 기준 인원은 '22년도 말 기준 어린이집 반 개수 및 정원/현원 현황을 반영한 사항임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79,612백만원 · (0세반) 7,078개×629천원×1명×12×69.4% · (1세반) 8,368개×342천원×1~2명×12×69.4% · (2세반) 7,751개×232천원×1~3명×12×69.4% ※ 연령별 지원 반 개수는 '24년도 말 기준

자료: 교육부

❑ 또한, 2024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도입된 동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2024년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감소 추세가 둔화[196]되었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개소당 영아반 개수, 각 연령반별 미개설된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비율 등을 통해 성과를 모니터링 중에 있다는 의견임.

< 민간 · 가정 어린이집 개소당 영아반 수 >

(기준: 각 연도 12월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개소당 영아반 수(개)	4.1	4.2	4.4	4.5	4.7

자료: 교육부

196) 민간어린이집 전년 대비 증감률 : ('22) △8.3% →('23) △8.6% → ('24) △7.9%
가정어린이집 전년 대비 증감률 : ('22) △12.8% →('23) △11.7% → ('24) △10.3%

<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 각 연령반이 미개설된 어린이집 비율 >

(기준: 각 연도 12월말, 단위: %)

구분	0세반 미개설	1세반 미개설	2세반 미개설	0세반, 0·1세 혼합반 미개설	1세반, 1·2세 혼합반 미개설	2세반, 2·3세 혼합반 미개설
2021년	44.5	31.2	27.7	21.0	10.0	27.1
2022년	38.8	30.2	28.3	18.1	9.7	27.7
2023년	34.3	26.9	29.7	16.7	8.6	28.9
2024년	30.2	23.3	24.2	14.8	8.2	23.3

자료: 교육부

❑ 그러나, 동 사업의 시행 전인 2021년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개소당 영아반 수는 증가하는 추세였고, 각 연령반별 미개설된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비율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의 도입으로 인한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보조금 사업의 수혜적 기능을 고려하여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시간제보육 지원[197]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시간제보육 지원(1633-336)’은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려는 사업으로, 부모에게는 시간제보육료를 지원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관리기관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함.

197) 문의: 02-6788-5192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액은 250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전액 집행됨.

< 2024년도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시간제보육 지원	25,005	-	25,005	25,005	-	-	100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24,505	-	24,505	24,505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4,505	-	24,505	24,505	-	-	100
○ 사업운영·관리	500	-	500	500	-	-	100
-민간경상보조(320-01)	500	-	500	500	-	-	1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시간제보육 통합반 확충에 따른 이용률 제고 필요

❑ 시간제보육 사업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시간단위로 지정된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19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및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시간제보육 운영 기준 >

구 분		내 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지원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

자료: 교육부(2024년도 시간제보육사업안내, p. 38)

❑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 이상 36개월

198)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⑤ (생 략)

미만의 영아이고, 제공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관리기관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임.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의 2024년도 예산액은 245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216억 4,000만원(88.3%)임.

❑ 한편, 동 사업은 2013년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기존에는 독립반 모형으로 정규보육반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시간제보육 담임교사 별도채용을 통해 운영했으나, 2022·2023년도 통합반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2024년도부터는 통합반 모형(181개반 → 1,197개반)을 중심으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대폭 확충하였음.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현황 >

(단위: 개소, 반, 연도말 기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시도	17	17	17	17	17	17	17	17
시군구	155	153	154	164	177	176	185	193
관리기관[1]	18	18	18	18	18	18	18	18
제공기관[2] (기관/반)	382 /437	373 /443	402 /490	578 /681	740 /857	796 /946 (독 816, 통 130)	827 /1,000 (독 819, 통 181)	1,675/ 2,033 (독 836, 통 1,197)

주1: '16년까지 시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7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
주2: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독립반만 운영, 2022년부터 독립반·통합반 구분
자료: 교육부

❑ 2024년도부터 본격 시행된 통합반 모형은 기존 독립반 모형과 달리 정규보육반 미충족 정원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면서 시간제 보육반으로 운영하는 모형으로, 별도의 보육공간을 마련하거나 담임교사를 채용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제공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연도별 이용현황 >

(단위: 개소, 반, 건, 시간, 연도말 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독립반	통합반
기관당 (평균)	이용건수	24	24	39	57	62	6
	이용시간	89	91	150	230	240	24
반당 (평균)	이용건수	20	20	33	48	53	5
	이용시간(A)	74	78	128	193	205	20
	이용아동수(B)	3	3	4	6	7	1
	이용시간/이용아동수(A/B)	28	30	29	32	29	20
1인당 (평균)	이용건수	6	8	7	8	7	6
	이용시간	25	31	28	31	28	25

자료: 교육부

❑ 다만,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년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연도별 이용현황을 보면, 기관당 평균 이용건수 및 이용시간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2024년도 본격 시행된 통합반의 경우 제공기관의 대폭 확충에도 불구하고 독립반 대비 이용실적은 저조한 상황임.

또한, 최근 3년간 통합반(시범사업 포함)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비 지원기준인 '직전 1년 반당 월 평균 이용시간 40시간'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제공기관의 비율이 각각 2022년 73.15%, 2023년 88.0%, 2024년 75.7%에 달하고 있음.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현황 및 지원기준 >

(단위: 개소, %)

<table>
<tr><th>연도</th><th colspan="2">계
(기관/반)</th><th>40시간 미만</th><th>4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th><th>80시간 이상</th></tr>
<tr><td>2021년</td><td colspan="2">740/857</td><td>255(34.46)</td><td>178(24.05)</td><td>307(41.49)</td></tr>
<tr><td rowspan="2">2022년</td><td rowspan="2">전체
796/946</td><td>통합반*[1)]
(108/136)</td><td>79(73.15)</td><td>20(18.52)</td><td>9(8.33)</td></tr>
<tr><td>독립반
(688/810)</td><td>73(10.61)</td><td>129(18.75)</td><td>486(70.64)</td></tr>
<tr><td rowspan="2">2023년</td><td rowspan="2">전체
827/1,000</td><td>통합반**
(125/181)</td><td>110(88.0)</td><td>12(9.6)</td><td>3(2.4)</td></tr>
<tr><td>독립반
(702/819)</td><td>10(1.42)</td><td>30(4.27)</td><td>662(94.30)</td></tr>
<tr><td rowspan="2">2024년</td><td rowspan="2">전체[2)]
1,675/2,033</td><td>통합반
(974/1,197)</td><td>738(75.7)</td><td>178(18.27)</td><td>58(5.95)</td></tr>
<tr><td>독립반
(717/836)</td><td>5(0.69)</td><td>26(3.62)</td><td>686(95.6)</td></tr>
<tr><td colspan="2" rowspan="2">지원기준
※ 통합반은 인건비 미지원</td><td>인건비(독립반)</td><td>1년간 미지원</td><td colspan="2">1년간 100% 지원</td></tr>
<tr><td>운영비(공통)</td><td>1년간 미지원</td><td>전월 실적
(80시간 이상)
충족 시 지원</td><td>1년간 100%
지원</td></tr>
</table>

주1: * 1차 통합반 시범사업('22.9.~'23.2.), ** 2차 통합반 시범사업('23.7.~'23.12.)
주2: 2024년 제공기관 합은 1,691개소, 이 중 독립반·통합반 모두 운영하는 기관 16개소
단, '24년 이용실적의 경우 시스템 상 '25년 이용확정 처리된 건은 미반영된 수치임
자료: 교육부

❑ 한편, ‘2024년 시간제보육 관련 설문조사[199]’에 따르면, 통합반 담임교사는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경감(92.8%), 자기개발시간 확보(91.6%) 등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으나, 통합반 이용아동의 적응 어려움이 정규반 아동 보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83.6%로 독립반 58.1% 대비 25.5%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시간제보육 이용 부모의 경우 시간제보육이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95.8%)고 인식하고, 서비스 이용 후 만족(평균 84.8점)한다는 의견(95.2%)이 많았으나, 시간제 유형으로는 독립반(70.0%) 대비 통합반(30.0%)의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인지 경로로는 지인소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200]

또한, 동 사업은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201]에서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상당수 가구가 제도를 모르고 있고,

199) 2024년 시간제보육 관련 설문조사(2024. 12.), 한국보육진흥원, pp. 18-22 참고

200) < 시간제보육 인지 주요 경로 > 자료: 2024년 시간제보육 관련 설문조사 p. 154, 편집 재구성

구분	지인소개	정부 및 지자체 홍보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온라인 매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2022년	36.1%	16.8%	15.9%	11.0%	12.0%
2023년	27.8%	12.7%	22.3%	7.4%	9.2%
2024년	35.7%	20.3%	16.9%	8.5%	7.3%

201)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pp. 1929-1930) 참고

- (성과 미흡)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상당수 가구가 제도를 모르고 있고, 사용자의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 아동 비율이 10%(2023년 기준)에 머물고 있음
- (집행관리 미흡) 현장 방문, 정기모니터링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하나 해당 실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반납 비율이 50% 내외에 머물고 있음

ㅇ 시간제 보육 이용률 제고를 위해 수요에 맞는 제공기관 공급 확대 및 이용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홍보물 배포, 부모 서포터즈 운영, SNS 등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동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해야 함

시간제보육 이용률 제고를 위해 수요에 맞는 제공기관 공급 확대 및 이용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성과 및 집행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도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확충에 있어 수요자의 제공기관 유형(독립반, 통합반)에 따른 선호를 반영하고, 시간제보육 독립반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한 통합반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시 · 도별 불균형 해소 필요

❑ 동 사업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2024년도에 통합반 모형을 중심으로 대폭 확충된 바 있고, 구체적으로 독립반과 통합반을 모두 합한 시·도별 제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4년도 시 · 도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현황 >

(단위: 명, 개소, 개, 24년 12월말 기준)

시·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6~36개월) (A)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보육반 당 대상자 수 (A/B)	2021년도 보육반 당 대상자 수
		시·군·구		보육 기관	보육반(B)		
		설치	미설치				
계	252,238	193	36	1,675	2,033	124.1	398.0
서울	42,134	25	-	232	296	142.3	439.3
부산	15,065	16	-	159	177	85.1	204.5
대구	11,218	8	1	104	117	95.9	344.5
인천	16,592	8	2	96	121	137.1	530.3
광주	6,621	5	-	76	80	82.8	253.4
대전	7,563	5	-	73	91	83.1	146.4
울산	5,599	5	-	49	61	91.8	336.1
세종	2,927	1	-	15	25	117.1	335.8
경기	76,741	27	4	293	366	209.7	1032.9
강원	7,150	13	5	58	71	100.7	319.3
충북	7,848	11	-	61	76	103.3	254.2
충남	10,308	11	4	51	65	158.6	508.4
전북	6,641	8	6	52	61	108.9	366.1
전남	8,264	15	7	78	92	89.8	187.1
경북	10,699	16	6	112	141	75.9	324.6
경남	13,920	17	1	116	127	109.6	374.5
제주	2,948	2	-	50	66	44.7	167.2
계	341,125	177	52	740	857	※21년12월말기준	

자료: 교육부

❑ 구체적으로 2024년도 12월말 기준 '시간제 보육반 당 대상자 수'는 평균 124.1명이고, 최대 209.7명(경기)부터 최소 44.7명(제주)까지 시·도별 기반시설의 편차가 있음.

지역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는 경기도가 7만 6,74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인천, 부산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시간제 보육반 당 대상자 수' 기준으로는 경기(209.7명), 충남(158.6명), 서울(142.3명), 인천(137.1명) 순으로 2021년도 대비 수급자 수는 감소하고, 보육반 개소 수는 증가함에 따라 제공기관 여건은 개선(평균 398.0명→124.1명, △68.3%)되었으나 시·도별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현황 비교(2021년, 2024년) >

구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보육반	보육반 당 대상자 수
2021년	341,125명	857개소	398.0명
2024년	252,238명 (△ 26.1%)	2,033개소 (137.2%)	124.1명 (△68.8%)

자료: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한편, '2024년 시간제보육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간제보육을 이용한 부모가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경우 '위치(접근성)'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응답이 47.5%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시간제보육 담임

교사 및 원장(20.8%), 제공기관 유형(14.8%) 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202]

❑ 따라서, 교육부는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의 목적이 영유아 양육 부모의 병원진료·외출·시간제 근로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거주지가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시·도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 2024년 시간제보육 관련 설문조사(2024. 12.), 한국보육진흥원, p. 21 참고

4)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20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1635-354)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법정 보수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203) 문의: 02-6788-5192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액은 13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3억 2,100만원을 전용(증)하여 예산현액은 16억 3,500만원으로 16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함.

< 2024년도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1,314	321	1,635	1,634	-	1	100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314	321	1,635	1,634	-	1	100
-일반수용비(210-01)	5	-	5	5	-	-	100
-사업추진비(240-01)	1	-	1	1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308	321	1,629	1,628	-	1	1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및 제23조의2[204]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임.[205]

❑ 동 사업은 2024년도에 본 예산으로 1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억 2,100만원을 전용(증)하여, 예산현액은 16억 3,500만원으로 16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함.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본경비를 제외한 2024년도 사업예산은 2023년도와 동일한 13억 800만원이나, 2024년도부터 조건부 온라인교육

---

204) **「영유아보육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1.>
③ 삭제 <2011. 8. 4.>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0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고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차등보조율 ± 10%)이며, 평균보조율은 48.0%임.

이수 허용 규정을 강화[206]함에 따라 집합교육에 대한 추가 교육 수요가 발생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1641-300)에서 3억 2,100만원을 전용('24.10.14.)한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동 사업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교육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2021년·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207]에서도 계획 대비 실적이 다소 낮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효과성이 낮으며,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최근 4년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실적 현황 >

(단위: 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32,331	29,225 (90.4%)	29,148	23,668 (81.2%)	24,773	21,403 (86.4%)	24,773	32,666 (132%)

자료: 교육부

206) **('24년도 온라인교육 규정 강화)** 연속 온라인 이수가 허용되는 조건 적용 예외 사유를 기존 "시도 집합교육 미개설 등"에서 '등'을 삭제하고 '시도 집합교육 미개설'로 제한

※ 보수교육 형태 관련 규정
○ (원칙) 집합교육
○ (조건부 온라인 과정 허용) 전차 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이수한 경우, 금차 교육은 집합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온라인 과정 이수를 허용
- (조건 적용 예외) 다만 해당 시도에서 '집합교육 미개설' 시, 연속 온라인 과정 이수 허용

207)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pp. 1836-1842(보건복지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pp. 1949-1955(보건복지부) 참고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영유아 보육 관련 사업이 이관됨

또한, 2024년도에는 계획 인원 대비 7,170명(일반직무교육 6,859명, 승급교육 311명)을 초과한 32,666명을 교육함에 따라 교육실적은 개선되었으나, 교육 수요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예산을 부족하게 확보함에 따라 전용을 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은 2021년도 이후 감소 추세로 2024년도는 2021년도 대비 46.9%('21년 24억 7,400만원 → '24년 13억 1,400만원[208]) 감소하였고,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와 동일함.

< 최근 4년간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사업시행주체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교부 현액	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21	2,474	-	2,474	△12	2,462	2,459	99.4	99.9	2,462	2,118	86.0
2022	2,227	-	2,227	-	2,227	2,212	99.3	99.3	2,211	1,777	71.8
2023	1,892	-	1,892	-	1,892	1,892	100.0	100.0	1,892	1,621	85.7
2024	1,314	-	1,314	321	1,635	1,634	124.4	99.9	1,628	1,487	113.2

자료: 교육부

❑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

208)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외 '누리과정 이수' 지원이 있었음.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보육교직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역량 유지·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을 정기적(3년마다 40시간)·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미이수하는 경우 자격정지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024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개요 >

□ (교육과정) 직무교육(일반직무 및 특별직무) 및 승급교육으로 구분
○ (직무교육) 어린이집 근무 이후 정기적으로 이수(매3년 마다 1회, 40시간)
- 일반직무교육: 모든 원장 및 보육교사
- 특별직무교육: 영아반, 장애아반, 방과후 반 담임교사 및 운영 원장
○ (승급교육) 원장 자격 취득 및 상위 자격 취득(3급→2급, 2급→1급)을 위한 교육(80시간)

< 교육분야별 대상자 및 교육시간 >

교육 분야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직무	일반직무교육	경력 3년마다	40시간
	특별직무교육 (영아·장애아·방과후)	업무시작 이전 (채용 6개월 이내)	
승급	2급 승급교육	3급 취득한 후 경력 1년 이상	80시간
	1급 승급교육	2급 취득한 후 경력 2년 이상	
	원장 사전직무교육	원장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제4항 [별표7]
* 법 제51조에 따라 보육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에 위임

□ (교육기관) 집합보수교육기관 83개소, 온라인보수교육기관 5개소('24년)
○ (집합) 시도에서 매년 공모 및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온라인) 교육부에서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제도 활용, 특별직무교육 실시 기관 선정 (2년 주기)

□ (예산 현황) '24년 1,308백만원
- (집합교육 지원단가) 일반직무교육 8만원, 승급교육 14만원
* (온라인교육) 고용부 환급과정으로 최대 11만원 적용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보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209)]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640-404)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지원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의 운영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 구체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9) 문의: 02-6788-5192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액은 1조 8,86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12억 9,400만원을 전용(증)하고 332억 5,40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증)하여, 예산현액은 1조 9,408억 5,4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함.

< 202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본예산)	내역 변경 (24.8.9.)	전용 (24.10.15.)	예비비 (24.10.2.)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계	1,886,306	-	21,294	33,254	1,940,854	1,940,854 [1,906,837]
①보육교직원 인건비	1,123,712	-	932	33,254	1,157,898	1,157,898 [1,146,698]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927,625	-	932	31,053	974,915	974,915 [959,958]
- 영아전담 어린이집	38,880	-	-	217	35,081	35,081 [34,316]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52,309	-	-	550	56,534	56,534 [55,230]
- 방과후 교사	702	-	-	-	252	252 [627]
- 그 밖의 연장형 교사	68,630	-	-	663	54,475	54,475 [57,768]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35,566	-	-	771	36,641	36,641 [38,801]
②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46,170	2,846	20,362	-	269,378	269,378 [265,188]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16,725	3,006	20,193	-	239,918	239,918 [236,472]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6,430	△712	15	-	5,729	5,729 [5,420]
-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23,015	552	154	-	23,731	23,731 [23,296]

구분	예산액 (본예산)	내역 변경 (24.8.9.)	전용 (24.10.15.)	예비비 (24.10.2.)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③보조, 대체교사 지원*	**486,377**	**△1,022**	**-**	**-**	**485,355**	**485,355 [469,762]**
- 보조교사(연장교사)	427,841	62	-	-	427,247	427,247 [415,502]
- 대체교사	58,536	△1,084	-	-	58,108	58,108 [54,259]
④어린이집 운영지원*	**30,047**	**△1,824**	**-**	**-**	**28,223**	**28,223 [25,189]**
- 교재교구비	9,592	8	-	-	9,600	9,600 [9,332]
- 차량운영비	8,699	△894	-	-	7,805	7,805 [7,430]
- 농어촌소재법인 어린이집 지원	961	43	-	-	1,004	1,004 [991]
- 급식위생관리지원금	10,795	△981	-	-	9,814	9,814 [7,436]

주: ③보조, 대체교사 지원, ④어린이집 운영지원 내내역사업 예산현액은 변경내시 후 금액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

❑ 동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210]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임.[211]

2024년도 예산액은 1조 8,863억 600만원이며,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예산 부족으로 전용을 통해 212억 9,400만원과 예비비 배정('24.10.2.)을 통해 332억 5,4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1조 9,408억 5,400만원이고,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① '보조, 대체교사 지원' 예산 중 10억 2,200만원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 18억 2,400만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내역변경하고('24.8.9.), ②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부족분을 전용

---

210)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 7. (생 략)

2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고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차등보조율 ± 10%)임.

('24.10.15.)과 예비비('24.10.2.[212]) 편성을 통해 충당함.

< 202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이·전용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 변경 ('24.8.9.)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40-404) 보조, 대체교사 지원	330-01	1,02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40-40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30-01	예산 편성과 실집행 간 국고보조율 차이, 실제 평균호봉 미반영된 인건비 단가 차이 등으로 인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부족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40-404) 어린이집 운영지원		1,824			
전용 ('24.10.15.)	가정양육수당 지원(3141-300)	330-01	21,294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40-40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30-0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부족

자료: 교육부

212)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 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 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 2024년도 예비비 배정 일정(자료: 교육부) >

- (3~9월) 분기별 부족액 추계, 부내 이·전용 가능 예산 파악 및 기재부 실무 협의
- (9.25.)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비비 요구안 제출(교육부→기재부)
- (9.30.) 제42회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비비 편성(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대통령 재가
- (10.2.)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일반예비비 배정 통보(기재부→교육부)
- (10.21.) 변경내시 수정 통보, (11.1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교육부→시·도)

❑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213]에 따라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이고, 예비비 또한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214]에 따라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임.

이에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된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해야 할 보충성을 가지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고,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지출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213)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214) **「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 따라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법령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215]의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로 지급대상, 지급단가 및 국고보조율을 고려하여 사전에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편성 시 ① 국고보조율은 51.8%였으나, 실제 국고보조율은 52.8%로 국고보조율 증가분이 미반영된 점과 ②보육교직원별 인건비 지원단가에 전전년도 보육교직원별 평균 호봉을 반영하여 예산을 산출하는데, 편성 단가가 실제 단가 대비 95~96%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었고, ③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인원을 실제 지급 인원 대비 약 1만명 부족하게 산정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였다는 설명임.

❑ 그러나, 교직원 호봉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보육교직원 호봉변경사항 보고 등을 통해 변동추이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최근 5년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경력교사 평균호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21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이 있음(교육부 지침,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 368)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경력교사 평균호봉 >

연도별 평균호봉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치료사	특수교사
		영아	유아			
2020년(11월)	19.9	7.9	6.9	6.7	5.9	7.9
2021년(11월)	20.7	8.4	7.5	6.9	6.5	8.8
2022년(11월)	21.1	8.8	7.8	7.0	6.8	9.6
2023년(11월)	21.6	9.1	8.6	7.0	7.3	10.4
2024년(11월)	22.1	9.5	9.6	7.1	7.6	11.2

자료: 교육부

❑ 또한, 동 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부족으로 2022년도에 179억원을 전용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전용('23.11.1., '23.12.5.)을 통해 311억 6,800만원, 예비비 배정('23.11.29.)을 통해 292억 5,4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예산 편성 시 적정 국고보조율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대상 인원 및 단가 산출에 주의를 다하는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동 사업에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01] 유보통합)[216]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502-302)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제2항제1호[217]에 근거를 두고,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하는 재원임.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중 정책사업 '1. 국가책임 교육·돌봄'의 단위사업인 '[1-01] 유보통합'은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하고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하기 위하여 현장 요구 및 학부모 수요가 높은 주요과제(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등)를 중심으로 유보통합 과제를 우선 적용하고자 하려는 사업임.

---

216) 문의: 02-6788-5192

2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결산개요

❑ 2024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예산현액 1조 2,008억 5,200만원 중 1조 1,350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657억 9,4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4.5%임.

< 2024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특별교부금	2,534,740	-	2,534,740	2,395,842	-	138,898	94.5
국가시책	1,200,852	-	1,200,852	1,135,058	-	65,794	94.5

자료: 교육부

< 2024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

(단위: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교부액
1. 국가책임 교육·돌봄	[1-01] 유보통합	27,096
	[1-02] 유아교육	41,604
	[1-03] 늘봄학교	205,384
	[1-04] 기초학력보장	200,800
	[1-05] 특수교육	30,449
	계	505,333
2. 디지털 교육혁신	[2-06] ~ [2-08] 이하 생략	197,916
3. 공교육 경쟁력 제고	[3-09] ~ [3-19]	192,218
4. 교육복지 지원	[4-19] ~ [4-20]	65,806
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5-21] ~ [5-24]	88,227
6. 진로·직업교육	[6-25] ~ [6-27]	113,107
7. 행·재정지원	[7-28] ~ [7-30]	28,779
합계		1,191,387

자료: 교육부

❑ 2024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중 단위사업 '[1-01] 유보통합'의 교부금은 270억 9,600만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① 유보통합 시범운영, ② 유보통합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후속조치, ③ 유보통합 비용지원 구조 적용을 위한 시스템 시범 운용, ④ 유보통합포털(누리집) 및 유치원 입학 시스템 기능 개편이 있음.

< 유보통합 사업의 시 · 도별 교부현황 >

(단위: 백만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785	1,018	2,775	3,249	979	795	1,346	518	5,28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637	1,578	854	1,409	817	1,406	878	767	27,096

자료: 교육부

< 유보통합 사업의 주요성과 >

① 유보통합 시범운영

○ (개요) '24년 하반기부터 학부모 요구가 높은 유보통합 모델을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전국 150개 기관을 선정하여 '상향평준화 과제' 수행

【2024년 영·유아학교 선정 현황】

기관 수									
총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직장
150	66	7	59	84	25	24	14	13	8

○ (주요 성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4.68점(5점 만점 기준)으로, 특히 '교사의 수업 준비 정도' 및 '충분한 이용시간 보장'에서 높게 응답

② 유보통합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후속조치

○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

- 해설서, 놀이실행자료(0~1세, 2세),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 자료(이주배경·장애·발달이 느린 영아), 총 4권 개발·보급
- 강사, 컨설팅단,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대면/실시간 온라인 연수 추진(총 75,569명 이수), 연수 만족도 조사 결과 4.51점(5점 만점 기준) 결과 도출

③ 유보통합 비용지원 구조 적용을 위한 시스템 시범 운용

○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지원구조 일원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2024. 10. 11.)

○ 「경기도교육청-양주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 협력 업무협약(2024. 11. 12.)

④ 유보통합포털(누리집) 및 유치원 입학 시스템 기능 개편

○ (입학·입소 신청창구 일원화) 학부모 편의를 위해 일원화된 입학·입소 신청창구인 유보통합포털 공식 개통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 (편의성·친숙도 제고) 어린이집, 유치원 비교·검색을 위한 위치기반 통합검색과 핵심어(키워드) 검색 기능 구현 등 선택권 확대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 유보통합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교육과 돌봄 기관이 이원화되어 기관선택에 따라 서비스의 질 차이로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애 초기 영유아 단계부터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출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로 추진되었음.

이에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2024.6.27. 시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였고,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2024.6.27.)'을 통해 5대 상향평준화 과제와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를 제시함.[218)]

❑ 또한,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하고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하기 위하여 현장 요구 및 학부모 수요가 높은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자,

---

218)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교육부, 2024.6.27.

- **5대 상향평준화 과제**
  :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교사 처우 개선 등,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적용, 설립·운영 기준 마련
-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
  :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교육부는 5대 상향평준화 과제 중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제외한 4대 상향평준화 과제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수행함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시범학교(現유치원·어린이집)는 기관의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상향평준화 과제를, ‘시범교육청’은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등 유보통합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영유아 교육·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 2024년도 (가칭)영 · 유아학교 시범사업 주요 운영 내용 >

[시범학교(現 유치원·어린이집) 주요 운영사항]

◦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8h)과 맞춤형 돌봄(4h) 체계 마련, 교육·돌봄 공백 해소

◦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학급의 여건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추진

◦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보육 역량 강화 및 학부모 수요·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연구 및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교사 역량 강화 기회 보장

[시범교육청 주요 운영사항]

◦ 시범학교 지원: 시범학교 지정·관리, 시범학교 지원체계 구축 등

◦ 교육청 단위의 특색사업계획 예시: 지역사회 협력 구축, 영유아 교사 역량 강화, 영유아 정서·사회·심리 발달 지원 및 특수교육 인프라 확대, 영유아 교육·보육 책무성 강화 등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단위사업 [1-01] 유보통합) 270억 9,600만원 중 ‘유보통합 시범운영’ 관련 교부금액은 203억 7,700만원이고, 시·도교육청은 198억 5,700만원(97.4%)을 집행함.

< 2024년도 유보통합 시범운영 특별교부금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5년 6월말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교부	1,128	746	2,546	2,952	781	601	1,188	404	2,561
집행	1,074	704	2,546	2,913	756	601	1,085	394	2,526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교부	1,439	1,376	587	1,185	586	1,120	541	636	20,377
집행	1,392	1,353	581	1,157	533	1,117	539	586	19,857

자료: 교육부

❑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2024년도 9월에 교육청을 통해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을 150개소 선정하고, 컨설팅·모니터링·만족도조사('24. 11. ~12.)와 시범기관 성과평가('25. 1.)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는 '교사의 수업 준비 정도' 및 '충분한 이용시간 보장'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설명함.

❑ 다만, 교육부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2024년도 하반기부터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선정한 전국 150개 시범기관의 상향평준화 과제 수행으로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으나, 시범사업 추진으로 충분한 이용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등 당초 설정한 목표 대비 과제 수행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4년도에는 짧은 사업기간(6개월)으로 인하여 충분한 성과를 얻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으나, 사업 기간이

확보된 동 사업 2차년도(2025년도) 이후부터는 지역별 우수사례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여건에 맞게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4대 상향평준화 과제별 운영 기준(안) 제공 등의 사업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2024년도 영 · 유아학교 시범기관 선정 현황 >

(단위: 개소, %)

구분	총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직장
선정 기관*	150 (35,667)	66 (8,280)	7 (5,122)	59 (3,158)	84 (27,387)	25 (6,521)	24 (8,181)	14 (1,794)	13 (9,586)	8 (1,305)
선정 비율(%)	100	44.0	4.7	39.3	56.0	16.7	16.0	9.3	8.7	5.3

* ( )안 숫자는 전체 대상 기관 개소 수

시도[219]	총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공립 단설	공립 병설	사립	계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직장
서울	7	3	-	-	3	4	2	1	-	1	-
부산	6	3	-	-	3	3	1	1	1	-	-
대구	43	21	1	4	16	22	6	7	3	3	3
인천	8	4	-	-	4	4	2	1	1	-	-
광주	5	2	-	-	2	3	1	-	1	1	-
대전	5	1	-	-	1	4	-	1	1	1	1
울산	6	2	-	-	2	4	1	1	1	1	-
세종	5	1	-	-	1	4	1	1	-	1	1
경기	6	3	1	1	1	3	1	1	1	-	-
강원	5	1	-	-	1	4	1	1	1	1	-
충북	6	3	-	-	3	3	2	-	1	-	-
충남	6	2	-	-	2	4	1	1	-	1	1
전북	6	3	-	-	3	3	1	1	1	-	-
전남	6	3	-	-	3	3	1	1	-	-	1
경북	20	10	-	-	10	10	2	5	1	1	1
경남	4	1	-	-	1	3	1	1	-	1	-
제주	6	3	-	-	3	3	1	-	1	1	-
계	150	66	2	5	59	84	25	24	14	13	8

주: 법인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포함)
자료: 교육부

219) 당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6개 기관 이상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각 교육청별 6개 내외의 기관을 선정한 경우가 일반적이나, 대구·경북교육청은 관내에 이미 자체적으로 구축한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지원 체계'에 맞춰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시범기관 수를 늘리고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동 사업을 추진함

❑ 또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시범기관 선정 현황을 보면 전체 참여 유치원 66개소 중 전체 유치원의 약 62%에 해당하는 국공립유치원의 참여(7개소, 10.6%)가 오히려 사립유치원(59개소, 89.4%)과 비교하여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음에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됨.

이에 교육부는 2025년도에는 일부 기관이 아닌 전체 영유아가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기관 간 상이한 교육·보육 여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평준화하여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을 보완·검증함으로써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할 계획이라는 의견임.[220]

220) 2025년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계획(2025. 3.), 교육부

○ **(사업목적)**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 현장 구현
- 기관 간 상이한 교육·보육 여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평준화하여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을 보완·검증하고, 유보통합 체감도 제고
○ **(지원기간) ‘25.3월 ~ ‘26.2월(1년간)**
○ **(지원대상)** 시·도교육청
○ **(지원예산)** 특별교부금 총 935억원 ※ 위탁사업비 포함
○ **(지원내용)** ①既선정된 영유아학교 계속 지원(‘24년~), ②전체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육청별 특색사업 로드맵(‘25년~) 마련·추진 지원

❑ 동 사업이 목표로 하는 상향평준화 과제가 실현된다면 기관의 운영 시간이 확대되고,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으로 교육·보육여건이 개선되며, 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와 함께 수요를 반영한 교육·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및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임.

다만, 이러한 상향평준화 과제는 종전부터 교육·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과제들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와 함께 유보통합 실행 주체인 관련 기관과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시·도교육청마다 '4대 상향평준화 과제'를 수행하는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범사업 추진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상향평준화 과제에 대한 시·도별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통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유보통합 모델을 현장에서 보완·검증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유보통합 실행 주체인 관련 기관 및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7. 학생건강정책국

<일반회계>

1) 학생건강지원강화[221]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학생건강지원강화(1235-300) 사업은 학생의 불안·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 정신건강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교직원의 학생건강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내 심리적 위기 상황 발생 시 학생·교직원 등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 인건비, 운영비, 직접사업비(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학교위기개입 지원)를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1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뇌연구원 학생정신보건센터가 교육부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1단계(2014~2016년) 및 2단계(2017~2019년) 사업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추진하였고, 3단계(2020~2022년) 및 4단계(2023~2025년) 사업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추진하였음.

221) 문의: 02-6788-5184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현액은 10억 5,400만원으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전액 교부되었음.

< 2024년도 학생건강지원강화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학생건강지원강화	1,054	-	1,054	1,054	-	0	100.0

나) 검토의견

(1) 학생 중심의 사업 방식 변경 및 사업성과 관리 필요

❑ 동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2024년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교부된 예산액 10억 5,400만원 중 10억 4,300만원이 집행되고 1,100만원이 불용되어 실집행률은 99.0% 수준으로,

< 2024년도 학생건강지원강화사업의 예산 실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학생건강지원강화	1054	-	1054	1043	-	11	99.9
○ 인건비	360	-	360	350	-	10	
○ 경상운영비	74	-	74	74	-	-	
○ 직접사업비	620	-	620	619	-	1	
- 교육연수	264	-	264	239	-		
- 프로그램 개발·활용	295	-	295	226	-		
- 학교위기개입 지원	61	-	61	59	-		
- 간접비	-	-	-	95	-		

자료: 교육부

교육부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내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이를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학생건강지원강화 사업 운영체계 >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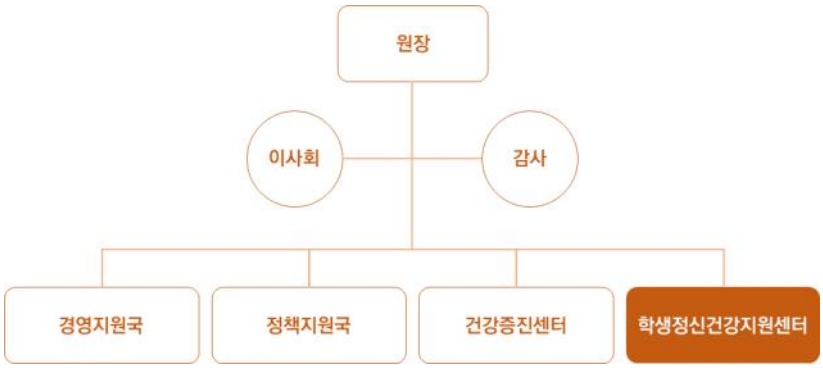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조직>

자료: 교육부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는 3가지 내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① '학생 정신건강 관련 교육·연수'는 교직원(학교관리자 포함)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운영하여 이들의 학생정신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② '학생 정신건강 관련 자료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학생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며 학교, 교육청 등에서 활용 가능한 학생 발달 수준에 적절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임.

마지막으로, ③ '학생 정신건강 관련 위기개입 및 심리치유 지원'은 학교 등에서 재난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심리치유를 지원하는 내용임.

< 제4단계 학생정신건강지원강화 사업 중점 추진 방향 >

추진 목표	학생의 건강한 성장 지원
추진 전략	**주요 추진 과제**
1. 학생 정신건강 관련 교육·연수	1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교사 생명지킴이 교육 강사 양성 2 초·중등 교원 정신건강 역량강화 교육·연수 3 학생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
2. 학생 정신건강 관련 자료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4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시행 및 도구 개선 지원 5 학생정신건강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6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7 교사용 학생 생명지킴이 교육 관련 지원 8 학생정신건강 지원센터 누리집 지속 운영 및 정보제공
3. 학생 정신건강 관련 위기개입 및 심리치유 지원	9 학생정신건강사업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 및 교류 강화 10 학교·교육청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및 현장 지원·컨설팅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은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내용이 간접적인 측면의 연수・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영역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2023년까지는 학생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내역사업이 존재하였는바, '1-3. 학생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을 '찾아가는 학생-학부모 정신건강 힐링데이'의 형태로 운영하였음. 이는 연 4회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과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정책 대상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였음.

< 찾아가는 학생-학부모 정신건강 힐링데이(~'23) 개요 >

학생-학부모 정신건강 교육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심리치료지원 및 사례관리 (필요시)
- 정신건강 증진교육 - 고위기 학생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홍보	▶	- 정신건강 전문의 등 현장상담 - 고위기 학생 전문기관 연계		- 고위기 학생 사례 관리 연계 · 전문심리검사 진행 · 치료비 지원
찾아가는 학생-학부모 정신건강 힐링데이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연계

*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방문사업단 거점센터로 연계
자료: 교육부

❑ 그러나, 2024년부터 이를 교사 및 사업 담당자만 참여하는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 학교급별 수업과정(안) 현장적합성 검토와 회의 및 협의회 개최로 변경하였고, 현재 동 사업 내에 학생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내역사업은 부재한 상황임.

< 1-3. 학생 정신건강 증진 사업 운영 실적 >

기간	내용	참가인원
2024. 10.	학교급별 프로그램 현장적합성 검토·평가	교사 41명
	교사진 회의	교사 42명
	담당자 협의회	담당자 8명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지원은 교육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도교육청 지원 및 교원 연수에 집중하는 것이 상대적인 비교우위에

기반한 운영으로 판단되어 사업 내용을 재편하게 되었다고 밝힘.

❑ 그러나, 교육부가 과거 '찾아가는 학생-학부모 정신건강 힐링데이'를 운영하였던 것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222], 유사 사례로 보건복지부 또한 '정신경강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서 마약 중독자 치료비 지원, 세월호 피해자 등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과 같이 직접수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사업 내용이 프로그램 개발 등 간접적 지원 형태로 재편되더라도, 해당 지원이 교육 현장에서 직접 대상자인 학생에게 실효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이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 「2024년 학생건강지원강화 사업계획서」에서는 각 추진과제(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연수횟수, 교재・보고서 건수 등 성과의 양적 산출에 치우친 지표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존재하지 않음.

222) 교육부, 「2023년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사업계획서」, 27p

< 2024년 사업별 성과지표 총괄표 >

내역사업명	성과지표	성과목표
1-1.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교직원 생명지킴이 교육 강사 양성	생명지킴이 교육 강사 양성	340명
	연수 횟수	대면 5회 보수교육 3회
	교육 만족도	83점
1-2. 초·중등 교원 정신건강 역량강화 교육·연수	교육 인원 수	1,050명
	연수 횟수	비대면 3회 대면 1회
	교육 만족도	83점
	원격 연수 만족도	83점
1-3. 학생 정신건강 증진 사업	학교급별 시범 운영 학급 수	2학급
	교육 만족도	83점
2-1.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시행 및 도구 개선 지원	협의회 및 설명회	2회
	보고서 건수	1종
	매뉴얼 건수	1종
2-2. 학생정신건강 관련 공공데이터 수집·분석	제공 건수	1건
2-3.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프로그램 교재 건수	4종
2-4. 교사용 학생생명지킴이 교육 관련 지원	동영상 교육자료 건수	1종
2-5. 학생정신건강 지원센터 누리집 지속 운영 및 정보제공	카드뉴스 및 뉴스레터	30건
3-1. 학교 및 교육청의 위기대응 현장 지원 및 컨설팅	학교관리자 학교위기대응 연수 횟수	2회
	시도교육청 위기대응 역량강화 연수 횟수	2회
	학교 응급 심리지원(PFA-s) 횟수	5회
	학교 응급 심리지원(PFA-s) 만족도	83점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는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별 격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수정하고, 최종 수요자인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 사업분야별 추진실적 및 성과[223]

1 학생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연수

□ 추진 실적

연번	세부사업명	실적		운영 만족도
1-1	교원 학생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요원 양성	신규 교육	5회/335명	96점
		보수 교육(기초)	1회/310명	90점
		보수 교육(심화)	2회/50명	94점
1-2	초·중등 교원 학생정신건강 역량강화 교육·연수	일반교사 대상	저경력 581명	90점
			경력교사 1,924명	91점
		정신건강업무담당 교사 대상	(기초) 온라인 1,501명	87점
			(심화) 대면 257명	96점
		원격연수	4개과정/ 9,402명	-
1-3	학생정신건강증진사업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현장 적합성 검토	41건 (교사 41명, 총 224회 교육)	-
1-4	학생 우울 및 스트레스 관련 특별연수	전국 시도교육(지)청 Wee센터 실장 대상	144명	81점

□ 추진 성과

연번	세부사업명	주요 성과지표	구분		달성률
			목표	결과	
1-1	교원 생명지킴이(게이트 키퍼) 강사요원 양성	생명지킴이 강사요원 양성	340명	335명	98.5
		교육 만족도	83점	96점	115.7
1-2	초·중등 교원 정신건강 역량강화 교육·연수	교육 인원 수	1,050명	4,263명	406%
		교육 만족도	83점	91점	110%
		원격 연수 만족도	85점		-
1-3	학생정신건강증진 사업 운영	검토 횟수	-	41건 (총244회)	-
1-4	학생 우울 및 스트레스 관련 특별연수	교육 인원 수	-	144명	-
		교육 만족도	-	81점	-

223) 한국교육환경보호원, 「2024년 학생건강지원강화사업 결과 보고서」, 2025.4.

2 학생정신건강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연구 · 개발

□ 추진 실적

연번	사업명	실적
2-1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시행 및 도구개선 지원	
	- 교육(지)청 업무 담당자 대상 설명회	2회
	- 매뉴얼 종합본 및 요약본	2종
	- 교육(지)청 업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인원 141명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종합분석 보고서	1종
2-2	학생정신건강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1종
2-3	학생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4종*
2-4	교사용 학생 생명지킴이 교육관련 지원	
	- 초등교사 대상 학생자살예방인식개선 생명지킴이 교육자료	1종
2-5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누리집 지속 운영 및 정보제공**	
	- 학생용(카드뉴스), 교사 및 학부모용(뉴스레터)	55종
	- 학생용 카드뉴스 영상	11종
	- 특별기획 영상	3종
2-6	학생정신건강 증진 전문기관 발전 방향 연구	1종

* 초등 저·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 학생용 42종, 교사용 12종, 학부모용 15종

□ 추진 성과

연번	세부사업명	주요 성과지표	구분		달성률
			목표	결과	
2-1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시행 및 도구개선 지원	협의회 및 설명회	1회	2회	200%
		매뉴얼 및 요약본	2건	2건	100%
		보고서 건 수	1건	1건	100%
2-2	학생정신건강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제공 건 수	1종	1종	100%
2-3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보고서 건 수	4종	4종	100%
2-4	교사용 학생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 교육 관련 지원	교육자료	1종	1종	100%
2-5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누리집 지속 운영 및 정보제공	뉴스레터 건 수	30종	69종	115%
2-6	학생정신건강 증진 전문기관 발전방향 연구	보고서 건 수	1종	1종	100%

3 학생정신건강 관련 위기개입 및 심리치유 지원

□ 추진 실적

연번	사업명	실적	만족도
3-1	학교관리자 학교위기대응(심리회복) 교육	2회(13,110명)	91점
	시·도교육청 학교위기대응 역량 강화 교육	2회(195명)	94점
	학교위기개입 지원		
	- 핫라인(대응컨설팅 및 정보제공)	49건	-
	- 학교응급심리지원(PFA-s)	2회	90점
	- 학교응급심리지원 안내서 개정	1회	-

□ 추진 성과

연번	세부사업명	주요 성과지표	구분		달성률
			목표	결과	
3-1	학교·교육청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및 현장 지원·컨설팅	학교 관리자 재난대응교육 횟수	2회	2회	100%
		시·도교육청 학교 위기대응 역량 강화 교육 개최 횟수	2회	2회	100%
		학교응급심리지원(PFA-s) 횟수	5회	2회	40%
		학교응급심리지원(PFA-s)만족도	83점	90점	108%

(2)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동 사업은 법적 근거는「학교보건법」 제2조 및 제16조의2[224]로, 제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의2는 교육부장관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산하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16조의2제3항은 해당 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출연**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224)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국내외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생 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2는 2021년 9월 「학교보건법」 개정[225]으로 신설된 조문으로, 동 사업은 2014년부터 보조사업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에 관한 법적 근거만 마련된 것임. 이후에도 동 사업은 출연사업의 형태로 전환되거나 보조에 대한 별도의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보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과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226], 개별 보조사업마다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적으로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례가 일반적임.

아울러,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227]하고 있어, 보조사업 편성 시 법적 근거의 명확성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 상황임.

---

2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2호, 2021. 9. 24., 일부개정]

2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27)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5. p.100.

❑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의 자의적 보조금 편성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있음. 한편,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도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1-1 보조사업의 필요성 (30점)	①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등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지를 고려
	② 보조금 외 다른 정책수단은 없는지,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는지 고려
	③ 보조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지 고려
(중 략)	
1-4 보조사업 법적 근거 (감점 최대 △5점)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한지를 고려**
(중 략)	
1-5 사회적 책임 실현 (가감점 최대 △3점 ~ +3점**)	① 사회적 책임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고려
	②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회적 책임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를 고려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상 출연 근거 외에도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여,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분할교부할 필요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은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분할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228].

❑ 이러한 원칙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음[229]. 그러나, 2024년 교육부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10억 5,400만원의 예산 전액을 ’24.3.25. 단 한 차례에 걸쳐 모두 교부한 사실이 있음.

---

228) 기획재정부,「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1. p.95.

229)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24년 보조금 교부내역 >

1차	2차	3차	4차
1,054백만원 (24.3.25. 교부)	-	-	-

자료: 교육부

❑ 과거 교부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에도 1차에 걸쳐 10억 9,300만원 전액을 교부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 역시 집행지침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2022~2023년 국고보조금 교부 내역 >

구분	1차	2차	3차	4차
2022년	1,093백만원 ('22. 2. 17. 교부)	-	-	-
2023년	700백만원 ('23. 3. 17. 교부)	336백만원 ('23. 5. 11. 교부)	-	-

자료: 교육부

❑ 보조금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한 것은 단순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업 점검과 지도·감독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음.

즉, 교육부가 1차에 보조금 전액을 교부할 경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사업을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해 지도·감독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24년 사업의 경우에는 신속 집행 기조 등을

고려해 1차에 전액을 교부했다고 설명함. 다만, 향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맞게 2025년에는 3회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계획임을 밝힘.

< 2025년 국고보조금 교부 내역 및 계획 >

구분	1차	2차	3차(예정)
2025년	480백만원 ('25. 4. 8. 교부)	269백만원 ('25. 5. 8. 교부)	305백만원 ('25. 하반기 교부 예정)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는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통제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국고보조금 교부 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본래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보조금은 최소 2회 이상으로 분할 교부할 필요가 있음.

2) 교육급여[230]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육급여(1131-300)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12조[231]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부터 바우처로 급여 지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232]과 함께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하여 출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수행되었음.

---

230) 문의: 02-6788-5184

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교육급여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232) 「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에 따라 교육급여의 비용은 국가와 시·도 및 시·군·구가 분담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율은 2023년 83.06%, 2024년 82.76%였음.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현액은 1,603억 7,900만원으로, 1,603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9.9%임.

< 2024년도 교육급여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교육급여	160,399	-	160,399	160,379	-	20	99.9

나) 검토의견

(1) 바우처 방식으로 감소한 수급 인원을 다시 확보할 필요

❑ 동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약 31만 명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급여 항목은 ① 교육활동지원비, ② 교과서비, ③ 입학금 및 수업료로 구분되고, 이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의 형태로 지급됨.

이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각종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급여로, 과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2023년부터 바우처의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교과서비와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별 실비로 지급됨.

< 교육급여 지급내역 및 지급방법 >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1명당 461,000원	연1회 일괄지급	개인별 바우처 지급
중학생		1명당 654,000원		
고등학생		1명당 727,000원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학교별 실비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배부하되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학생들과 구별 없이 배부하고 교과서대 징수 시 교육급여 수급자 교과서대금 인출 유보
자료: 교육부,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 한편,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을 위한 추진체계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한 급여 지급 자료 생성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1억 5백만원,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19억 6,400만원이 각각 출연됨.

< 교육급여 2024년도 집행내역 >

세사업 명	예산
교육급여	ㅇ 교육급여 지원 예산 : 154,579백만원 - 교육활동지원비 : 149,503백만원 ※ (초) 131,510명×461천원×82.76% + (중) 89,914명×654천원×82.76% + (고) 84,204명×727천원×82.76% - 교과서비 : (고) 1,817명 * 94천원 * 82.76% = 141백만원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2,578명 * 2,313천원 * 82.76%=4,935백만원 ㅇ 교육급여 사업비 : 185백만원 ※ 위원회 서면 실시 등으로 잔액 발생 ㅇ 교육급여 바우처 시스템 운영비 : 1,964백만원 ㅇ '22년 교육급여 집행액 정산분 : 3,651백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정산

자료: 교육부

❑ 교육급여 사업의 실제 급여 지급 실적을 보여주는 시・도교육청의 실집행률은 2022년 97.9%에 달했으나,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로 전환한 2023년부터 전년대비 하락하여 2024년에는 87.6%로 2022년 대비 약 10%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개년 교육급여 사업의 시・도교육청 실집행률 >

연도	2022	2023	2024
실집행률	97.9%	93.1%	87.6%

※ 2022년은 익년 2월, 2023년은 익년 8월, 2024년은 당해 연도 12월 기준임
자료: 교육부

❑ 교육급여는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지급되어야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복지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실집행률이 80% 대에 머무르는 것은 정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결과로 평가됨.

❑ 실집행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바우처로 전환되면서 신청 절차가 복잡해진 데에 있음. 과거 현금 지급 시에는 주민센터 또는 행복 e음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하면 조사 후 시・도교육청이 보호자 계좌로 지급하는 단순한 1단계 절차였으나,

바우처 방식에서는 ① 복지로 홈페이지(복지급여 통합신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교육급여 신청 후 대상자로 결정되고, ② 다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2단계 절차를 거치게 됨.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신청・지급 절차 >

① 교육급여 신청 접수	② 소득·재산 조사	③ 급여 보장 결정·통지	④ 급여 정보 전송	⑤ 바우처 신청 접수 및 배정	⑥ 급여 지원
온라인(복지로) 및 주민센터	시·군·구 (행복e음)	학교 (NEIS)	교육청 → 장학재단	온라인(장학재단 자체 시스템)	학교·교육청 한국장학재단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2024년 교육급여 신청 기간이 '24.4.1.~'25.6.30.으로 설정되어 차년도 상반기에도 급여 신청을 받으면서

2025년에도 집행이 이루어졌고, 2024년부터는 전년도 수급자에 대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해 최대한 많은 인원이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임을 밝힘.

❑ 그러나, 2024년 사업에서 교육급여 대상자로 결정된 인원은 330,057명인데 반해 바우처를 신청한 인원은 317,983명으로, 12,074명이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였고, 바우처 신청이 모두 마감된 2025년 6월말 기준 시·도교육청의 실집행률 또한 94.4%로 사업방식 변경 이전보다 낮아진 수준임.

< 교육급여 대상자 및 바우처 수급 인원 >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급여 대상자로 추계한 인원	310,166	311,589	306,466	313,442	305,628
교육급여 대상자로 결정된 인원	-	-	-	330,248	330,057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인원	-	-	-	313,672	317,983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교육급여의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지원비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및 행복e음 시스템 기능 개선 등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현재 협의를 진행하는 중에 있으나 교육급

여의 신청 접수 및 재산조사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현장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 특히 지자체는 2024년 기준 9개 카드사[233]의 신용・체크카드로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고, 카드사별로 사용이 가능한 카드와 그렇지 않은 카드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신청자에게 안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음[234].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누리카드와 같이 단일 카드사를 이용한 바우처 지급 방식[235]으로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급여 대상자 중에는 신용 문제를 겪고 있는 인원 또한 많으므로 이용 가능한 카드사 수를 줄이는 것이 반드시 타당한 방법이라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교육부는 가능한 한 교육급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고, 1단계 교육급여 신청자 중 2단계 바우처 신청을 누락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예외적 현금 지급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실수급 인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33) (카드사)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KB국민 제휴 금융기관) 전북은행
** (BC 제휴 금융기관) IKB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 BC카드 제휴 금융기관이 아닌 카드는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이 불가

234) 참고로, 교육급여와 유사한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문화누리카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충전식 선불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면서도 1개 카드사(NH농협카드)만을 정책수단으로 운용하여 신청절차를 일원화하였음.

235)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5년 기준 NH농협카드로만 발급이 가능함.

(2) 사업 일정 축소 및 정산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

❑ 2023년도와 2024년도 교육급여 사업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차년도까지 신청 및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 이에 따라 2023년과 2024년 사업 모두 차년도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고, 바우처 사용은 차년도 8월 말까지 가능하였음.

< 2023, 2024년 교육급여 사업 기간 >

구분	2023년 사업	2024년 사업
교육급여 신청 기간	’23.3.29.~’24.6.28.	’24.4.1.~’25.6.30.
바우처 사용 기간	~’24.8.31.	~’25.8.31.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교육부가 이처럼 사업 기간을 차년도까지 걸쳐 설계한 이유는 예산 집행 시점에서 이미 동년도 1학기가 개학한 시점이므로, 지급방식을 바우처로 변경하면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신청·사용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차년도 1학기까지 최소 2학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 그러나, 차년도 1학기 준비에 필요한 교육활동지원비 사용은 주로 개학 이전인 차년도 2월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년도 8월까지로 설정된 현재의 사업 기간은 지나치게 길게 책정된 측면이 있음.

또한 차년도 1학기 내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면, 이는 회계연도 독립원칙[236]에 기반해 차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매 연도 교육급여 사업이 완료된 후 시·도교육청의 집행잔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는 반납 고지서 발행 후 시·도교육청이 해당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2025년 7월말 기준 2023년도 교육급여 사업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전북 6개 교육청에만 반납 고지서가 발행된 상황임.

< 2023년 교육급여 사업 반납 고지서 발행 현황 >

지역	반납 고지서 발행 요청	예정	비고
서울	O	-	
부산	X	7월	
대구	O	-	
인천	O	-	
광주	X		확인 중
대전	X	7월	
울산	O	-	
세종	X	11월	
경기	O	-	
강원	X	12월	

236)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지역	반납 고지서 발행 요청	예정	비고
충북	X	12월	
충남	X	12월	
전북	O	-	
전남	X	12월	
경북	X	12월	
경남	X	미정	
제주	X	7월	

자료: 교육부

❑ 당초 2023년 교육급여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5년 7월까지 지자체별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반납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정산 현황은 당초 계획과 큰 차이가 있는 상황임.

< 국고보조금 관련 월별 진행사항 >

월	지자체 국고보조금 관련 진행 사항	비고
전년도 9월	차기 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중앙부처
전년도 10~11월	가내시 자료를 기초로 차기 사업 예산 편성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12월말	차기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12월말)	중앙부처
1월~	당기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1~12월) –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비 교부: 교육청 → 한국장학재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1~3월	전기 사업 국고보조금 실적 및 정산보고(3월) – 교육급여 바우처 정산 보고(2월): 한국장학재단 →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장학재단
3~7월	전기 사업 국고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에 대한 검토·확정 통보(3~4월)	중앙부처 (사업과)
	당기 사업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편성(4~7월) – 가내시 기준 예산을 확정내시를 반영·수정 – 전기 사업 정산 확정에 따라 반납 예산 반영 및 납부	지방자치단체

자료: 교육부,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 2023년 교육급여 사업의 정산이 지자체의 추경예산 편성에 의존하고 있어 정산 일정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일부 지자체(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는 반납 고지서 발행이 2025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어 2023년 사업의 정산이 2026년에서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 집행이 완료된 익년도 내에는 반납을 완료해야 함. 그러나 2023년 교육급여 사업은 익년도인 2025년에도 정산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산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향후 정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반납 고지서를 조기에 발행하며 지자체의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교육급여 정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산 절차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8. 소속기관

가.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수입대체경비)[237]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2448-651) 사업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하는 국사편찬위원회[238]의 시험 운영 및 관리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시험 응시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임.

(2) 결산개요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64억 500만원

---

237) 02-6788-5185

238)「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① 위원회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역사에 대한 지식 및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사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의 방법·절차·내용·대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이하 "한국사시험"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4회 이상 시행한다.

이고, 응시료 수입이 세입예산액을 초과함에 따라 20억 3,800만원을 초과지출승인하여 예산현액은 84억 4,300만원이고, 이 중 81억 4,5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239]	예산 현액(A)	집행액 (B)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수입대체경비)	6,405	6,405	2,316 △278	8,443	8,145	298
- 상용임금 (110-03)	120	120		120	120	
- 일반수용비 (210-01)	1,097	1,097	130	1,227	1,010	217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5	5		5	1	4
- 임차료 (210-07)	527	527	△200	327	309	18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0	30		30	25	5
- 복리후생비 (210-12)	2	2		2	2	
- 일반용역비 (210-14)	3,762	3,762	2,186	5,948	5,920	28
- 기타운영비 (210-16)	610	610	△78	532	527	5
- 국내여비 (220-01)	26	26		26	23	3
- 사업추진비 (240-01)	5	5		5	4	1
- 일반연구비 (260-01)	115	115		115	102	13
- 고용부담금 (320-09)	25	25		25	25	
- 자산취득비 (430-01)	81	81		81	77	4

239) 초과지출승인 20억 3,800만원 외에 동 사업 내에서 세목조정이 있었음.

나) 검토의견

(1) 연례적인 세목 조정을 통한 집행방식 개선 필요

❑ 2024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사업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운영을 위한 용역비 지급을 위해 총 7억 7,000만원을 세목 조정하였는데, 이는 당초 2024년 예산액 64억 500만원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구체적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운영을 위한 용역비로 37억 6,200만원의 일반용역비(210-14)가 편성되어 있는데 해당 일반용역비 부족분을 일반수용비 (210-01) 4억 7,000만원, 임차료(210-07) 2억원, 기타운영비(210-16) 1억원, 총 7억 7,000만원을 세목 조정을 통하여 집행함[240].

< 2024년 세목조정 내역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ㅡ에서</th><th rowspan="2">금액
(백만원)</th><th colspan="2">ㅡ으로</th><th rowspan="2">조정사유</th></tr>
<tr><th>세부사업명</th><th>목ㅡ세목</th><th>세부사업명</th><th>목ㅡ세목</th></tr>
<tr><td rowspan="5">2024</td><td rowspan="4">한국사능력
검정시험운영
(2448-651)</td><td>일반수용비
(210-01)</td><td>420</td><td rowspan="5">한국사능력
검정시험운영
(2448-651)</td><td rowspan="3">일반용역비
(210-14)</td><td rowspan="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운영을 위한 연간 계약 용역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세목 조정</td></tr>
<tr><td>임차료
(210-07)</td><td>200</td></tr>
<tr><td>기타운영비
(210-16)</td><td>100</td></tr>
<tr><td>일반수용비
(210-01)</td><td>50</td><td>일반용역비
(210-14)</td><td>하반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운영 용역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세목 조정</td></tr>
<tr><td colspan="2">합 계</td><td>770</td><td colspan="3"></td></tr>
</table>

240) 2024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운영을 위한 용역비는 당초 예산액 37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초과지출승인액 14억 1,600만원과 세목조정액 7억 7,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총 59억 4,800만원이고, 예산현액 중 59억 2,000만원을 용역비로 집행하였음.

구분	예산액	초과지출승인액	세목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일반용역비 (210-14)	3,762백만원	1,416백만원	770백만원	5,948백만원	5,920백만원

❑ 동 사업의 최근 5년간(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목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10억 7,700만원, 2021년 5억 1,000만원, 2022년 2억 5,300만원, 2023년 7억 4,400만원, 2024년 7억 7,700만원으로 연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목 조정을 통해 집행하였음.

❑ 특히 동 사업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운영을 위한 용역비 부족분에 따른 세목 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0-2023년 세목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에서		금액	∽으로		사유
	세부사업명	목-세목		세부사업명	목-세목	
2020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운영 (2448-651)	일반수용비 (210-01)	28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운영 (2448-651)	국내여비 (220-01)	하반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총감독관 출장여비 부족에 따라 자체 전용
		관리용역비 (210-15)	969		일반용역비 (210-14)	하반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사장·실 운영비 지원을 위해 기 배정받은 일반예비비를 예산집행지침에 맞게 일반용역비로 세목 조정
		일반수용비 (210-01)	80		일반용역비 (210-14)	하반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인원, 고사장·실 수 등 물량 증가에 따른 용역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세목 조정
	합 계		1,077			
2021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운영 (2448-651)	임차료 (210-07)	180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운영 (2448-651)	일반용역비 (210-14)	상반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인원 증가에 따른 용역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세목조정
		일반수용비 (210-01)	2		기타운영비 (210-16)	관련 법령(약칭: 한국사보급법) 개정('21.9.14.)에 따라 시험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해 세목 조정

연도	∽에서		금액	∽으로		사유
	세부사업명	목-세목		세부사업명	목-세목	
		일반수용비 (210-01)	300		일반용역비 (210-14)	하반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인원 증가에 따른 용역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세목 조정
		임차료 (210-07)	28			
	합 계		510			
2022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운영 (2448-651)	일반수용비 (210-01)	47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운영 (2448-651)	기타운영비 (210-16)	관련 법령(약칭: 한국사보급법) 개정('21.9.14.)에 따라 시험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해 세목 조정
		임차료 (210-07)	4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대량접속제어솔루션 하반기 유지 보수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세목 조정
		임차료 (210-07)	40		일반수용비 (210-01)	하반기 시험종사자 수당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세목 조정
		일반용역비 (210-14)	162		일반수용비 (210-01)	하반기 시험종사자 수당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세목 조정
	합 계		253			
2023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운영 (2448-651)	상용임금 (110-03)	24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운영 (2448-651)	일용임금 (110-04)	육아휴직(공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일용임금으로 지출과목 변경(기재부 공지)에 따라 세목 조정
		일반용역비 (210-14)	370		일반수용비 (210-01)	하반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편집·인쇄 용역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세목 조정
			350		기타운영비 (210-16)	하반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종사자 수당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세목 조정
	합 계		744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 세목이란 행정과목인 '목'의 하위 예산과목으로서, '세목간 조정'은 목의 범위 내에서 세목간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임. 세목간 조정은 행정과목의 조정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행정부 내부에서 세목간 조정이 가능함.

❑ 그러나 예산의 경우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그 편성목적, 내용 및 비목별 구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르면 세목 조정 등의 예산변경은 일반적인 예산 집행방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동 사업의 세목 조정과 같이 상당한 금액을 연례적으로 세목 조정하는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향후 교육부 및 국사편찬위원회는 예산 편성 시 동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비목별로 실제 소요와 집행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고, 편성 이후에는 세목 조정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 고도화 사업 신속 추진 검토 필요

❑ 국사편찬위원회는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하였음.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일반연구비(260-01) 1억 1,500만원 중 1억 2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고도화 ISP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일반연구비 (260-01)	115	-	115	102	-	13	-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은 시험안내, 원서접수, 문제관리, 시험결과 안내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으로 2006년부터 구축·운영되어 왔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시험 응시자 수 증가[241]에 따라 시스템의 내·외부 사용이 급증하였음도 2006년 최초 구축 이후 유지관리 차원의 시스템 개선만 이루어져 왔는바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응시자 불편[242]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성 제고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시험·운영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하고 2025년도에 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었음.

❑ 국사편찬위원회는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응시자 맞춤형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 접근성 강화 및 원스톱 원서 접수를 실현하고 기출 문제 시스템의 문항 정보 및 통계 관리 기능 개선으로 시스템 활용도 제고 및 업무 담당자의 편의성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표준화 및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2024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41)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무원 등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활용 확대 등에 따라 시험응시자 수가 증가하였음.
(응시자격 활용 채용시험) 5급(2012년), 교원(2013년), 군무원(2018년), 7급(2021년), 경찰(2022년), 소방(2023년), 계리(2024년)
(응시생 수 증가) 46,436명(2007년)→157,015명(2012년)→363,064명(2017년)→439,045명(2023년)

242)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민원의 53%가 시스템 관련 민원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시 서버 장애 발생(2020년, 2021년, 2024년)이 있었고, 원서접수 및 수험표 출력까지 최소 3회 이상 접속(약 한 달 소요)으로 사용자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월 17일 「2024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입찰」을 공고하여 2024년 2월 16일 용역수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하고, 3개월 후인 2024년 5월 16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

< 2024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고도화 ISP 추진경과>

사업명	입찰공고	용역수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준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024. 1.17.	2024. 2.16.	2024. 5.16.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243][244]하고 있음.

국사편찬위원회는 2024년 5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완료하였음에도 2025년도 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43) 사업추진 부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최종산출물을 근거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우선 요청하고, 기획재정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최종산출물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 추진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및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안 편성시 활용하고 있음.

244) 정보시스템 구축 이전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시스템 중복구축 등 예산낭비적 요인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고, 시스템 구축 계획의 내실화를 통해 정보화 예산투자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사편찬위원회의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는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업목적이 적기에 실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사편찬위원회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이후 2025년 시스템고도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최종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ISP 최종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 관련 예산안(22억 6,500만원)[245]을 요구하였으며 2026년 예산 최종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임.

❑ 향후 한국사편찬위원회는 적시성 있게 추진하여야 할 정보화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고도화 사업의 경우 그 수요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결과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45) < 2026년도 시스템고도화 사업 예산 요구안 >

회계연도	요구금액	산 출 근 거
2026	2,265백만원	▪ 시스템재개발(1,610백만원) ▪ 인프라 확충(329백만원) * HW: 40백만원, 상용SW: 289백만원 ▪ 감리(180백만원) ▪ 개인정보영향평가(146백만원)